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 교수)
- ▶ 공동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기 위한 조성기준 및 실천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청소년 친화마을의 개념을 유니세프와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정의하고 청소년 친화마을 구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성기준과 세부 영역 및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조성절차 및 추진체계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관련 연구문헌 및 정책을 분석하고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통계수집 및 분석, 국내외 청소년 친화마을 사례조사, 그리고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지표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친화마을의 개념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친화마을의 목표는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건강한 지역주민,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충분한 자원과 공평한 발달기회를 제공, 청소년 친화공간 확보, 청소년 참여 촉진이다. 셋째,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과정에서 선결사항이 되어야 하는 기본요건은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 친화적인 법과 정책,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청소년 영향평가, 예산확보, 청소년 실태 보고서이다. 넷째,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은 ‘누구나 건강한 마을’, ‘모두가 안전한 마을’, ‘배움을 누리는 마을’,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마을’의 5가지와 세부영역 및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친화마을 사업추진 단계는 계획수립과 실행단계, 관리 및 평가단계를 통하여 수행하며, 추진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향후 청소년 친화마을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필요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지역주민 및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준 및 추진체계 그리고 실행방식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2000년부터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운동은 유니세프에 의해 시작됨.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운동은 세계 각국의 도시화와 산업화 여파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대도시의 복잡한 교통, 환경오염, 녹지 공간의 부족, 유해환경 증가, 그리고 상대적 빈곤의 심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기 위한 조성기준, 이에 따른 친화마을 지표 및 기본적인 실천체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도됨. 청소년 친화마을의 개념을 유니세프와 관련연구들을 토대로 정의하고 청소년 친화마을 구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성기준과 각각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서 청소년 친화마을의 실제적인 조성과정 및 추진체계 등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 청소년 친화마을의 개념을 정리하고 청소년 친화마을의 기본요건을 파악하여 청소년 친화마을의 의미를 조작적으로 정의함.
 - 국내외의 친화마을 운영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친화마을 운영모델의 시사점을 도출함.
 -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배경과 필요성으로서 국내외 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요건에 대한 통계, 평가지표, 관련 연구문헌을 수집·분석하여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
 -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지표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청소년 친화마을의 실천체계를 제시함.

○ 연구방법

- 국내외 청소년 관련 연구문헌을 분석
-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통계 수집 및 분석
- 국내외의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사례 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 델파이 조사 실시
-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

3. 주요결과

1) 청소년 친화마을의 의미

- 경제성장으로 인한 풍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 충족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함.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청소년 대상의 행복지수는 50.28점/100점(김기현 외, 2009)이고,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 7점(1~10점 중)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44.9%로 일본 청소년보다 낮고, 유럽이나 미국 청소년들이 7~80%대의 백분율을 보이는 것보다 대조적임(OECD, 2006).
- 청소년 친화마을의 개념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임(UNICEF, 2005).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친화적 양육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함(Malone, 2009).

- 친화마을 조성의 기본계획은 세계적 정책의 흐름에 따라 정책의 대상을 청소년을 비롯하여 가족, 교사, 지역사회까지 확대하는 추세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의 일환임.
- 청소년 친화마을의 이념: 제4차 청소년 기본계획(수정, 보완)의 이념을 전제로 함.
 - 통합성: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 구현
 - 보편성: 모든 청소년의 기회 공평
 - 청소년 중심: 청소년, 부모의 지역수요에 따른 정책 추진
- 청소년 친화마을의 의의
 -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 대한 투자와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지원서비스 강화
 - 청소년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 관심과 의사를 표명
 - 청소년 친화마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제시
- 청소년 친화마을의 기본 요건

유니세프의 청소년 친화적 도시 개발을 위한 9가지 기본 틀과 세계 각국의 친화도시 조성의 과정을 기초로 다음의 내용을 기본요건으로 한다.

 - 청소년 친화적인 법
 - : 지역사회차원의 친화마을 관련 조례 등을 통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청소년 친화적인 마을의 정책 및 행정체계
 - : 청소년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 및 행정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 관련부서와 서비스 제공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서비스를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함.
 - 청소년 친화마을을 위한 예산 확보
 - : 청소년을 위한 국가 예산을 증대시켜야 함은 물론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청소년 권리 보장 및 증진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편성되어야 함.

－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 청소년 친화마을의 인식 확산과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함.

○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및 시사점

－ 현재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 보완)기본계획을 추진중 임.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관련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4차 기본계획이 수정된 이후 추진과제가 실행되는 단계임.

－ 청소년 정책의 시사점

：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의 연계가 효과적이지 않고 최근의 정책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며 청소년 참여가 대부분 명시적 수준에서 존재함.

2) 국내외 친화도시 조성 사례 분석

○ 국내 친화도시 조성 사례 분석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추진현황: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음. 2007년~2009년까지 30개 시범지역에서 시책이 수행되고 있음.

－ 사례분석: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 내용: 마을살터 가꾸기, 마을의 인재육성, 지역공동체 형성의 3대 운동

□ 성공요인: 전담조직 운영, 조례 규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기반마련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운영,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분석, 평가 등 사업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제공 등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 추진현황: 2006년 여성가족부에서 기본계획과 시범사업 수립. 2006년 3개 지역에서 ‘가족형’ 모델의 시범사업지역 선정. 2007년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6월 시행령 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사례분석: ‘전남 장흥면 우산리’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 내용: 공간의 질과 삶의 질 제고, 공동체 활성화, 소득기반 강화 등 마스터플랜 4대과제 제시
 - 성공요인: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주민참여와 연대, 지원 중심의 행정 원칙, 주민들의 역량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 추진현황: 2009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기준 및 발전방향 수립. 2009년 익산시, 여수시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맺음. 201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기관은 총 12개 지역임.
- 사례분석: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 내용: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의 4대 영역
 - 성공요인: 전담부서 신설(여성친화정책과 여성친화팀), 사업발굴과 추진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 여성단체 협조 및 협의회 등 운영, 여성친화 서포터즈 구성 등.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 추진현황: 아직까지 고령화를 대비하여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는 없음. 그러나 2011년 서울시가 ‘고령친화 도시 서울’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사회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있음.
-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 고령사회 마스터플랜(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 평가〉

- 추진현황: 보건복지부는 2006~2008년까지 매년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복지정책을 평가함. 2009년도부터는 정부의 업무조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음.
- 평가지표: ‘아동 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적절성’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성화 정도,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률로 구성

- 평가점수분포: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모두 점수 분포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같은 지역 내에서 점수 격차는 다소 커졌음. 그러나 각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대도시가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음.

〈요약 및 시사점〉

- 종합적인 사업추진과 포괄적 지원: 주관부처, 주무부서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 확립, 관련 법 및 제도 정비, 청소년영향평가 실시 등
- 주민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주민협의체와 같은 주민조직 신설 필요, 청소년 참여 장치 마련 등

○ 국외 친화도시 조성 사례 분석

〈유니세프의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Child and Youth Friendly City:CFC)’〉

- 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능
- 청소년 친화도시의 주요활동
-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9가지 원칙

〈주요국의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 노르웨이
 - Children's Landscape : 교육을 위한 건축(architecture for education), 녹색학교(Green Schools), 야외활동(Outdoor education)
 -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 : 지역 민주주의 강화로 긍정적 존엄성, 참여 습관, 소속감을 개발함. 아동 및 청소년의 자원,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성장과 관련 재능을 이용함.
- 스웨덴
 - 청소년 친화마을 : 학교 통학로를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고, 놀이 장소를 보다 활동적으로 변화시킴, 거주 지역에 보다 많은 “home zone”을 만듦.
 - Nature School : 환경연구와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일하는 Lund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고 활동함.

－ 영국

- 런던시의 아동·청소년 친화지역 만들기 전략
- 런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목소리 이해하기
- 런던 아동·청소년 생활의 다양성 이해하기
-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 개선

〈유네스코의 ‘도시에서 성장하기(Growing Up in Cities: GUIC)’〉

- － 추진전략 : 상황분석,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종합적 접근, 전략적 협력관계, CFC 네트워크와의 연계, 빈곤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 제도적·법적 개혁, 자원 동원, 역량개발 활동과 방법,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함.

〈주요국의 GUIC프로그램〉

- － 노르웨이 : 트론하임시는 청소년들을 GUIC 프로그램에 참가시켜 인터뷰, 그림그리기, 토론, 자연산책,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 － 스웨덴 : Bergsion, Korgeala, Lundby시의 세 지역이 상호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

3) 청소년 친화마을에 대한 전문가 조사

○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 선정기준

- － 유니세프 청소년 친화 지역사회 척도, 국내외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평가지표, 청소년 관련 지표 선행 연구를 분석함. 이에 기초하여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준을 건강한 발달 환경, ‘안전한 성장환경’, ‘배움과 미래를 위한 환경’, ‘활동과 여가 환경’, ‘참여와 의사표현 환경’ 총 5개 영역의 세부영역 27개의 총 90개의 평가 지표안을 개발함.

○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 선정 절차

－ 델파이 조사 실시

: 청소년 관련 전문가 총 21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준의 우선순위, 영역별 세부영역 및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평가지표 적합성 정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등을 조사함. 이 중 수합된 50명의 전문가 의견을 조성기준 및 평가지표 선정에 반영함.

– 평가지표 선정기준

: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각 평가지표의 적합성 정도에서 2점 이상인 항목을 채택함.
기타 의견 중 지표 항목에서 이미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제외하였고 친화 마을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지표는 포함하지 않음.

– 델파이 조사 주요결과

- 청소년 친화마을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는 ‘안전한 성장환경’, ‘건강한 발달환경’, ‘배움과 미래를 위한 환경’, ‘활동과 여가환경’, ‘참여와 의사표현 환경’으로 조사 됨. 2점 이하 평가지표 항목은 ‘안전한 성장환경’, ‘활동과 여가환경’, ‘참여와 의사표현 환경’에서 총 8개로 최종 지표에서 제외함. 최종적으로 정책 추진 대상자인 청소년과 친화마을의 의미가 강조되고 각각의 조성 기준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누구나 건강한 마을’, ‘모두가 안전한 마을’,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배움을 누리는 마을’, ‘함께 참여하는 마을’로 조성기준을 선정함.
- 친화마을 추진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은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정책, 법, 예산으로 나타남.

– 전문가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지표는 5개 조성기준, 세부영역 19개, 그리고 평가지표 84개로 개발 됨.

4)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모형개발

○ 청소년 친화마을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청소년 친화마을의 추진방향

- 안전한 환경(Secure):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거
- 역량 발달(Capable):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소년 역량발달 지원
- 손상 회복(Resilient): 지역사회 공간의 재구성 및 확보, 가족 생활 문화 및 이웃과의 관계회복 촉진
- 살기 좋은 환경(Livable): 청소년-성인-관련 전문가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 청소년 친화마을의 목표

-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건강한 지역주민으로서의 청소년
-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 충분한 자원과 공평한 발달기회 제공
- 청소년 친화공간의 확보
- 청소년의 참여 촉진

○ 청소년 친화마을의 기본요건

-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청소년 친화마을의 기본요건을 친화도시 개념과 앞서의 국내외 친화도시 운영사례 분석 결과 그리고 유니세프의 친화도시 구축 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할 수 있음.
- 체크리스트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지역사회 기본 여건으로 청소년 친화마을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에서 지역사회 여건을 점검,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청소년의 참여

: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는 것임. 지역주민에 대한 형평성에 입각하여 청소년 참여는 필수적임. 또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견해를 반드시 청취할 수 있어 지역사회 발전의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함.

〈청소년 참여에 대한 체크리스트〉

- 협약 제 12조의 원칙이 지방 정부의 정책집행과 서비스 실행 과정에 반영되어 있는가?
- 청소년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역 주민 특히 부모들에게 권고되는가?
- ‘청소년의 견해 존중’이라는 개념이 청소년 자신과 더불어 혹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교육과정 및 연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가?
-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 절차에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권리를 갖고 있는가?

□ 청소년 친화적인 법과 정책

: 법과 정책은 행정의 근간이 되며 인간 삶에 대한 최소기준을 명시함. 청소년 친화마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함. 이는 청소년 친화마을의 안정적인 실행기제가 됨. 특히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권리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ombuds 제도 및 모니터링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청소년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체크리스트〉

- 청소년 친화마을 구축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혹은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 법과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더불어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포괄적인 자문이 있었는가?
- 지역 당국의 법과 정책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및 일반원칙(차별금지, 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 아동의사반영)을 중시하는 지를 검토하였는가?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자문, 변호 및 소송 절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예: 청소년권리 ombuds 제도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 지역의 청소년 정책이 지역 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기와 결핍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가?
- 지역의 청소년 정책 실행 과정의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시계열적인 목표 지수를 수립하고 있는가?

□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 어떤 지방정부 조직 하에서건 청소년 친화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각 지방정부의 중심에 있어야 함.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영향력이 큰 독립적 총괄부서(a high profile cross-cutting)를 지정하거나 혹은 정책 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임.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는 사무국 설립 등 실행 총괄부서가 마련되어야 함.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에 대한 체크리스트〉

- 다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도시 정부 내 부서(department, unit) 및 조정 메커니즘이 있는가?
 - 청소년 친화마을을 촉진
 -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조정을 책임
 - 청소년전략 초안 작성 및 후속 조치
- 이 부서 및 조정 메커니즘에 지역 정부의 시장·지도자 권위를 부여해 주었는가?
- 이 부서 및 조정 메커니즘은 청소년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청소년들의 견해가 그 사업과 도시 내 모든 정부 사업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가?

□ 청소년에 대한 영향평가

: 각 지역 정부의 법, 정책, 업무 수행이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 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 친화마을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중요함. 영향평가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을 토대로 각 지역사정에 맞는 달성 목표치를 책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투입된 총 자원의 청소년에 대한 환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청소년에 대한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지역 정부의 법과 정책이 지역의 모든 청소년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있는가?
- 이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독립적 과정이 있는가?

□ 예산확보

: 청소년 친화마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에 청소년 친화마을 예산이 포함되어야 함. 지역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가시적인 예산 분배가 요구됨.

〈예산 확보 체크리스트〉

- 각 지역정부의 청소년예산이 다른 예산 분배와 비교해 볼 때 공평한가?
- 청소년 예산 분배의 내용이 공개되는가?
-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하는가?

□ 청소년 실태 보고서

: 각 지역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삶의 양상이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함. 지역사회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청소년 친화마을 실행의 기초자료가 됨. 청소년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청소년 정책 개발에 필수적 임.

〈청소년 실태보고서에 대한 체크리스트〉

-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도시 내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와 기타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는가?
- 도시 아동·청소년들의 실태 보고서가 있는가?
- 보고서가 있다면
 - 이 보고서가 주요 정책 입안자들,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출판·배포되는가?
 - 정책 개발 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지표

-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와 유니세프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은 ‘누구나 건강한 마을’, ‘모두가 안전한 마을’, ‘배움을 누리는 마을’,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마을’의 5가지 영역으로 설정함.
- ‘누구나 건강한 마을’의 세부영역은 영양·급식, 건강, 정서·행동, 인프라로 구분 됨. 각 영역에 대한 평가지표는 영양·급식 4개, 건강 5개, 정서·행동 4개, 인프라 4개로 구성됨.
- ‘모두가 안전한 마을’의 세부영역은 물리적 환경, 유해환경, 위기·응급 상황, 인프라로 구분 됨. 각 세부 영역별 평가지표는 물리적 환경 6개, 유해환경 4개, 위기·응급 상황 4개, 인프라 6개로 구성됨.
-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의 세부영역은 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 활동 및 여가 시간·공간, 인프라로 구분 됨. 각 세부영역별 평가지표는 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 3개, 활동 및 여가 시간·공간 7개, 인프라 5개로 구성됨.
- ‘배움을 누리는 마을’의 세부영역은 교육기회, 교육연계, 진로·직업, 인프라로 구분 됨. 각 세부영역별 평가지표는 교육기회 5개, 교육연계 4개, 진로·직업 2개, 인프라 4개로 구성됨.
- ‘함께 참여하는 마을’의 세부영역은 의견존중, 표현의 자유, 사회참여, 인프라로 구분됨. 각 세부영역별 평가지표는 의사존중 3개, 표현의 자유 5개, 사회참여 4개, 인프라 5개로 구성됨.

○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계획 시 고려할 사항

- 5개 지표가 포괄적으로 반영된 청소년 친화마을을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 그러나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몇 가지 형태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조성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 : 각 지방정부의 예산과 인력 규모, 사용가능한 행정체계와 관련기관의 참여 수준, 그리고 청소년 생활실태에 따라서 각 조성기준의 우선순위별로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할 수도 있음.
- 지역규모 및 특성에 따른 친화마을 조성 계획 수립
 - : 대도시의 경우와 소규모 도시 그리고 농어촌의 경우는 지역 특성에 따라 친화마을의 우선 요건이 다를 수 있음. 지역별 규모에 따른 요건은 평가지표의 요구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 운영 및 관련기관의 운영 점검 및 설립, 그리고 프로그램의 신성 및 내실화 등을 통해 가능한 것임.

4. 정책제언

○ 청소년 친화마을 사업추진 단계

- 계획수립 : 목표 및 원칙
 - 청소년 친화마을의 개념 확립 및 추진 방향 설정
 - 청소년 친화마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확대
 -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
 - 청소년 발달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공간 활용 계획의 수립
 -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
- 실행단계
 - 홍보 및 주민 참여 독려
 - 법과 정책 마련
 - 예산 확보 및 기금 마련
 - 담당부서의 지정 및 협조체계 구축
- 관리 및 평가단계
 - 추진 사업을 통해 각 기본요건의 내용을 이행하였는가?
 - 친화마을의 각 평가 지표에 따라서 공간이 확보되고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었는가?
 - 청소년 친화마을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 청소년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지역주민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청소년의 삶의 질이 실제로 향상되었는가?

○ 추진체계의 구축과 활성화 방안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체계 확립

: 청소년 친화마을 정책의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기반을 토대로 제도를 마련해야 함.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계획에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이 정책의 주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범위의 예산지원도 계획되어야 함.

－ 지역특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통해서 지역을 특화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됨.

－ 친화마을의 효과 홍보

: 청소년 친화마을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타 지역의 청소년 친화마을 도입에 대한 관심과 차여를 촉진함.

－ 청소년 참여 활성화

: 청소년의 지역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함.

－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팀

: 지역의 청소년, 민간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시민이 연합하여 주민자치 조직 형태의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팀을 구성하여 운영함.

○ 향후과제

－ 지역사회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의 유도

－ 청소년 친화마을 발전 방향 정립

－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 예산확보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과 방법	5
3. 추진체계	8
II. 청소년 친화마을의 의미	9
1. 삶의 질	11
2. 청소년 친화마을의 의미	15
3. 친화마을 의미에 근거한 청소년 정책의 한계	20
III. 국내외 친화도시 조성 사례 분석	23
1. 국내 친화도시 조성 사례 분석	25
2. 해외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사례 분석	43
IV. 청소년 친화마을에 대한 전문가 조사	73
1.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75
2. 델파이 조사결과	78
V.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모형개발	91
1. 청소년 친화마을의 목표 및 추진방향	93
2. 기본요건	98
3.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지표	102
4. 추진 계획시 고려할 사항	112

Ⅵ.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방향	115
1. 청소년 친화마을 사업추진 단계	117
2. 추진체계의 구축과 활성화 방안	119
3. 향후 과제	123
참고문헌	125
부 록	137
1. 평가지표 산식	139
2. 델파이 조사지	155

표 목차

〈표 Ⅲ-1-1〉 2010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평가를 및 평가지표	36
〈표 Ⅲ-1-2〉 2010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점수분포	37
〈표 Ⅲ-1-3〉 2010년 아동, 청소년복지 영역의 복지정책 평균 평가 점수	37
〈표 Ⅲ-1-4〉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적절성의 평가점수	38
〈표 Ⅳ-2-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78
〈표 Ⅳ-2-2〉 ‘건강한 발달환경’ 평가지표 적합성 평균	80
〈표 Ⅳ-2-3〉 ‘안전한 성장환경’ 평가지표 적합성 평균	81
〈표 Ⅳ-2-4〉 ‘활동과 여가 환경’ 평가지표 적합성 평균	83
〈표 Ⅳ-2-5〉 ‘배움과 미래를 위한 환경’ 평가지표 적합성 평균	85
〈표 Ⅳ-2-6〉 ‘참여와 의사표현 환경’ 평가지표 적합성 평균	86
〈표 Ⅳ-2-7〉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과정 우선순위	88
〈표 Ⅳ-2-8〉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우선순위	89
〈표 Ⅴ-3-1〉 ‘누구나 건강한 마을’ 평가지표	104
〈표 Ⅴ-3-2〉 ‘모두가 안전한 마을’ 평가지표	106
〈표 Ⅴ-3-3〉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평가지표	108
〈표 Ⅴ-3-4〉 ‘배움을 누리는 마을’ 평가지표	110
〈표 Ⅴ-3-5〉 ‘함께 참여하는 마을’ 평가지표	111
〈표 Ⅵ-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120

그림 목차

【그림 I-3-1】 연구 추진과정	8
【그림 V-1-1】 청소년 친화마을 실행체계	97
【그림 VI-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120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3. 추진체계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소년 친화도시 운동은 2000년 유니세프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세계 각국이 도시화와 산업화되면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시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유니세프는 대도시의 복잡한 교통, 환경오염, 녹지 공간의 부족, 유해환경 증가, 그리고 상대적 빈곤의 심화 등과 같은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본부가 있고 현재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이 청소년 친화도시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이는 양적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야 할 관계는 무엇인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사회 환경변화 운동은 2003년 행정자치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출발하여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화성·동탄 신도시 개발 계획에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온 청소년유해환경 격리구획화가 반영되어 미약하나마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 절박함에서 시도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4개국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 비교조사”에서 최근 1주간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8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의 원인을 공부로 지목한 학생은 72.6%에 이르렀다. 56.9%의 청소년은 하루 6 시간미만을 자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수면시간은

적이고 공부는 많이 하고 있다(최인재, 2011).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청소년의 방과후 여가활동 장소는 대부분이 집(48.4%)과 학원 (26.8%)으로 야와 활동이 거의 전무하고, 평일 24시간 중 13분만 운동하는 등 만성적인 운동부족과 수면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 중독 고위험 청소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학업중단, 가출, 비행, 실업 등 위기 청소년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녁 6시 이후 야간시간 나홀로 청소년은 19만 명 정도로 돌봄이 필요한 빈곤가정 청소년도 현저하게 늘었다(이재연 · 황옥경 · 권영임 · 최창욱, 2010).

한편,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청소년의 양육과 성장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든 가정폭력이나 범죄 등의 비행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는 노년층 위주의 인구구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지원 의지가 부족하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어 젊은층 인구가 농어촌에 유입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도시 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접근과 노력이 요구된다. 청소년기의 건강한 발달이 생산적인 성인으로 발달하는데 필수적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이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도시화되고 빈곤화 되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을 보다 긍정적으로 성장·발달시키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UNICEF, 2001). 지역주민의 참여와 더불어서 유니세프의 친화도시 운동은 청소년의 참여를 중시한다. 청소년 참여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펼치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청소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요 기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기 위한 조성 기준 및 실천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청소년 친화마을의 개념을 유니세프와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정의하고 청소년 친화마을 구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성 기준과 각각에 대한 지표를 개발한다. 이와 더불어서 청소년 친화마을의 실제적인 조성절차와 과정 및 추진체계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시도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준 및 추진체계 그리고 실행방식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친화마을을 적용·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공적인 청소년기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지역사회 의 노력이 필요한지, 이러한 노력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친화마을은 대도시, 농어촌 등 특정 지역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맞게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실행가능하다.

본 연구는 친화마을을 추진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성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행정기관이나 청소년 관련기관들의 업무 체계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추진과정 매뉴얼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도시’가 아닌 ‘마을’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 주민의 유대를 강조하고, 주민의 참여를 중시하며,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2.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위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권리증진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발달을 위해서 청소년 친화마을의 개념을 정리하고 청소년 친화마을의 기본요건을 파악하여 청소년 친화마을의 의미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발견된 사실은 청소년 친화마을의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며 추진체계 구축의 기본요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것이다.

둘째, 국내외의 친화마을 운영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친화마을 운영모델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가족친화 도시, 여성친화 도시 등의 운영사례에서 정책을 수립한 중앙정부와 실행 기제를 개발한 지방정부 간의 역할을 확인하고 이를 청소년 친화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유니세프의 청소년 친화마을 체크리스트와 청소년 친화마을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친화마을의 조성 배경 및 발전 양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의 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요건에 대한 통계, 평가지표, 관련 연구문헌을 수집 분석하여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넷째,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지표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다. 청소년분야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청소년 분야 연구자 및 활동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에 대해 그동안 산출되었던 통계자료를 근거로 청소년 친화마을의 조성기준과 그에 따른 세부지표를 생산한다.

다섯째, 청소년 친화마을의 실천체계를 제시한다. 청소년 친화마을의 조성기준을 토대로 청소년 친화마을의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개발을 통해서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앞서 기술한 연구내용과 상응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델파이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진행 과정과 방법은 제 IV장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1) 문헌고찰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청소년 관련 연구문헌을 분석하고, 통계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소의 정책 및 보고 자료를 분석한다. 더불어 청소년 친화마을을 주제로 한 외국의 연구보고서와 선행연구 문헌에 대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통계 수집 및 분석

청소년관련 통계자료 및 각 지역 평가지표 결과, 그리고 관련 선행 여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성장환경에 대한 자료 검토를 한다.

(3) 국내외의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사례 조사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의 친화마을 도입배경과 운영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의 기준을 마련한다. 그리고 국내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친화마을 조성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청소년 친화마을 실천과정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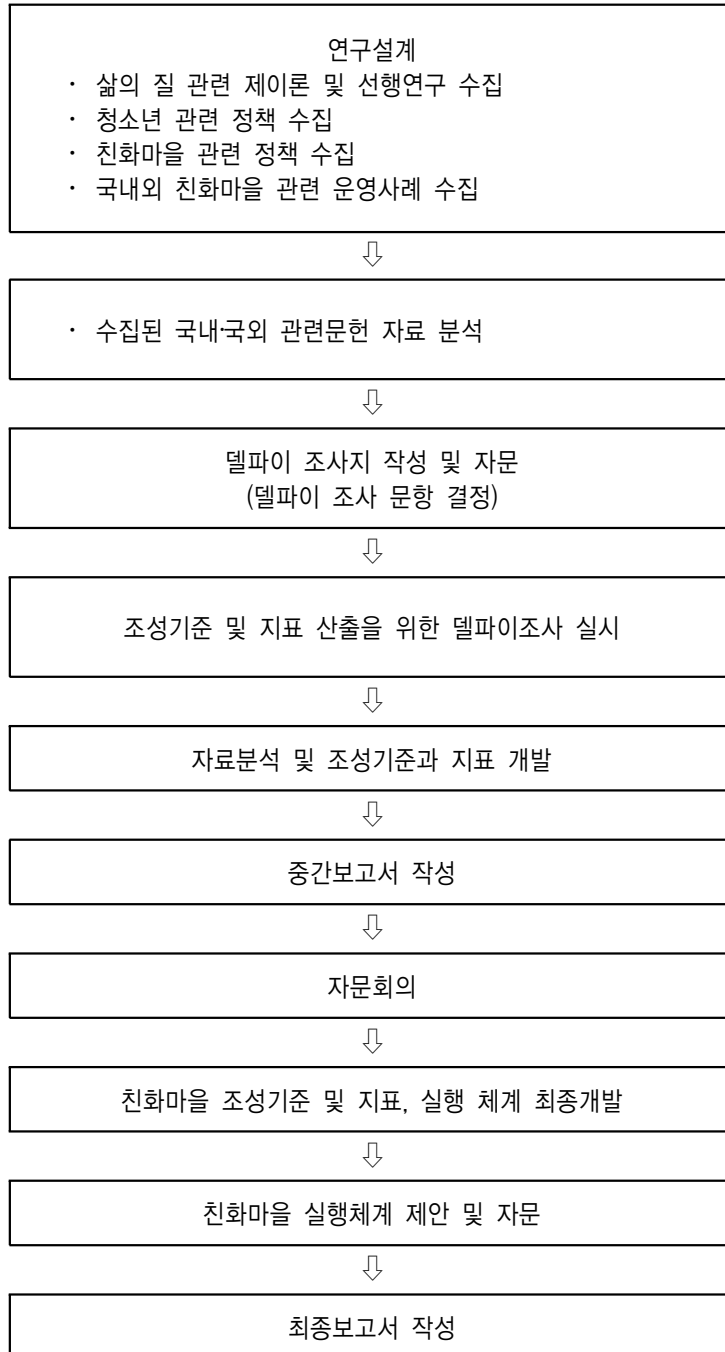
(4)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국내 타 분야 친화도시 운영 관계자 등 해당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친화마을의 개념 및 조성기준 및 세부 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지표 그리고 친화마을 운영체계의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5)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

연구진 회의를 통해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청소년 친화마을의 지표와 기본 추진 원칙에 대한 자료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또한 청소년 친화마을 구성에 관한 연구결과의 검토와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

3. 추진체계



【그림 1-3-1】 연구 추진과정

제 2 장

청소년 친화마을의 의미

1. 삶의 질
2. 청소년 친화마을의 의미
3. 친화마을 의미에 근거한 청소년
정책의 한계

제 2 장

청소년 친화마을의 의미

1. 삶의 질

1) 삶의 질의 개념

경제성장으로 인한 풍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 충족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높아진 관심 만큼 삶의 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주관적 안녕복지(Subjective Well-being),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삶의 질이란 물질과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한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그리고 사회의 발전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김정연·정현주, 2008, 박현옥·이한나, 2006). 이런 측면에서 삶의 질이란 일상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태에서부터 느끼는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외부로부터 인식·평가되어지는 객관적 삶의 질,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실체적 삶의 질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확연히 분리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 양상을 보인다(Ventegodt et al., 2003).

첫째, 주관적 삶의 질은 웰빙, 만족감, 행복, 삶의 의미로 대표되며, 객관적 삶의 질은 객관적 요소, 성취감, 가능성 실현, 생물학적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실체적 삶의 질은 주관적, 객관적 삶을 모두 포함하며 삶의 심오함을 의미한다.

셋째, 주관적 삶의 질과 객관적 삶의 질은 확연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약한 결합을 하고 있으며 서로 겹치고 영향을 주고받는 스펙트럼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고, 다양하게 정의된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지각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함을 전제한다(이명순, 2006).

2) 삶의 질 평가

삶의 질은 지수를 통해 평가된다. 삶의 질 지수는 대부분 객관적 혹은 정량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각 조사기관과 조사 목적에 따라 개발된다. 삶의 질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IMD, EIU, UNDP, 일본사회경제생상성본부, OECD 삶의 질 지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2006년 세계 12위의 GDP경제 규모(IMD, 2007)에 비해 2006년도 IMD기준으로 볼 때 삶의 질 수준은 39위이었다. 경제수준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EIU조사와 UNDP조사 결과도 IMD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경제력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에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는 환경과 경제 분야에 비해 건강과 교육, 노동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다. 우리나라는 평균 48.61/100점으로 OECD 30개 국가들 중에서 전체 삶의 질은 20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과학기술부 연구(2007)에서 우리나라는 삶의 질에서 보건환경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범죄처리 능력, 높은 교육열 및 교육수준, 정보접근성, 풍부한 교통인프라 등이 강점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취약한 의료서비스 제공, 교통사고 사망률, 산업재해, 대도시 오염, 녹지 부족, 높은 주택가격, 고용불안과 노동시간, 그리고 교육의 질 등은 약점으로 평가되었다. GDP 대비 공교육 지출액(24위)은 4.18%로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나 GDP 대비 사교육 지출액(30위)은 2.88%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OECD, 2007).

3) 청소년의 삶의 질

청소년기는 인간발달과정 가운데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도기로 알려져 있다. 삶의 질은 발달 시기별로 삶의 질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이현주·이미나·최인수, 2008) 삶의 질을 연구하는데 있어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중요한 열쇠이자 미래 한국사회를 조망해주는 대상이다. 이는 현재 청소년의 삶의 질이 이후 성인기 삶의 질을 이해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미애(2006)도 청소년의 삶의

질이 지금까지 삶의 결과이자 현재 삶의 수준을 평가하는 향후 생활의 지표이며 긍정적 발달과 건강한 적응을 알 수 있는 예측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외형상 과거에 비해 여러모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방이 있고,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 등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생활에서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도시화된 청소년의 성장환경은 매우 위협적이다(이재연 · 황옥경 · 이은주, 2009).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 지나친 경쟁, 따돌림, 가족해체 등의 문제는 일부에 불과하다. 청소년의 가출, 학교부적응, 우울, 약물남용, 자살 등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으로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어린 시절부터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김수정, 2008).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8년도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50.28로 나타났고(김기현 외, 2009), OECD 자료를 통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총 10점 중 7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한국 청소년은 44.9%로, 일본 청소년보다 낮고 유럽이나 미국 청소년보다도 낮다(OECD, 2006). 청소년의 삶의 질, 또는 삶의 질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많은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심리적 복지감(PWB-Psychological well-being)보다는 부정적인 심리적 복지감과 낮은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경험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박연신 외, 2000; 조명한 외, 1994; Huebner et al., 2005).

(1) 청소년의 삶의 질 관련 변인

①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연령과 성별은 개인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초, 중, 고, 대학생 간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하였을 때, 초등학생이 중, 고, 대학생에 비해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연 · 황옥경 · 권영임 · 최창욱, 2010; 조명한 · 김정오 · 권석만, 1994; 박영신 · 김의철 · 정갑순 · 이상미 · 권혁호 · 양계민, 2000). 1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조명한 · 김정오 · 권석만, 1994)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삶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을 낮게 인지하는 주요인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로 예측된다.

한편,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다(보건복지부, 2009; 조명한·김정오·권석만, 1994; Rask, Astedt-Kurki, Paavilainen, Laippala, 2003).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Argyle, 1996).

초기의 삶의 질 연구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도 중요한 변인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빈곤가정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낮다(홍승애·이재연, 2011a; 최윤정, 2004; 이명순·변미희, 2007).

② 가정관련 요인들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래의 성공과 건강을 위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족의 도움과 화목, 경제적 안정 및 성공적인 자녀양육 등 가정환경 및 사회적 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지각하였다(임미향·박영신·김의철, 2006). Corsano 등(2006)은 11세에서 19세까지의 이탈리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부 경험과 외로움을 느낄 때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만, 자신이 혼자이기를 선택하고 외로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경우에는 부모부터의 고립이 청소년들의 심리·발달적 측면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현철·김은정·민경석(2007)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은 학업문제로 인한 부모자녀간의 갈등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③ 교육환경

청소년들의 경우 교사 및 친구관계(성미옥, 2003; 김의철·박영신, 2004), 학업성취가 삶의 질(박영신·김의철, 2003; 박현미·박영신·김의철, 2007; 임미향·박영신, 2007)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교사는 청소년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교사는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사회환경이 가정과 학교에 국한된 청소년기의 특성 때문에 청소년에게 중요한 지지자이다(한미현, 1996). 따라서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신뢰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이명순, 2006).

반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공통적인 원인이 친구문제, 교사문제, 학업 문제 등의

학교적응 문제이며,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이 입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학업성취의 부담과 실패에 대한 불안은 청소년의 삶의 질 관련요인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이명순, 2006). 중, 고, 대학생 집단 대상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박영신 · 김의철, 2007)한 것으로 보아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에 대한 성취의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짐작하게 한다.

④ 지역사회 환경

청소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역 및 이웃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있다. 연구들은 거주 지역 성원들 간에 친밀한 상호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웃 간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홍승애 · 이재연, 2011b; Kasarda, Janowitz, 1974; Fischer, 1982; Sampson 1988). 전신현(1996)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교통, 환경, 주택문제 등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진행된 연구결과(홍승애 · 이재연, 2011a)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한편, 삶의 질 측면에서 지역차이를 보고하는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거주 지역별 생활만족도는 대도시 청소년들이 읍면지역 청소년들보다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김선업, 1995; 김의철 · 박영신 · 광금주, 1998). 이런 결과는 도시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 환경은 즉 인구 밀집으로 인한 혼잡과 경제논리에 따른 도시 환경 즉, 주거공간의 협소, 교통 혼잡, 환경오염, 녹지공간의 상실, 놀이 공간의 부족, 지역 사회 이웃의 무관심과 익명성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해하며, 도시 슬럼지역의 각종 폭력과 착취, 그리고 범죄행위는 청소년의 삶을 위협한다(UNICEF, 1996).

2. 청소년 친화마을의 의미

1) 청소년 친화마을의 개념

많은 국가들은 도시 환경이 청소년에게 친화적이지 못하다는데 주목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각 국의 아동, 청소년 친화마을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왔다. 유니세프가

이 제시한 친화마을의 개념은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지역의 반영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다(김영지, 2006).

청소년 친화마을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이다(UNICEF, 2005).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친화적 양육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Malone, 2009). 청소년 친화마을은 청소년 본인은 물론 부모, 가족 지역사회 등이 함께 일구어 내어야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안전, 건강, 활동 및 여가, 배움 및 진로, 참여를 망라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소년 친화마을의 이념 및 의의

(1) 청소년 친화마을의 이념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의 기본 이념은 현행 청소년 정책의 이념과 동일한 범주에서 설정되어야 정책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제 4차 청소년 기본 계획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이다.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역량을 바탕으로 꿈을 키우고 건강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행복한 가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한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념을 근간으로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은 ‘통합성’, ‘보편성’, ‘청소년중심’을 설정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의 기본 이념 중 청소년 친화마을이 보편성과 선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본 이념 중 보편성을 보편성과 선별성의 균형으로 설정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2010).

① 통합성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가족, 여성정책 등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범정부적으로 교육, 고용 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정책영역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② 보편성과 선별성의 균형

모든 청소년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성, 인종, 문화, 지역, 계층 등에 관계없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인 서비스망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제공하고 아동 · 청소년, 부모 및 양육자, 교사, 서비스 제공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요구 상황에 직면한 빈곤가정의 청소년, 폭력과 범죄위험의 청소년 등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③ 청소년중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와 상황이 정책의중심에 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 중간수요자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층적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소년 친화마을의 의의

청소년 친화마을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가능하다.

둘째,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지역사회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관심과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지역사회(마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동참하여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차별을 없애고 더불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넷째, 청소년 친화마을의 궁극적 목적은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3) 청소년 친화마을의 기본 요건

청소년 친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청소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유니세프의 아동, 청소년 친화마을 사무국에서 제시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개발을 위한 9가지 기본 틀과 세계 각국의 친화도시 조성의 과정을 볼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친화적인 법

청소년 친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중앙과 지방자치제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 친화마을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청소년 친화마을의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상황에 맞게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게 되며 이는 다시 지역사회 행동 계획을 낳게 된다. 이러한 법 체계는 청소년 친화마을의 성과를 측정하는 모니터링의 준거가 될 수 있다.

(2) 청소년 친화적인 마을의 정책 및 행정체계

청소년 친화적인 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 및 행정체계는 필수요건이다. 정책의 수립은 지역사회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별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다. 영국 ‘The Play Strategy’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 건축 및 시설 규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실행하였다.

영국 ‘The Play Strategy’는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둘째,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정책이 개발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넷째, 도시의 계획과정에서 폭넓게 청소년들의 욕구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였다. 다섯째,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활용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하였다(The Play Strategy, 2008).

친화마을 추진과정에서의 행정체계는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주요한 기제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 친화마을 행정부서는 다양한 서비스 전달기관의 핵심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담당 행정부서는

관련된 부처간 협력 뿐 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발달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행정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이제까지 서비스체계가 각 부서별로 분절된 형태로 구성되고 주무부처의 의지에 따라 투입된 비용에 비해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적인 지적(황옥경, 2011)에 의해서 더욱 강조된다.

(3) 청소년 친화마을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핵심적이다. 예산의 정도에 따라 집행 수준이 좌우된다.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청소년의 정책 수행 및 목표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청소년 예산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여성복지 등에 비해 상당히 낮다.

예산확보 만큼 공정한 분배도 중요하다. 브라질과 에콰도르의 친화도시의 예의 책정은 청소년의 참여가 허용된다. 예산분배과정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의 친화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결정하고, 우선권을 부과하며, 비용을 감시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좀 더 공정한 예산분배를 할 수 있게 되었다(이재연·황옥경·이은주, 2009).

(4)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청소년 친화마을의 인식 확산과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민들 중 정책의 주체자인 청소년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확대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사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을 고려할 때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와의 협력도 요청된다.

3. 친화마을 의미에 근거한 청소년 정책의 한계

유엔과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유럽평의회 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별 국가의 청소년 정책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이광호, 2009) 이에 필요한 다양한 청소년 정책 이해와 관련된 기본적인 연구(Fremerey et al., 1997, UNESCO, 2004, Jeffrey, 2008)들을 내 놓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개별국가들의 청소년정책 보고서를 취합하여 그 내용과 특성을 비교, 분석(LARD, 2001, Siurala, 2005, Williamson, 2008)하는데 주력해 왔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독자적인 청소년종합대책은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5-1987)이며 본격적인 청소년정책이 추진된 계기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1-2001)이다. 이후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1-2001)은 최초로 청소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위주의 단기적, 산발적 정책을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예방적 종합적 정책의 방향으로 청소년 법률을 제정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수련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청소년정책을 육성과 수련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책 대상을 객체화하고 대상화하는 한계를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의 성과는 정부정책에서 청소년정책의 독자적인 영역을 설정하였고 청소년활동 위주에서 가정, 학교, 청소년보호 및 선도, 국민참여 부분을 확대하여 통합적 정책 추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복지영역을 구체화하였다.

청소년 주관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은 한계로 나타났다.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은 성인 주도가 아닌 청소년을 정책의 주체로서 이해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중앙부처 중심에서 지역, 현장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지역사회 중심의 추진체계가 부진하였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은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참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법 등을 제정하여 법체계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위험요소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관련된 정책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시기는 청소년업무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정책의 조정력과 실효성의 문제를 노출하였다.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4개분야 12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책과제는 청소년친화지수의 개발과 함께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친화관련 정책은 소외되어 있었으며, 제4차 기본계획이 수정된 이후 추진과제가 실행되어가는 단계이다. 기존 청소년 정책은 급격한 사회적 환경 변화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적절한 대응책을 포괄적으로 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이혜원 외, 2009).

또한 청소년정책은 부처이관에 따라 청소년 정책의 방향이 해당 부처의 기능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함께 고유의 정책 영역에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다. 2011년 현재 청소년 관련 사업은 35개 중앙행정기관(15부 2처 18청) 중 27개 기관에서 255개, 16개 시도에서 634개가 추진 중이나 부처 간 사업 시너지 창출이나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달체계 간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한계를 청소년 친화마을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정책 위주이며 지방정부의 정책은 소수로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정책의 성과지표가 가시화되지 않고 평가지표가 모든 정책을 망라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셋째, 청소년 참여는 대부분 명목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시가 어렵다.

청소년은 생애과정의 전환기(turning point)이다. 신체적으로 왕성한 변화와 논리적 사고의 지적발달을 이루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변화과정에서 호기심과 충동을 통한 다양한 욕구를 갖게 되고, 미성숙하고 불안한 과도기적인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변화와 적응에 있어 국가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실행하는 기제는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이어야 한다.

제 3 장

국내외 친화도시 조성 사례 분석

1. 국내 친화도시 조성 사례 분석
2. 국외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사례 분석

제 3 장

국내외 친화도시 조성 사례 분석

1. 국내 친화도시 조성 사례 분석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사회는 그동안 경제발전 논리에 밀려 물리적·양적 발전에 치중한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지역사회 거주 공간의 질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공동체 조성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대 변화를 수용하여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였으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친화 지역사회’,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기초 작업도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도 실시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보다 사람이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체 노력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의 친화도시 조성 사례를 살펴보고 청소년 친화마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와 구체적인 실천전략,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1) 추진 현황

중앙정부는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¹⁾를 중심으로 ‘살기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공간의 질과 삶의 질 제고를 통해

1) 중앙정부의 명칭은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었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앙정부의 명칭은 해당년도의 명칭을 사용하였음.

새로운 지역을 창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삶터로서의 공동체, 일터로서의 공동체, 쉼터로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주민참여에 의한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가 제도화되었으며,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대표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0개 시범지역에서 시책이 수행되고 있으며, 국가지정 30개 시범지역은 부산 기장군, 경기 안성시, 양주시, 강원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충북 보은군, 단양군, 충남 논산시, 금산군, 전북 남원시, 완주군, 부안군, 전남 곡성군, 장흥군, 강진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포항시, 안동시, 군위군, 의성군, 영덕군, 고령군이고, 경남 밀양시, 남해군, 함양군, 제주시 등이다.

(2) 살기좋은 지역의 구성요소 및 점검지표²⁾

□ 구성요소

첫째, 마을 재 디자인 및 실행이다. 즉, 편리하고 아름다운 시설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살기좋은 지역에 부합한 공간을 계획하고 수립하도록 한다. 둘째, 삶의 질 향상이다. 교육, 문화, 의료, 복지, 환경, 주택 분야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을 실시하며, 중앙정부, 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한다. 셋째,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이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교육, 의료, 복지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완결을 추진하며, 동네의식의 공고화 및 확산을 실시한다. 넷째, 지역소득기반을 창출한다. 지역문화, 특성 등을 살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소득기반을 강화한다.

□ 점검지표

살기 좋은 지역 지표는 편리·안전, 풍요, 아름다움, 화합의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리성과 안정성 영역에는 인구 1,000명당 극장, 도서관, 전시관, 스포츠, 여가 시설 수, 도로 포장률, 주차공간, 정보화 수준 평가, 자연재해 및 화재 발생 수, 교통사고율 등이 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풍요로움 영역 지표에는 1인당 지역총생산, 가구당 소득, 가구당 지방세, 주택소유가구비율, 생활보호세대 비율, 빈곤율, 불량주택비율 등이 있다. 아름다움 영역에는 인구 1,000명당 녹지면적, 대기 및 수질오염, 가구 당 쓰레기 배출량, 주택, 공간, 시설 등 삶터를 중심으로 한 경관의 심미적 아름다움으로 평가한다. 화합영역에는 자치활동의 활성화, 공유 공간 확보여부, 공동 발전기금 존재여

2) 김태영(200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삶의 질 향상 매뉴얼. 행정자치부.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이종수(2008). 살기좋은 지역 측정모델 개발 및 활용방안. 행정자치부.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부, 봉사단체 수, 이웃을 돌보기 위한 활동 수준 등으로 평가한다.

(3)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례³⁾

①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

광주광역시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로 변화한 대표적 사례이다.

□ 추진 과정 및 성과

광주 문화동은 북구청이 주도하는 관주도의 운동으로 추진되었다. 민선자치 이후 관 주도적 행정체제에서 주민참여의 행정체제로 지방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00년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샅터 가꾸기, 마을의 인재육성, 지역공동체 형성의 3대운동이 수행되었다.

첫째, 마을 샅터 가꾸기 운동은 일상생활의 환경 중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문제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 개선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이다.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골목 가꾸기, 주민편익시설 설치, 썸지공원 조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6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주체가 되어 운동을 전개한 결과 2007년 현재 4개 분야에서 총 169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둘째, 마을 만들기 위원회, 광주 YMCA, 전남대 법률연구소 등이 주체가 되어 교육을 실시하는 마을의 인재양성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학교, 평생학습주민축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주거공간별, 자생단체별, 계층별로 공동체 사업을 전개하여 이웃 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이다. 아파트 자치회, 자생공동체, 기타 주민조직 등이 주체가 되어 아파트 시화전, 주민축제, 좋은 책 읽기, 텃밭 가꾸기, 김치 담가 주기, 가로변에 계절별 꽃 심기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 광주 북구는 마을 만들기 전담 조직 구성,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공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3) 류중석 외(2007).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성공요인

광주 북구청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 요인을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다. 광주 북구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치하였다. 2005년 10월에 자치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결과 전국 최초로 마을 만들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 셋째, 마을 삶터 가꾸기, 마을의 인재 육성, 지역 공동체 형성의 마을 만들기 3대 운동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24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마을 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분석, 평가 등 사업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차원에서도 그동안의 마을 만들기 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구에 전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활동의 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행정적 지원 때문이다.

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⁴⁾

(1) 추진 현황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경향의 심화 및 가족기능의 변화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 공백 문제 해결과 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장하였다. 2006년 여성가족부에서 기본계획과 시범사업을 수립하였다. 강원도 영월과 충북 논산 그리고 전남 장흥의 3개 지역이 2006년 12월 ‘가족형’ 모델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간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2007년 11월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6월 시행령이 제정되어 정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의 지원, 가족친화시설의 조성, 지역사회 가족돌봄환경 촉진, 가족친화문화의

4) 홍승아·김혜영·류연규 외(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확산 등을 계획하고 있다.

(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요소 및 점검지표

□ 구성요소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은 세 개의 구성요소가 있다. 첫 번째, 지역사회의 철학이다. 지역사회는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 제도적 자본의 4가지 주요한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과 관련하여 본다면 4가지 자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철학, 그리고 태도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서비스 인프라이다. 서비스 인프라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세 번째, 시민의 참여와 네트워크이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과 전달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친주민적 복지프로그램으로의 이전과 확산이 가능한 기반이 된다.

□ 점검지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건은 지역사회철학, 서비스 인프라, 참여와 네트워크 3개의 주요영역에 따라,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 철학영역에는 지역사회의 정책기조, 지역사회의 사회문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비스 인프라 영역에는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환경친화성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와 네트워크 영역에는 인간관계 및 사회적 관계, 참여에 의한 공동체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

(3)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사례⁵⁾

① 전남 장흥면 우산리

전라남도 장흥면 우산리는 2007년 ‘가족친화형 마을만들기’ 시범 사업지 중 하나로 2008년 사업평가 시 최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2009년 하반기에 3개년 사업평가 우수 권역에 선정되는 등 우수 모범 사례로 꼽힌다.

5) 김선미·이승미(2010). ‘가족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사례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4(4), 101-126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 추진 과정 및 성과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별 농산물 공동 작업장, 유기축산, 지렁이분변토시설확충 지렁이 생태학습장 리모델링 등 소득기반 및 마을 홍보사업이다. 3개년 간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2월에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시범지구로 선정되었고, 5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2008년 3월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고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스터플랜의 4대과제는 ‘공간의 질과 삶의 질 제고, 공동체 활성화, 소득기반강화’를 설정하였다. 2008년 6월에 실적 평가 최우수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어 평가결과 후속조치 지침으로 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을 실시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 영농조합 ‘느린세상’을 결성하고 유기축산 농업확대 등 7개 소득사업을 시행하였다. 2009년 2월에는 마을공동작업장 시설 등 6개 소득사업을 시행하였으며, 8월에는 3개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 추가 인센티브로 160백만원을 지원받았다.

마을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법인설립을 통한 마을생산성 향상으로,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한 주민 고정소득 확보 및 안정적 재료 확보, 농기구 공동 사용을 통한 농한기 휴경지 소득 작물 재배로 소득향상 및 가축 유기농 사료 공급, 둘째, 마을공동 소득기반 시설 구축으로 농산물 2차 가공품 생산판매를 통한 소득향상, 즉 1차 단순 농산물 생산에서 김치, 장류 등 2차 가공 및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증대 등이다. 셋째, 한옥마을 유치로 외부인 전입을 통한 마을 인구 증가를 들 수 있다. 우산마을에 9가구 병동마을에 4가구 총 13가구가 전입하였다. 넷째, 사업평가 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두 번이나 선정되었고, 우수 사례 발표 7회 등으로 홍보효과를 내었다.

□ 성공 요인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한 주요한 요소로 첫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장흥군의 경우 행정담당공무원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였고,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에 응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서 단시간 내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성 형성,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활성화 시켰다. 둘째, 민과 관이 협동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주체로 세우고 관이 지원하는 방식, 즉 주민참여와 연대 그리고 지원중심의 행정 원칙에 충실하였다. 장흥군의 시범사업은 ‘가족형’에 응모했지만, 지역주민의 요구와 이에 충실한 행정적 지원으로 생태형과 소득형으로 전이되어나갔는데, 이러한 과정 역시 관주도의 사업결정 방식보다 지역주민 공동의 관심사로부터 출발하여 마을에 맞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셋째,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행정적 지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진위원회 구성 등 스스로 질문하고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찾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3) 여성친화도시⁶⁾

(1) 추진 현황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김포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 2007년 대구 혁신도시계획,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광교신도시 등 신도시개발에 여성친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9년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기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제안하였으며 익산시, 여수시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맺고 여성친화적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2곳 지정에 이어 2010년 경기도 수원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대구 중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2011년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 2곳이 추가로 지정되어 총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구성요소 및 점검지표

□ 구성요소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구성요소는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형평성은 지역 내 참여 기회, 자원과 서비스에의 접근성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롭고 형평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돌봄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 육성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전통적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돌봄을 남녀가 공유하며 사회가 돌봄을 적극 분담하여 일-가정 양립의 환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 친환경은 자연과의 공생의 철학에 기반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발전을 의미한다. 네 번째, 소통은 행복의 원천인 소통과 친밀한

6) 유희정·김양희·이미원·최진·문희영(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관계를 촉진하는 주민 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도시 운영 시스템을 의미한다.

□ 점검지표

지역사회의 여성 친화성 평가지표는 도로기반 시설, 공공이용 시설, 주거단지의 3영역, 9개 세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기반 시설 영역에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이용 시설 영역에는 교육 및 문화, 사회복지 시설, 공공시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거단지 영역에는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프로그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례

2011년 총 12개 여성친화도시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있는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① 익산시

□ 추진 과정 및 성과

익산시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제 1호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다.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은 2008년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안되었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익산시 가정복지팀에서 수행해 온 여성회관 업무, 보육 업무 및 여성정책 업무 이외에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공공건축물의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의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초기 단계에는 노인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14개 부서가 협력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08년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후 14개 부서들이 2차에 걸친 전략 수립 회의를 거쳐 6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사업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2010년 사업으로 27개 부서 59개 사업으로 확장하였다.

익산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기 드물게 여성친화정책과로 명칭을 바꾸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담당하는 여성친화도시제를 신설하였다.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27개 부서가 참여하는 등 여성친화도시의 최소한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내 여성우선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공원에서 유모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성 화장실 수를 남성 화장실 수의 1.5배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안전도시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여성·어린이 안전망 지원을 위한 CCTV설치 등 13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교통사고 많은 곳, 위험도로 개선, 보행환경 정비, 녹색어머니회 및 모범 운전자회 교통안전 프로그램 지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다. 여성 및 모범 운전자 기사로 선정된 핑크 택시 50대를 운영해 여성, 노인, 어린이 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서비스도 확대하였는데, 220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여성 일자리 제공 및 안심보육정책을 추진 중이다.

□ 성공 요인

첫째, 전국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인 여성친화정책과 여성친화팀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총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정 2주년을 맞이해서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해 총괄부서 위상 강화 및 인원 충원을 위해 여성정책 TF팀을 운영하였다. 여성정책 TF팀의 중요업무는 익산시 모든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사업 발굴과 추진 과정에서 익산시가 지속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교육,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워크숍, 여성친화도시 저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성인지 정책형성 교육 등을 운영하였다. 특히 보고회나 워크숍에 익산시장 또는 부시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시정의 주요한 사업 분야임을 공무원들에게 인지시켰다. 셋째, 여성단체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간을 따로 만들어 시민들의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여성친화 서포터스를 구성하고 익산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점 또한 사업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참여 기제를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고령친화적 지역사회⁷⁾

(1) 추진 현황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노인의 사회참여 및 시민참여가 증진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녕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과 서비스가 갖추어져 노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이다(정경희 외, 2008).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령화를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실태를 진단·평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정책 대안을 도출한 지역사회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1년 서울시가 ‘고령친화 도시 서울’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사회조례」를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준비할 계획이다(서울시, 2011).

(2) 고령친화적 지역의 구성요소 및 점검지표

□ 구성요소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교통, 주거, 건강보호, 안전, 존중, 재정 및 환경 등을 구성요소로 선정하고 있다.

□ 점검지표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성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로는 고령친화적 가치기반조성, 노인의 독립적 생활보장, 노인의 사회참여 보장, 노인의 적절한 보호의 5개영역의 15개 하위영역, 3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친화적 기반조성 영역에는 연령 통합, 고령자 존중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인의 독립적 생활 보장 영역에는 신체적 독립성, 경제적 독립성, 주택과 주거환경의 안전, 이동성 및 안전한 교통환경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보장영역에는 경제활동 참여, 사회적 활동 참여, 평생교육 참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인과 부양가족의 적절한 보호 영역에는 노인장기요양보호, 독거학대노인 보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령친화적 제도 기반 조성 영역에는 정책 추진의지 및 관심, 인력 관리, 민간의 고령친화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 정경희·이윤경 외(2008). 초고령지역의 보건복지 모형설계를 위한 세부지침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3)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사례

① 서울시

아직까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례는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즉, ‘서울특별시 고령사회조례’를 입법예고하였다. 이 조례에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서울 노인정책센터 설립·운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비율 전체 직원 30%이상 의무화, 생산적 노년 등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6개 분야’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2011). 또한 조례에는 5년마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도 평가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국제교류 활성화, 욕구조사 실시, 교육과 홍보 및 고령친화 기여자 표창 등 고령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서울시 고령사회정책은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6개 분야를 토대로 한다. 즉,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이다. 조례제정을 통해 고령사회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서울시, 2011).

5)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 평가⁸⁾

(1) 추진 현황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2008년까지 매년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복지정책을 평가하였고, 2009년도부터는 정부의 업무조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통합되어 실시되었다. 평가결과를 통하여 지역 간 복지수준의 격차 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의 체계를 형성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는 2006~2008년 기간 동안 매년 실시되었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종합평가를 실시한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 종합평가 실시 전에는 기초보장, 자활, 의료급여 등 부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복지총괄,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서비

8) 보건복지부(2011). 2010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스, 기초생활보장, 자활, 의료급여의 9개 영역, 14개 평가지표, 37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2) 아동·청소년복지분야 평가지표

영역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복지총괄영역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반 확충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활성화,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에 대한 3개 지표, 노인복지영역은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기초노령연금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2개 지표, 아동청소년영역은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에 대한 1개 지표, 보육영역은 보육서비스 확대에 대한 1개 지표, 장애인영역은 장애인복지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구매사업 성과에 대한 2개 지표,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사회서비스 사업 업무추진의 적절성에 대한 2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기초생활보장영역은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1개 지표, 자활영역에는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에 대한 1개 지표, 의료급여영역에는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3) 아동·청소년복지분야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평가지표는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적절성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성화 정도,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률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1-1 2010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평가를 및 평가지표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적절성	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30점	5.68
		나.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40점	
		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률	30점	

아동, 청소년복지분야는 평가점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복지분야의 평가점수가 상승한 이유는 주무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하였기 때문이다.

평가점수분포를 비교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모두 점수 분포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점수 격차는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분야에서 대도시의

증감률은 35.33, 중소도시, 32.44, 농어촌은 23.07이다. 그러나 각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대도시가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표 III-1-2 2010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점수분포

아동·청소년복지	대도시	494.16	227.20	329.06	78.981	27.787***
	중·소도시	516.88	255.60	413.90	48.402	
	농·어촌	516.88	227.20	372.22	77.938	

표 III-1-3 2010년 아동, 청소년복지 영역의 복지정책 평균 평가 점수

(단위: 점)

지역	평가 그룹	아동·청소년 복지
전국		372.28
대도시	A그룹	328.63
	B그룹	348.37
	C그룹	321.11
	D그룹	338.15
	E그룹	308.99
중소도시	F그룹	409.34
	G그룹	422.59
	H그룹	405.17
	I그룹	417.84
	J그룹	414.29
농어촌	K그룹	384.49
	L그룹	397.16
	M그룹	360.02
	N그룹	376.50
	O그룹	345.26
	P그룹	371.63

아동·청소년복지영역은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의 적절성」으로 평가된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적절성의 평가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568점 만점에 평균 372.28점이며, 표준편차는 77.60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평균점수가 413.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372.22점, 대도시 329.06점으로 나타나 대도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I-1-4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적절성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적절성	전국	100.00	516.88	227.20	372.28	77.60
	대도시	100.00	494.16	227.20	329.06	78.98
	중소도시	100.00	516.88	255.60	413.90	48.40
	농어촌	100.00	516.88	227.20	372.22	77.94

6)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친화 지역사회의 특징과 개념, 구성요소와 점검 지표, 실천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리모델링 과정과 성과 그리고 성공요인 및 시행착오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친화마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여성친화도시,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의 성공 사례를 보면 총체적인 행정 시스템, 서비스 인프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연대,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 전개 등 행정지원과 주민참여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지원 측면 그리고 주민참여 측면 두 축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종합적인 사업추진과 포괄적 지원

청소년 친화마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를 행정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친화마을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과 장·단기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며 사업의 상호증복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주관부처는 1964년 이후 지금까지 10차례나 개편되었으며, 부처이관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해당 부처 기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며, 정책의 일관성 및 통합성이 부족하고, 정책 영역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기능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는 대상중심의 정책 추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각 부처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친화마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 정책과는 다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실제로 여성친화도시의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체계, 조성 매뉴얼 등 여성친화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의 책임 소재와 역할이 분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및 세부실천 계획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실시하며 소속공무원 대상 심화교육을 제공하며 시민 서포터스 교육도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주관부처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이 사업의 초기기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친화마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의 주무부서가 명확해야 하며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부서가 협력해야 한다. 중앙부처의 체계적인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할 담당할 주무부서의 명확성과 타부서와의 상호 협력이다. 2011년 현재 16개 시·도에서 634개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중이며, 시·도별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도 제각각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복지여성국의 생활복지과에서 아동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춘천시는 복지국의 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마다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도 다르며 여성가족국의 한 분야로 속해 있어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여성친화도시 1호로 지정된 익산시의 경우 ‘가정복지팀’에서 수행해 온 여성회관 업무, 보육 업무 및 여성정책 업무를 여성친화정책과로 명칭을 바꾸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담당하는 여성친화도시계를 신설하였다. 또한 공공시설과 도로 등의 도시 인프라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과, 교통물류과, 산림공원과, 주택관리과 등 그동안 성 평등 정책과 무관하다고 인식되었던 부서들의 정책 참여를 이루어 내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이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특히 청소년관련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청소년 관련부서의 위상이 달라지고 지역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예산이 달라지며,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달라져서 청소년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 부서의 정책 전달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친화마을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청소년 친화마을 사무국’ 운영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유니세프는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를 운영하여 각국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소년 친화마을을 담당하고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갈 주무부서나 사무국이 신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여성친화도시도 201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법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친화 지역사회도 2008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담체계와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매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정책의 단절과 분절 없이 가족친화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령사회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예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친화마을도 정책의 추진 근거와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확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 환경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며 청소년영향평가를 통해 정확한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하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서도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추진방향과 전략을 발굴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가족친화 지역사회, 고령친화 지역사회 모두 각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실제로 익산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구별하여 차별적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자원과 인프라가 지역사회마다 다양하게 때문에 청소년 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마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주민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청소년 친화마을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친화마을 만들기 사업 실행 단계에서 부터 사업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는 채 중앙정부의 평가기준에만 맞게 초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전남 장흥군을 보면, 주민참여와 행정 지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을 하지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의 내용을 계획하고 조직하였으며 행정기관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를 취했다. 익산시의 경우도 여성단체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접근성 또한 높이고 있다. 여수시도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시민리더’ 교육 실시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이해와 모니터링 능력을 함양시키고 민·관 협력관계 및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시행 단계부터 발전 과정까지 주민과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친화마을을 주민주도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 혹은 주민조직 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변화 시키는 활동에는 관심 있는 몇몇 소수의 주민만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차성란(2010) 연구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로 출발하여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를 포함한 주민, 주민단체, 시민단체, 연구소, 학회 등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하며 지역 간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소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청소년 친화마을의 주체는 청소년이므로 청소년의 참여 없이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 친화마을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은 노인이나 여성과 달리 그 권리의 취약성으로 인해 참여의 기회 자체가 제한되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의 이해관계에 대립되는 사안이나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 점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 참여활동은 청소년의 민주 시민의식을 고취하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참여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마련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 친화마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논의하였다. 최근 화성·동탄 신도시 개발 실시계획에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추진해온 청소년유해환경 격리구획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하는데 큰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간 기업 시공사만이 개발 주체가 되어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신도시 건설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지역을 정비하려는 지역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 청소년이 개발 주체가 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친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지역사회에 맞는 친화도시 추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족친화 및 여성친화도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체는 자신의 지역 주민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모든 친화도시 추진 내용은 지역사회에 따라 다르고 추진 방식도 다양하였다. 이것이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청소년의 요구와 생활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문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친화마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청소년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둘째, 지역자원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가용한 자원의 범위를 토대로 청소년 친화마을의 추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물리적 환경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체는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친화마을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지역사회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건강한 청소년의 발달과 여가를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도 요구된다.

2. 국외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사례 분석⁹⁾

유니세프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청소년 친화마을 만들기(CFC)’와 ‘도시에서 성장하기(GUIC)’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고 이들의 필요와 견해가 지역의 기획시스템에 통합되도록 하며, 의사결정자들과의 접촉과 관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성인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 아동·청소년, 민간단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일하는 협력 이니셔티브로서 네트워킹과 정보 교환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활동들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소외, 배제, 지루함과 정치적 무력감, 착취, 폭력, 학대 등 위험상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랜 역사와 다양한 지역의 검증작업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만큼 많은 정보와 실천사례를 수집·분석 및 표준화하여 이 지식을 정책개발자들과 지역사회에 배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역의 질과 환경, 사회적 자본이 아동·청소년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출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방안 모색에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9) 이 절은 ‘김영지 외(2006).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137-181’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1)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Child and Youth Friendly City: CFC)

(1) 개요

청소년 친화도시란 청소년의 권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위임된 지역의 관리 시스템으로 청소년의 의견 존중, 욕구 반영,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있다. 청소년 친화도시(CFCI)는 1996년에 시작되어 모두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UN의 두 번째 회의에서 통과·결정되어 실행되었다. 도시 안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발전을 즐길 기회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혼자 사는 아동·청소년, 비공식적 거주 아동·청소년, 노숙 아동·청소년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청소년 친화도시는 아동과 청소년을 문제의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의 부분으로 바라본다.

청소년 친화도시는 다음의 10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생활에 관계된 프로그램(initiatives)에 아동과 청소년을 참여시킨다, 2) 기획, 실행 및 좋은 지배구조의 과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한다, 3)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생활에 청소년의 참여를 권장한다, 4) 보건, 교육, 보호소, 안전한 물, 적절한 위생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한다, 5) 청소년을 착취, 폭력, 밀매 및 학대로부터 보호한다, 6) 사회화와 건전한 놀이를 위해 안전한 거리와 장소를 유지·보수한다, 7) 녹색 공간(나무와 풀이 있는 공간)과 운동장을 제공한다, 8) 오염과 교통을 통제한다, 9) 문화 및 사회 행사를 지원한다, 10) 모든 아동·청소년이 연령, 성, 소득, 피부 색깔, 인종, 문화적 기원, 종교 혹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친화도시 실천을 위해서 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도시”를 고안하는 계획가들을 돕는다. 청소년 친화마을은 지역정부, 중앙정부, 비정부조직과 같은 시민사회단체(NGO)와 지역사회 기반 단체(CBO), 지역사회, 국내·국제기관, 전문가들과 학술단체, 사업체와 매체, 중요한 아동과 청소년 그룹과 연계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네트워크와 정보 교환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활동들이 양산된다.

청소년 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이상적인 수준은 도시 혹은 마을이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예, 스페인과 필리핀) 중앙정부가 청소년 친화도시를 권장하기 위해 국가적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세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은 그들의 문제, 욕구, 기회,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과 더불어 계획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청소년에게 친화적이 되길 열망하는 도시들은 보통 도시의 고유한 방법과 목표를 채택하여 그 열망을 성취한다. 어떤 도시들은 사회 분야의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다른 도시들은 환경적인 목표에 주안점을 두며 또 다른 도시들은 보다 전통적인 도시계획 접근법에 따라 단순히 외형적 기본 시설의 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어떤 접근법을 채택하든 목표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반응하고 그들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보통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청소년 친화도시 이니셔티브의 주요 틀로 채택되고 청소년의 참여가 이 과정의 핵심 요소이다.

청소년 친화도시는 다음의 3가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연구, 자료 수집 및 시사점들을 추출한다. 자료 수집과 데이터 처리, 자료 혁신인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추출된 시사점과 유익한 실천 전략을 증진시키며 적절한 정보형성 및 청소년 친화도시 직원을 위한 정비 서비스를 한다. 둘째, 정보를 교류한다. 특정화된 청소년 친화도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자료를 관리 및 공유하고, 3가지 언어(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된 청소년 친화도시 웹 사이트를 구축하며 경험을 교류, 출간물을 생산·배포한다. 셋째, 네트워킹을 중점 실시한다.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기반한 발전 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가, 관련 행정기관, 지역사회 전문가와 NGO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계획 수립에 청소년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그룹의 네트워크 형성, 상담 분야 및 프로그램을 개발·원조, 청소년 친화도시 이슈와 관련된 국제적 지방·지역 회의를 조직화한다.

(2)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 개발을 위한 9가지 원칙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무국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정의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청소년 친화도시의 틀(framework)을 개발했다. 이 틀에는 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 지배 체제를 건설하는 단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 틀에는 국가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역 정부의 절차(local government process) 속에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밝혀져 있다. 청소년 친화도시 개념은 그 사회의 규모, 도시·시골에 상관없이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수정될 수 있는 기본 골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틀이 개발되었다.

이 틀은 소위 청소년 친화적 도시를 위한 토대(building blocks)라고 부르는 것 즉, 청소년의 적극적인 개입을 조장하고 모든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권리가 고려되도록 하며 청소년들도 기본 서비스의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구조 및 활동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다. 청소년 친화도시를 건설하려면 정치적 결단과 정부 내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

- ① 청소년의 참여(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도모함;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의견을 고려함)

이는 청소년 친화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며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한다. 청소년들을 협력자로, 고유한 인간으로, 권리를 가진 자로, 동등하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인식한다. 물론 정부의 정보나 조직 및 회의를 청소년들에게 개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청소년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상당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즉, 정보의 형태 및 제공 방법의 변화, 토론과 자문 구조의 변화, 회의의 조직, 타이밍(timing) 및 의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전 세계적 수용은 겨우 10년 정도 지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협약 제 12조에서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은 여러 관계들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관련 기관 및 서비스들 또한 서서히 청소년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와 도시들에서 상당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반영하는 법률은 보기는 봐도 듣지는 않는다는 청소년들에 대한 전통적 태도에 도전하고 있으며 부모, 교사, 기관 종사자(care workers) 및 여러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의 견해를 듣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들은 청소년들에게 특별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몇몇 경우에 있어 자문 내용을 일상의 활동에 실행하려 하고 있다.

청소년 친화도시의 건설 과정을 이끌어 가려는 자들은 긍정적 개입에 관한 많은 본보기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청소년 참여 방법들을 개발할 여지는 더욱 많다.

- ② 청소년 친화적인 법적 틀(모든 청소년의 권리를 일관적으로 증진·보호하는 법률, 규정 및 절차를 확보함)

지역 당국은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양상의 법적 틀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정부(local government)는 지역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놓여 있지 않은 법률 즉, 국가 및 지방(region)의 법률 또한 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 보호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든든한 대변인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뿌리를 둔 명확하고 원칙적인 법적 틀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과 실행은 개발되기 어려우며 개발된다 하더라도 매우 고르지 못하게 개발되어 차별적인 방법으로 개발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법적 틀이라 하더라도 인식제고, 훈련,

필요할 경우 강제 등을 통해 적절히 실행되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유용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아동권협약의 주요 원칙들은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 사법 절차들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의 견해를 반드시 듣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협약 제 12조는 법률 뿐 아니라 정책과 실행에도 관계된 조항이다.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는 것은 정부의 검토 뿐 아니라 독립된 전문기관의 참여 및 조사를 포함한다. 어떤 이슈들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들이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들 외에 누가 그들의 의견이 가족, 학교 및 이웃에서 존중 받고 있는지 여부를 말해 줄 수 있는가?

③ 도시의 청소년 권리 전략(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청소년 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 혹은 아젠다 개발)

국가들은 1990년 아동들을 위한 세계정상회의(the World Summit for Children in 1990)와 2002년 유엔 아동특별총회(the 2002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for Children)에 의해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도록 권장 받아 왔다. 국가들은 이 행동계획을 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두도록 했다.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국가들이 아동권리협약 전체를 포용하는 통일된 전략 및 아젠다를 개발하도록 강하게 촉진한다. 지역의 청소년 권리전략은 이러한 국가적 과정에 합리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적 전략 및 활동 계획은 청소년을 위한 협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 수준의 과정과 국가적 계획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2002년 아동특별총회 결과 자료인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은 국가 정부들이 다른 관계 기관 중에서도 특히 지역 정부 및 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개발 아젠다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돕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와 슬럼가 없는 도시와 같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initiatives)에 기초해 시장 및 지역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의 삶을 상당 수준 향상시킬 수 있다(31항(iii)).

도시 수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모든 서비스에 동일하게 접근하려면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원칙의 채택과 통일적인 청소년 권리전략, 이상적으로는 목적(goals)과 목표(targets)가 있는 청소년 권리전략의 개발을 요구한다. 정부의 수많은 부서들과 수 없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청소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정(coordination)이 절실하다. 전략 개발이 정부 내 여러 부서간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면 조정의 필요성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나타나게 되고, 조정의 목적을 정의하면서 통일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을 이끌 수단으로서 지역 정부의 중심에 가까운 전담 부서나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청소년 친화도시 건설이 초점인 전략을 개발하려면 청소년들과 다른 모든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지역 수준에서의 과정은 국가 계획에 연계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지역 혹은 마을 수준의 정부에 반영될 필요도 있다. 아동권리전략이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인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 내 최고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지원(commitment)이 필요하다.

청소년 권리전략이 정책과 원칙의 성명서로 그치지 않으려면 청소년들의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전반적으로 관련된 실제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좋은 의향을 열거한 리스트 수준을 벗어나려면 도시 내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실행 과정에 대한 묘사를 포함해야 한다. 이 전략의 주된 목적은 아동권리협약에 있는 비차별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단 전략에 대한 초안이 작성되고 나서 이 전략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시(municipal), 지역사회(community), 마을(neighborhood) 수준에서 이 전략의 수행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 이 전략을 청소년이 알아 볼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들과 더불어 혹은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기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전략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한 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다. 전략에 포함된 목표와 우선순위는 계속 갱신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의 내용 안에 모니터링과 검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목표와 우선순위들은 청소년의 실제적인 생활에 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다시금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청소년 권리 부서 혹은 조정 메커니즘(지역 정부 내에서 아동·청소년들의 견해를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일을 책임질 영구적인 구조)

지역 정부의 시스템(machinery)은 나라, 도시마다 다르다. 어떤 시스템에서건 청소년 친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정부의 중심에서 가시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영향력이 큰 독립적 총괄부서(a high profile cross-cutting) 혹은 조정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부서 혹은 조정 메커니즘은 효과적인 조정, 모니터링 및 평가를

확보하며 청소년 전략의 실행을 추구하기 위해 최고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시장이나 지도자의 사무실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서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내 다른 부서들의 기능을 취하진 않는다. 이 부서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관점과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우선순위가 정부 내 여러 부서에 두루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협약에 뿌리를 두고 의견이 조율된 통일된 목표(청소년권리전략의 목적)가 있지 않고, 청소년들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부서들 간의 효과적 조정이 없이는 청소년 친화마을 건설은 미완성될 것이다.

또한 중앙 부서 간 그리고 중앙 부서와 지역사회 및 마을 수준의 정부 간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이익이 정부 부서와 부서 사이에서 자주 상실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정부 부서 하나의 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다.

또한 각 부서 혹은 정부 영역 내에서 청소년들의 관점을 확보·개발하는데 책임 있는 주요 관료나 정책 과정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는 정부 내 내부적 조정을 위해서 뿐 아니라 누가 청소년과 그들의 권리에 책임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는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역 지배구조에서 청소년들에게 맞춘 초점은 아동 및 청소년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데 있어서의 혁신과 전문성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⑤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법, 정책, 업무 수행이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할 체계적 과정 마련)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도시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들은 아동들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들이 최상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갖도록 요청받고 있다. 어떤 정부도 법, 정책, 업무 수행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조사할 수 있는 엄격한 과정이 없이는 이 원칙이 실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길이 없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영향력 조사(child impact assessment)라는 개념을 국가적 차원에서 증진해 왔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토론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실행에 옮긴 국가는 거의 없다. 물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비차별 과정(non-discrimination process)이란 전통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법과 정책이 모든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법률과 정책은 특정 그룹 혹은 연령 집단의 아동·청소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이런 집단에 편중된 영향을 미친다. 법률과 정책은 실행되기 전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해 조사되어야 한다. 이 조사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본보기로서 환경에 대한 영향력 조사와 성(gender)에 대한 영향력 조사와 같은 도시 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효과적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일단 정책이나 법이 집행되고 나면 이것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도시 정부가 이런 과정을 정책 개발 과정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아동·청소년 인권 기관이 있는 곳에서 독립적으로 아동에 대한 영향력 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정의에 따라 법률적 권한(legislative power)으로 설립이 요구되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구들은 청소년들의 옹호자 혹은 파수꾼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이야 말로 법이나 정책이 자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영향력 조사 과정에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다.

⑥ 청소년 예산(청소년들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 분석)

예산은 도시가 취하는 행동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특정한 방법이며 예산 분석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의 중요한 양상이다. 아동권리협약은 국가들이 최대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산 지출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틀을 포함해 상세하고 정확한 예산 분석이 없이는 어떤 국가나 도시도 그들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다른 원칙들과 마찬가지로 이 원칙의 중요한 목적은 청소년들이 가시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정부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산집행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가시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해 주는 몫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다.

도시 정부가 국가법과 관련해 그 도시의 청소년들을 위해 대변인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국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도시 정부는 도시의 청소년들, 특히 불우한 청소년들이 공정한 자원의 몫을 실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몫으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 및 보건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예산이 지역보다는 국가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도시 정부는 이러한 자원 배분이 공평한지 또 자원의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불공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예산 과정은 그 신비성이 제거되어야 하고 다른 모든 시민들에게와 같이 청소년들에게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⑦ 도시 청소년 정기 실태 보고서(청소년들과 청소년 권리의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

청소년 친화도시들은 도시 청소년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다. 출생에서부터 18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통계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중심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다. 남자 청소년이나 여자청소년, 혹은 소수 인종 그룹, 장애 아동 및 기타 그룹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계 및 정보가 일정하게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분리된 데이터 수집을 아동권리협약의 실행을 측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반 측정법으로 간주해 왔다. 개별 정부 부서들과 국가 통계 및 조사 관련 기관들이 국가 청소년들의 실태 보고서를 개발하는데 참여할 것이다. 도시 수준의 과정들(City-level processes)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지만 도시 수준에서는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 특히 차별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을 보다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 뿐 아니라 도시에서 증거에 기초한 정책 형성을 저해하는 지식의 공백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도시 청소년의 실태 보고서가 청소년 시민권 및 정치권에 대한 존중의 정도를 조사한다고 할 경우 이 보고서는 청소년들을 전문가로 그리고 가장 정확한 조사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존재들로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을 조사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조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평가, 욕구 조사, 해결책 제안 및 보고서 준비 등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수집된 통계와 정보는 분석을 거쳐 작성되고 이후 보고서가 출판, 배포되어 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토대로 사용될 것이다. 보고서는 주요 정책 형성자와 지역사회 지도자들 뿐 아니라 일반 대중과 아동·청소년들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형태로 준비, 출판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가치 있다. 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정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토론이 조직되어야 한다.

⑧ 청소년의 권리 알리기(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청소년의 권리는 그 권리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널리 알려져야 한다. 청소년 친화마을에서는 청소년들의 권리 소유자로서의 동등한 지위가 청소년들과 더불어 혹은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증진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은 국가들에게 협약의 원칙 및 내용들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성인 및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교육 목표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제 29조는 교육이 다른 것들 중에서도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하는데 방향이 맞춰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가나 도시가 인권 문화를 건설하는데 확고하다면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주안점을 두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학교의 교과과정에 인권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한 시작이다. 교육내용 뿐 아니라 학풍이나 학교 조직이 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청소년들과 더불어 일하거나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이해 및 존중심을 제고하기 위해 초기 훈련 및 연수프로그램(in-service training)이 조직되어야 한다.

도시 정부는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청소년들과 부모 및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청소년들로부터 자문을 얻어야 할 것이다. 비정부기구, 청소년 단체 및 대중매체와의 협력관계를 맺는 일은 이 기관들이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중요하다.

⑨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들을 지지하고 독립적 기관들은 청소년들의 옴부즈맨 혹은 청소년들을 위한 행정관 개발)

청소년 친화도시 건설에 전념하는 도시 행정부는 도시 청소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비정부기구들은 많은 국가들에서 청소년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아동권리협약의 채택 이래 청소년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증진하며 보호하는데 전념하는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설립되어 왔다. 많은 국가들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연합 및 협력체가 있으며 이들은 아동권리협약을 최대한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 함께 일한다. 비정부기관 용어는 매우 다양한 그룹들을 포함할 수 있다(인권 증진에만 전념하는 기구들, 노동조합, 교회 및 신앙 단체, 기타 등). 아동 및 청소년이 주도하는 단체들이 점차 많이 나타나면서 권리에 대한 자조적 대변인의 역할을 개발하고 있다. 성인들은 이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되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비정부기구들은 청소년 친화마을 건설의 한 협력자로서 도시 정부와의 공식적이며 영향력 있는 관계에서 점점 더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유엔은 국가 차원에서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증진 및 보호하는 기관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독립적 기관들을 추진해 왔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아동·청소년들의 옴부즈맨 혹은 아동·청소년 권리 행정관(commissioner)들을 두거나 국가 권리 기관 내에 아동·청소년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소수지만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권리 기관들은 지방 혹은 도시 수준에서 존재한다.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기관들을 실질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열쇠는 이 기관들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강력한 파수꾼이나 옹호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독립성이다. 이 기관들을 아동권리협약에 연계시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 기초가 제공할 수 있는 영향력을 부여함으로써 비정부기구들에 대해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 정부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옴부즈맨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가 옹호자의 역할을 할 수는 있다.

(3) 주요국의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사업

① 노르웨이

가. Children's Landscape

도시계획 과정에 아동과 청소년의 이해에 중점을 둔 웹사이트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실제 욕구에 반응하는 도시의 시설, 이웃, 학교환경의 개선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교육을 위한 건축(architecture for education), 녹색학교(Green Schools), 야외 활동(Outdoor education)”을 주요 이슈로 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또한 스칸디나비아와 다른 국가들의 이슈 및 기존 프로젝트의 유용한 자료를 링크시켜 놓고, 스칸디나비아의 모든 학교에 보내는 전자메일 수신연결을 통해 네트워크의 개발을 돕고 있으며 중요한 프로젝트는 서로 공유되어 있다.

나. Porsgrunn 모델 -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

Porsgrunn시는 1991~1992년 이래로 아동과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시의 여러 분야 안에서 물리적 계획을 단행하였다. Porsgrunn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지역 민주주의 강화로, 이는 긍정적인 존엄성, 참여 습관, 소속감 개발을 의미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자원,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성장과 관련 재능들을 이용한다. 1992년 이래로 매년 5월말 ‘아동·청소년 주간(children and youth week)’을 정하여 이 주간동안 흥미팅 회의, 문화교류, 워크숍과 ‘아동의 날(the Children's Day)’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문화교류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능하며 워크숍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1993년 Porsgrunn Joint Pupils(PFE) 회의를 설립하여 학교밖 청소년에게 관심을 두었다. 학생위원회(Pupil Council)에 따라 PFE는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아동의 이해에 관한 보호활동을 하였으며 회의에 고등학교 대표를 참석시켰다. PFE는 청소년 위원회 활동 계획과 수립을 담당하고 최근에 모자건강센터를 강조하는 추세이며 0세~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상담과 도시이미지의 강화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봉사 부문에도 관여하고 있다. 각 건강센터는 아동에게 책을 무상제공하고 책을 읽도록 권장하는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7년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PFE는 이를 10~20년 정도 오랜 기간의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발전했다. 결과적으로 7년 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학생위원회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경쟁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활동에 관심이 없던 아동과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게 되거나 실제 사회참여를 하기도 하였으며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② 스웨덴

가. 청소년 친화도시

“청소년의 도시”라 불리는 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정-스웨덴 분야(IPA Sweden)에서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의 주된 활동은 매우 학술적이며 기술적인 사고에 대한 평가 및 세미나·학회와 관련되어 있었다. 동시에 IPA 스웨덴은 많은 도시에서 시작된 “청소년 친화도시”를 인식하게 되었고 Jan Van Gils 대통령의 승인으로 스웨덴식 CFC 프로젝트를 고안하기 시작했다. IPA 스웨덴은 2001년 “청소년 친화도시”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 비정부단체(NGO)인 IPA 스웨덴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다. 비공식적 네트워크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에서 열리는 멤버십을 제안하고, 인터넷을 통한 연구는 많은 도시들이 청소년 친화적으로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주는데, IPA의 목적은 청소년의 놀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청소년이 여가시간을 안전하고 자유로운 지역에서 희망하는 바대로 보내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놀이는 청소년의 태생적인 행동으로 이해되고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목표의 주된 개념은 학교방식=놀이방식이다. 두 번째 목표는 청소년의 학교길을 보다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과 놀이 공간을 활동적으로 변화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거주 지역에 보다 많은 “home zone”의 윤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의 최종목표는 보다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 주거, 교통, 학교길, 거리, 주차장, 광장, 공원, 스포츠 공간, 여가센터, 문화시설 및 기타 공공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나. Nature School

Nature School의 주요 목표는 환경연구와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일하는 Lund 지역의 학교 지원과 자극제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Nature School은 교실, 학교 운동장, 지역사회와 주정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자연세계의 연구를 격려한다. 취학 전, 유치원 초등학생 및 6개 유형의 학교에 무료의 Outdoor School day가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각 학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2001~2002년 겨울 Lund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기 Outdoor School day를 갖는다. 100개 학급 이상(2500~3000명의 학생들)이 연중 일주일에 한번 Outdoor에 간다. 행사지역이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Nature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각 계절의 자연적 현상에 관한 정기보고를 하며 거의 매 주말 아동들은 지질학, 자연 속 식물이나 흔적과 같은 특정주제에 관한 안내여행에 합류한다. Green School days 프로젝트에서 아동은 교사, 교육관계자, 기술관계자, 도시의 부동산 분야와 원예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구상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③ 런던시의 아동·청소년 친화지역 만들기 전략

가. 개요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나은 런던 만들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틀 안에서 개발된, 보다 청소년 친화적인 런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 비전을 현실로 옮기는데 도움이 될 다양한 정책과 활동 우선순위들도 제시되어 있다. 시장이 교육, 보건 및 사회적 보호와 같이 주요한 청소년 서비스를 전달할 책임은 없지만 시장에게 교통, 기획(planning), 문화, 환경, 갭생, 예산에 관련된 중요하고 다양한 전략적 기획 권한이 있다. 또한 시장은 the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1999 대 런던 권한 법)의 제 30조항에 따라 런던 시민의 건강을 촉진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 런던에서 자라기: 런던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전략적 틀

이 문서에는 Greater London Authority(GLA)와 GLA 그룹 단체들의 모든 전략과 정책이 아동·청소년들의 최상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런던 자치구 및 자발적 지역사회 단체들의 사업을 보다 더 잘 지원하기 위한 폭 넓은 전략적 틀이 제시되어 있다.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나은 런던 만들기」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서비스, 시설 개발을 위한 지역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출판된 국가 녹서인 「아동·청소년

들은 모두 다 중요하다」에 제시된 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런던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생활과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포용할 의지와 함께 야심차고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은 다음 세 가지 전략적 목적들 1) 런던 아동 및 청소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젊은 런던 시민들의 생활의 다양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함, 3) 다양한 우선순위 분야들에서 런던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개선 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략적 틀 또한 세 가지 핵심 주제들인 빈곤과 사회적 소외 감소, 포용(inclusion)과 평등(equality), 양질의 서비스와 시설 제공에 의해 형성되었다.

다. 런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목소리

청소년 친화도시에서는 청소년들이 보이고 들린다. 시민으로서 또 권리 소유자로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되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갖게 되고 이 견해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진다.

이 전략적 목적은 모든 런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자신들의 나이와 성숙 정도에 따라 그 견해에 합당한 무게를 실어 주는 것이다.

아동·청소년들과의 자문과 성인들과의 자문 모두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GLA의 사업 모든 양상에 의미 있고 적절하게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시장의 활동계획은 1) 런던 청소년이 자신들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한다, 2) 모든 런던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참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3) 런던 청소년들을 위한 적절한 조언, 지원 및 변호 서비스와 불평 처리 과정의 개발을 지원한다, 4)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들이 올바르게 관찰되고 평가되는지 확인한다, 5) 아동과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과정에서 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메커니즘과 구조를 촉진한다.

라. 런던 아동·청소년 생활의 다양성 이해하기

이 문서는 연구 「런던 아동·청소년 실태 보고 2001(the State of London's Children Report 2001)」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보다 확장된 자문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다. 그러나 런던에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위치, 상황 및 보다 자세한 욕구에 대해 보다 더 응집된 이해를 개발하고 유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 전략의 목적은 전략 실행 시 계속해서 연구와 자문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적절한 시스템이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의 아동 및 청소년부서(The Mayor's Children and Young People's Unit: CYPU)가 아동과 청소년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실행 및 모니터링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모니터링, 평가 및 진척상황 보고에 관한 한 여러 영역에서 일들이 진행될 것이며 여기에는 1) 런던 아동·청소년 실태 격년 보고, 2) 런던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참여 프로젝트 감사, 3) 시장의 전략이 아동·청소년에 미친 영향 평가 프로그램(a programme of Child Impact Assessments of the Mayor's strategies), 4) 런던의 주요 아동·청소년 서비스에서 아동에 대해 사용한 비용 감사, 5) 평가 실시, 6) 주요 결과 지표 개발이 포함된다.

마. 청소년들을 위한 개선

(가) 건강하기

시장은 모든 런던 청소년들이 가능한 가장 최고 수준의 물리적, 정서적 건강과 복지를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많은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보다 더 청소년 친화적이며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마을 개발, 청소년 보건 영역에서의 불평등 해소, 정신 보건 서비스를 포함해 보건 서비스 사용 확대, 흡연, 약물 및 알코올 사용을 낮추기 위한 이니셔티브 개발이 포함된다.

(나) 즐기고 성취하기

시장은 런던의 모든 청소년들이 런던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즐기고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목적들을 이루려면 런던 청소년들의 놀이,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적 활동·기회들이 보다 청소년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바뀌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불우한 그룹들이 교육과 훈련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 안전하게 지내기

시장은 런던의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적·물리적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믿는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런던의 거리와 공원 등지에서 청소년들의 안전을 증진할 활동들과 청소년들을 범죄, 따돌림, 차별, 인종차별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활동들이 필요하다.

(라) 긍정적 기여

시장은 런던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나이와 경험에 맞는 방법으로 환경과 공공영역에 속한 이슈들에 관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설과 서비스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시장은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과 청소년 사고(offending)를 다루는 전략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틀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런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놀이,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 서비스와 공간에 대한 기획 과정, 교통과 도로 안전에 대한 기획 과정, 지역 범죄 감소 전략의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촉진하는 활동들과 청소년 사고에 대한 반응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같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도 필요하다.

(마) 경제적 복지

시장은 런던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최적의 발달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생활수준을 가져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돌보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청소년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활동들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과 아동·청소년들이 주요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존재하는 불평등을 최소화 할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이런 활동들에는 보다 비용효과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의 개발, 가장 필요한 곳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개발, 그리고 주요 불우한 그룹들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개발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사항들을 이루기 위한 구조 및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 GLA 그룹 전체에 걸쳐 이 전략의 실행
- 자치구, 중앙 및 지방 정부, 외부 청소년 네트워크와의 협력관계 촉진
- 전략의 실행과 개발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 전략의 진척 상황 모니터, 평가, 보고

시장의 CYPU의 역할에는 우선적인 포괄적 이슈들에 대한 사업과 청소년들이 GLA 의사 결정 과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전략(the Children and Young People's Strategy)의 실행을 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전략 책임자들과 GLA 그룹 단체들은 시장의 모든 전략들이 런던 청소년들의 욕구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이슈들을 담당할 책임 관리를 선출할 것이다. 효과적인 협력이 지역, 지방, 중앙 정부 수준에서의 성공적인 전략 실행에 주요할 것이다. 게다가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분야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과 참여 사업에 있어 중요한 협력자로 점점 부상하고 있다.

시장은 GLA에서의 전략적 의사 결정 과정에 아동과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일에 더욱 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 지역 수준에서 효과적인 참여의 좋은 본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 교육, 지역사회 갱생 분야에 걸쳐 이러한 일이 주류를 이루도록 할 필요도 있다.

시장의 CYP(U)에 의한 최초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에는 1) 런던에서의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 감사, 2) 두 번째 런던 청소년 실태 보고서(State of London's Children Report) 작성, 3) 아동 감사 및 영향력 평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나은 런던 만들기」에는 청소년 친화적인 런던에 대한 시장의 비전이 환경 친화적인(지속 가능한) 런던에 대한 시장의 전체적 비전의 통합적 부분으로써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 소개해 놓았다. 시장은 런던 아동·청소년들의 이익을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대변하고 부모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과 더불어 청소년 친화적인 런던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2) 도시에서 성장하기(Growing Up in Cities: GUIC)

(1) 개요

Growing Up in Cities는 도시 내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반응 및 이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다. GUIC는 유네스코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의 공동 수행작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관, 도시 전문가, 아동옹호자, 청소년 전문가들의 다학제간 팀을 이루어 스스로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성장한 결과 모두를 위해 더 좋은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사람들이 도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도시경험을 조사하고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GUIC는 유네스코의 the Most 프로그램(사회적 변화의 관리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에 의해 재개되어 노르웨이 아동연구센터와 오슬로 Childwatch International 및 개별 프로젝트 현장의 후원을 도왔던 수많은

국내·외 조직들이 이에 협력하였다. The Most 프로그램의 지시를 받아 이 프로젝트는 1997년 8개 국가에서 시작되어 많은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어 왔다.

GUIC는 특히 다원주의 문화, 이민, 도시화, 글로벌 현상에 대한 지역적 대처과정과 같은 분야에서의 사회발전과 사회적 변화의 관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책적인 접근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the Most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들과 매우 잘 어울렸다. GUIC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살고 있는 도시화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청소년의 관점으로 도시 이웃이 좋은 장소에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도시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완전한 장소 즉, 시민사회에 공헌하는 건설적인 구성원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길러주는 장소인가?

GUIC는 에너지, 아이디어, 청소년이 속한 환경을 평가하는 청소년의 소망, 우선순위 정의, 변화 창조를 하게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청소년 옹호자들이 아동·청소년권리회의와 해비타트 의제, 의제 21의 참여 원칙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다학문간, 다영역간 모델을 제공하고 더욱 민감한 도시정책과 실천방침을 창출하였다.

지난 10년간 Global과 Local의 연결로 세계 지도자들은 그들의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지지에 강력한 언급을 하였다. 더욱 환경친화적인 인간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해비타트 의제 서문에 따르면 도시의 형성, 마을과 이웃을 관리하는 참여 과정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것이고 청소년들의 통찰력, 창의력과 환경에 대한 생각을 이용한다.

GUIC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이니셔티브(initiative)와 정책선언들이 지역적 과정 및 조치들과 연계되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의미 있는 변화는 지역 차원에서 시작되고 변화를 만드는 과정은 변화의 생산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GUIC는 지역 수준에서 시작되어야 의미 있는 변화를 창출한다고 믿으며 변화 형성의 과정은 변화의 산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대상집단의 상황

도시에서 성장하기(Growing Up In Cities; GUIC) 프로그램은 10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령대를 택한 이유는 이 시기가 성인으로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때 아동·청소년들은 에너지를 능력과 성숙으로 융합시킨다.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그들의 성장과 기술의 건강한 개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환경적 위험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워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응집성을 보이고 놀이와 사회적 활동에 대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있어 현실은 다르다. 세계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서 도시화는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한 생활여건을 초래해 왔다. 아동·청소년들은 물 부족, 위생 소홀과 폐기물 처리 부족으로 인한 건강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활동 환경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해한다.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지역사회로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갖게 하는 학대(harassment), 범죄 및 인종적 갈등(racial tension)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소들의 결과로 인해 도시 지역에서는 종종 아동·청소년 권리가 침해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은 긍정적 경험을 가질 수도 있다. 비록 그들이 가진 자원은 부족하지만 청소년들은 종종 보다 나은 물리적 환경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창의적이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보다 넓은 환경과 또 자신들이 처한 문제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불행하게도 이런 자원들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들의 제안이 도시 계획자나 정책수립자에 의해 항상 채택되는 것도 아니다.

GUIC 프로그램은 도시 지역을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 받고, 자신들의 필요와 견해를 밝히며 이 필요와 견해가 지역 기획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하고 의사 결정자들과의 접촉과 관계가 가능한 보다 나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전 세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② 추진배경

최초의 GUIC 프로그램은 1970년에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일하던 도시 설계자 케빈 린치(Kevin Lynch)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도시화 과정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을 키우기에 좋고 긍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는 도시 마을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청소년들이 시민사회의 건설적이고 유용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려면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70~1975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 호주, 멕시코, 폴란드의 도시 저소득 지역들이 평가되었고 참여 연구(Participative research)를 위한 표준 방법이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훈련 받은 연구원들이 10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청소년들과 더불어 이들이 살았던 지역 내 환경의 질(quality)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는 인터뷰, 관찰, 지도 작성, 사진 찍기가 포함되었으며

개선 제안을 만드는 토대로 사용되었다. 청소년들이 이 제안을 지역사회와 도시 관리들에게 제출하였다.

성공적이었지만 GUIC 프로그램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확장되지 못했다. 최초의 프로그램은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setting)의 차이에도 불구하고(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등) 여러 다른 지역들에 대한 연구는 놀랄 정도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모든 동네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친화도시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 생활의 영역들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이 공간의 개발을 책임지는 도시 관리들의 시각 및 비전과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및 지역사회의 실제적 필요와 견해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셋째,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와 잠재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

1995년에 노르웨이 아동연구센터의 초청으로 8개국에서 한 자리에 연구원, 활동가 및 도시 계획자들은 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협력하여 시작하기로 동의했다. 이 그룹은 린치(Lynch)의 업적을 인정하고 GUIC 프로그램을 참여적·활동 지향적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소생시켰다. 1996년 이 프로그램은 유네스코의 사회 변화 관리 프로그램(UNESCO's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 MOST Programme)에 의해 채택되었다.

MOST는 1993년 양질의 다학제간 정책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플랫폼(platform)으로 설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GUIC 프로그램은 포괄적이고 세계적인 연구 노력을 기울였다. 1996년 이래 GUIC 프로그램의 최초 연구 장소들이 재조사되었으며 많은 수의 새로운 프로젝트 장소들도 더해져 왔다. 이 프로젝트들에 의해 기록된 경험들은 ‘도시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성장하기’(Growing up in an Urbanising World)라는 책이 기록되었으며 ‘아동 및 청소년들과 함께 보다 좋은 도시만들기’(Creating Better Cities with Children and Youth)란 매뉴얼 개발에 활용되었다.

③ 프로젝트의 발전

지난 25년간 이루어진 많은 발전들은 연구와 청소년 참여를 도시 계획과 정책 수립에 통합하는 접근의 필요성을 점점 강조해 왔다. 1970년에 최초의 GUIC 프로그램이 드러내었던 도시의 문제들은 점점 더 밝히 드러났다. 도시는 점점 자동차들로 가득 차게 되어 청소년들은 이동의 자유를 점점 더 제약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도시 환경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아동권리협약, 리오 환경 개발 정상회의(the Rio Summit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해비타트 회의(Habitat Conferences), 세계 사회개발 정상회의(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는 모두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지침 및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기의 발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들이 나타나 있다.

새로 시작된 GUIC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최초 프로그램의 경험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1970년에서 1995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새로운 기회들과 다양한 발전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다음 사항들을 수용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 보다 활동 지향적인 접근 : 최초 프로그램은 주로 연구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새로운 GUIC 프로그램은 이 연구를 활용해 도시 계획, 도시 프로그램, 도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 보다 확대된 자금 기반 : 1970년대의 최초 프로젝트들은 전적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았다.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는 참여하는 나라들이 각각 기금을 찾아야 하며 스스로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자금 지원처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생겨났으며 주인의식과 책임감(commitment)이 증대되었다.
- 보다 확장된 네트워크 : 새로운 GUIC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는 활동들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네트워크이며 경험의 교환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 보다 참여적이며 활동 지향적인 접근으로의 중요한 전환 : 이는 현재 국제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보다 지지적인 정책 틀과 국제 사회에서의 참여적, 민주주의적 개발 접근에 대한 지원의 증대에 기인한다.
- 부상(浮上)중인 세계적 정책 틀에 대한 지원 : CRC, 의제 21, 해비타트 II(Habitat II), 시장들, 아동 옹호 운동'(Mayors, Defenders of Children Movement)은 청소년 권리를 다루는 틀을 보다 더 명확히 정의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2) 주요내용

① 주요 목적과 목표

GUIC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개선하는데 대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일반 사람들과 도시 관리들에게 청소년들에 관련된 도시 이슈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연구,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CRC의 원칙을 구현하는 실제 프로젝트들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GUIC 프로그램의 목표는 1) 청소년들의 도시 공동체 및 전체 사회에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 2) 계획, 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책임지는 사람들 및 도시 관리, 지역사회 지도자가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에 보다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시에서 사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흥미로운 활동의 장, 또래들의 모임 장소, 녹색지대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이동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한다, 4) 응집력 있는 지역사회 정체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질들과 자원들을 활용한다, 5)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 친화적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퇴거, 불안정한 토지 임대, 산사태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한다, 6) 기본 서비스의 공급과 참여 권리의 보장을 포함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청소년 권리를 구현한다, 7) 지역사회 조직과 자조의 전통을 촉진한다. 도시에서 개선해야 될 많은 것들이 도시 공동체에 의해 직접 설계 및 수행될 수 있다.

② 관계자 역할

가. 청소년

청소년들은 이 프로젝트의 주된 참여자들이다. 프로그램의 초점은 청소년들의 필요를 조명하고 자신들의 도시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나. 연구원

특별히 훈련된 연구원들은 청소년들이 취하는 활동들을 촉진(facilitate)한다. 그들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동적’인 방법으로 과정을 통제한다. 또한 연구원들은 객관적 관찰, 자료 수집 및 의사결정 구조 분석과 같은 보조적 연구를 수행한다.

다. 부모, 지역사회 성인 구성원

부모들과 지역사회 성인 구성원들은 아동·청소년들과 협력하여 과거 생활의 전통 및 패턴과 같은 것에 대한 보충적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도울 수 있다.

라. 정부 관리

연구 성과와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결과는 정부 관리들에게 제출되어 그들의 기획과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정부 관리들이 청소년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계획 실행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단체, 비정부단체

이 단체들은 지역사회의 지원을 설립하고 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그리고 시설 및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영입될 수 있다.

③ 추진과정

가. 시작

첫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조정 팀(Project Coordination Team)이 결성되어야 하며 장소 선정, 스케줄 작성, 스태프 결성 및 예산과 같은 ‘집행내용’들이 자리 잡혀야 한다. 또한 목표, 기회 및 제약 사항들이 미리 정해져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의 권고사항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하게 될 지원을 제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어른과 기관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해야 한다.

나. 이슈 파악하기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들이 포함된다(인터뷰, 관찰, 자료 수집 등). 이 결과들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력을 기울이기 원하는 이슈들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얻어 낸다.

다. 변화를 위한 기획

참여자들이 주요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계획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목표 설정, 대안 탐구 및 활동 계획 개발이 포함된다.

라. 실천

참여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일련의 활동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 수행의 방향은 물리적, 정치적, 법적, 규정적 변화가 될 수 있다.

마. 모니터링 및 재검토

프로젝트가 원래 목표를 계속 지향하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목표와 활동이 재정의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3) 추진전략

가. 상황 분석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방법에 따르면 먼저 포괄적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 단계의 목적은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인식,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다음으로 이러한 인식 및 평가가 청소년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연구 단계에서 활용하려고 GUIC 프로그램을 위해 일련의 도구 및 활동들과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를 섞은 도구모음이 개발되었다. 이 도구·활동 시리즈와 도구모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의 물리적·사회경제적 특징들을 지도, 청소년이 안내한 마을 순회, 인구조사 데이터, 사진, 지역 역사 및 관찰을 통해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환경 조사 체크 리스트(Environmental Scan Check List)가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 이는 환경의 질적 요소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둘째, 기존에 지역사회와 도시 수준에서 존재하는 의사결정 구조 및 절차에 대한 분석이다. 이 분석은 청소년들과 함께 한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 어디에서 도시 관리들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의 참여를 격려하는지, 청소년들의 시각이 기획과 정책 수립 과정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사람들의 공공장소와 준 공공장소의 활용에 대한 관찰이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관찰할 것이지만 특히,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행동 지도(behaviour maps), 사진, 글, 비디오 촬영을 통해 기록할 것이다.

넷째, 각 장소에서 10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청소년들 중 남녀 아이들 샘플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인터뷰를 실시한다. 인터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묘사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생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그룹 토론, 아동·청소년들이 찍은 사진과 아동·청소년들의 지역 안내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 혹은 부모와 함께 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중심 그룹 토론이다.

여섯째, 청소년들이 토론과 설계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워크숍(역할극을 한다든지 거대한 지역사회 지도를 놓고 일한다든지 하는 등)이다. 이 워크숍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참여 중심으로

진행이 되며 나이에 맞는 방법들을 활용한다.

일곱째, 소수의 부모 및 도시 관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는지, 그들이 아동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환경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관리들의 경우 자신들이 수립한 정책이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연구단계의 결과는 지역사회와 관련 사항에 책임 있는 도시 관리들에게 제출된다.

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GUIC 프로그램에서 참여는 사회적 변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 궁극적 목적은 ‘함께 하는 의사결정’이어야 한다. 나이나 배경에 상관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의사결정 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지역사회를 창출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가지고 소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어른들은 어린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의 시각과 통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아동·청소년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란 결국 아동·청소년들과 어른들 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것이다.

효과적인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기반을 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참여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들의 힘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어른들은 아동·청소년들을 경청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지원함으로써 촉진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시각에 기초해서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해결책이나 결과를 제시해 주어서는 안 된다.

둘째, 참여 과정은 투명해야만 한다. 아동·청소년들은 참여 목적을 이해해야 하고 외부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들의 나이에 적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사용한다. 그림 그리기, 게임, 역할극 등 아동·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활용해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 참여는 교육 과정의 하나이다. 참여과정은 참여자들 간의 지식 교환 과정으로 이들은 참여 과정에 비평적으로 임함으로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다. 종합적 접근(cross-sectoral approaches)

종합적 접근법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진 않았으나 GUIC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획과 정책 수립의

다양한 분야들을 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이 방법은 도시 환경의 물리적(서비스 제공), 사회적(정체성, 응집성), 경제적 및 환경적(쓰레기, 녹색 지역) 양상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이 청소년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청소년들은 '분야별'로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GUIC원칙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은 종합적인 방법으로 이슈들에 접근할 것이다.

라. 전략적 협력관계

협력자가 많을수록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지역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자를 찾고 협력관계의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프로그램의 일부는 활동들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비정부 기구 및 지역사회단체 등을 프로젝트에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다.

마. CFC 네트워크와의 연계

GUIC 프로그램의 목적은 비교 연구와 경험의 교환을 위해 폭 넓은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참여자들 간의 인적 교류를 가능케 하기 위해 세미나와 워크숍 등이 자주 열리고 있다.

바. 소외된 그룹에 대한 특별한 관심

GUIC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그룹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 구조를 가능한 한 최대로 반영한다. 이런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는 이 활동을 통해 이들이 '드러날' 수 있고 자신들의 고유한 견해, 문제 및 욕구를 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촉구되고 있다.

사. 옹호 및 인식 제고 전략(Advocacy and awareness-raising strategies)

옹호는 GUIC 방법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는 청소년들과 '의사 결정자들'간의 개별적 접촉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이러한 청소년들과 도시 관리, 지역사회 지도자들 간의 접촉은 청소년들이 이슈에 보다 민감해 지도록 할 것이다. 워크숍과 다른 공공 행사들이 개최되어 인식을 제고하고 청소년과 청소년 부모들, 도시 관리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고 행동계획을 작성하게 한다.

아. 제도적 · 법적 개혁

GUIC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시각을 기획과 정책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되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이런 참여를 제도화 하고자 한다.

자. 자원 동원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은 참여적 예산과정을 통해 예산의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 역량개발 활동과 방법

역량 개발은 GUIC 프로그램에 다양한 방법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첫째,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과 자신들의 생활을 연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사회적 기술과 문제해결 기술 등을 개발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생활 여건을 연구하고 개선하는데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지역사회를 기초로 한 학교 교과과정 및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둘째, 부모들, 지역사회 지도자들, 도시 관리들 및 관심 있는 모든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생활과 관심사에 대해 청소년들로부터 배우고 청소년들을 경청하여 청소년들을 이해하도록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

셋째, 사람들이 GUIC 방법과 도구들을 사용하고 청소년에게 적합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촉진자가 되도록 훈련 받고 있다. 이들은 특별히 청소년들과 접촉하는 방법과 참여적 과정을 안내하는 훈련을 받는다.

카. 모니터링과 평가

참여적 지역사회 개발은 행동, 변화, 쇄신의 장기적 과정이다. 성공적인 변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검토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파악하고 활동과 목표를 재정의하도록 자극해야 한다.

또한 GUIC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에서도 평가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는데 활용된다.

(4) 주요국의 GUIC 프로그램

① 노르웨이

트론하임(Trondheim)시는 GUIC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1997년 국제적인 도시 아동 컨퍼런스에 이 프로젝트가 주요내용으로 다루어졌다. 노르웨이 아동 연구센터와 Childwatch International of Oslo에서 프로젝트의 초기 개발과 조정을 지원하였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아동들의 삶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학과 산업센터의 도시이지만 트론하임 피오르드를 따른 내륙으로 노르웨이 해안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고대 왕국의 수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연구는 역사적인 도시 중심부를 등글게 둘러싸고 있는 강인 Nid강 동쪽의 구 노동자 계층구역인 Mollenberg와 Nid강 남쪽의 중류계층 거주지역인 Elgeseter의 두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두 지역 모두 시정부가 도시의 재생을 예정해 왔고, 이에 따라 “도시에서 성장하기”를 통해 수렴된 정보는 아동들의 수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부처와 함께 공유되었다.

9세부터 13세까지 35명이 트론하임시에서의 GUIC에 참여하여 일반적인 프로젝트 방법인 조직화된 인터뷰, 그림그리기, 토론, 청소년들을 유도한 산책, 아동들의 사진찍기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의 외형을 기록하기 위한 photogrid를 만들고,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도시계획부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몇몇 부모들과의 인터뷰도 이루어졌다. 양쪽 지역 모두에서 청소년들은 이동의 자유와 도시센터를 포함하여 지역 자원을 이용할 자유를 상당히 많이 누렸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생활은 학교, 방과후 활동, 가장 좋아하는 TV 쇼, 일정부분은 컴퓨터 게임으로만 예정되어 있었고, 겨울의 긴 밤으로 인해 제한을 받았다. 따라서 일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많은 청소년들은 집과 그들 지역 인근 자원 근처에만 머물러 있었다. 청소년들은 공간에 대한 어른들의 선호도와 경쟁하면서 이길 가망 없는 투쟁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② 스웨덴

1997년 11월과 1998년 7월 예테보리(Göteborg)시의 세 명의 대표자들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아동과 청소년과 함께하는 더 나은 도시창조”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 워크숍은 UNESCO의 the Most 프로그램, 유럽 Averroes 훈련센터 및 몇몇 “도시에서 성장하기” 팀의 경험있는 멤버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스웨덴으로 돌아오자마자 Lisa Sundell, Maj-Britt Olsbo와 Ing-Marie Larsson은 다음 세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1) 숲과 시골 근처의 도시경계 지역인 Bergsjön으로 1960년대와

70년대에 도시 집중적인 주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설되었고 거주자의 절반이 점잖은 외국인들이다, 2) Korgeala지역의 Utby로 20세기 초의 가옥들과 고층 아파트들이 있어 시골과 도시 중심부 모두와 유사하다, 3) Lundby로 거주자, 온갖 형태의 건물들 및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한 많은 기회들의 관점에서 도시의 한 단면을 나타내주고 있다. 위 세 지역 모두에서 청소년들은 상호 지역 방문과 의견교환을 수반하는 프로젝트 방법들을 이용하며 지역을 연구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의제 21 계획의 목표를 예증한다. 의제 21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협정에 대한 세계 정부에 의해 동의되어 지역정부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참여계획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특별한 노력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의사결정, 계획 및 실행에 관련되게 된다.

에테보리 참여자들은 인도의 뭍바이 프로젝트를 채택하였고 Yuva(개개의 청소년과 자원활동)와 비정부단체는 길거리 아동과 슬럼가의 아동을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일주일간 세 개 지역을 순회하여 방문하고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고, 그들 단체의 사업에 대해 듣게 되었다. 1999년 9월 청소년들은 “Under Ytan(표면 아래)”라는 표제 아래 시립박물관에서 작업의 전시를 준비했다. 행사 오후 프로그램 동안, 약 100명의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한 것과 지역 발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보고 듣기 위해서 모였다. 세 지역의 의장들이 모여 이 프로젝트가 향후 어떻게 수행될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3) 요약 및 시사점

이 절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외국사례로서,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Child and youth friendly city: CFC)’와 ‘도시에서 성장하기(Growing up in cities: GUIC)’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았다. 두 프로젝트는 각각 유니세프와 유네스코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전 세계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다양하고 오랜 경험 속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CFC)’ 사업은 지역사회를 청소년 친화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전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청소년 친화도시는 회복력 있고(resilient) 안전하고(secure) 역량이 있으며(capable) 살만한(livable) 도시로서, 청소년 생활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을 참여시키며 가족·지역사회 및 사회생활에 이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시스템을 갖는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건, 교육, 보호소, 안전한 물과 위생 등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보장하며 아동·청소년을 착취, 폭력, 밀매 및 학대로부터 보호한다. 사회화와 건전한 놀이를 위해 안전한 거리와 장소를 유지하며 녹색공간(나무와 풀이 있는 공간)과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오염과 교통을 통제하며 문화 및 사회 행사를 지원한다. 또한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연령, 성, 소득, 피부색깔, 인종, 문화적 기원, 종교,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도시에서 성장하기(GUIC)’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 받고 자신들의 필요와 견해를 밝히며 또 이 필요와 견해가 지역 기획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하고 의사 결정자들과의 접촉과 관계가 가능한, 보다 나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GUIC는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개선하는데 대한 아동·청소년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일반 사람들과 도시 관리들에게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도시 이슈들을 교육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연구, 평가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를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관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한 주체로서 청소년과 성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인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니세프의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9가지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친화마을의 주요 요소와 원칙,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주고 있어 유용하다.

제 4 장

청소년 친화마을에 대한 전문가 조사

1.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2. 델파이 조사 결과

제 4 장

청소년 친화마을에 대한 전문가 조사

1.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1) 델파이 조사를 위한 지표(안) 개발 원칙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표는 청소년이 생활하고 성장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제 현상을 수량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표는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성장환경의 현황과 변동양상을 평가 할 수 있어야 하며, 청소년 성장환경의 위험요소와 원인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를 통한 평가는 청소년의 긍정적 성장·발달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며 중장기적인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 생애 발달 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위한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 개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이론(system theory)에 기초한 지표체계를 확립하였다. 지표는 기본적으로 기존 통계나 각종 추정치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광범위하면서도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집약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제이론에 기초하여 청소년 친화마을 요건 및 지표항목을 개발하였다.

둘째, 국제기준대비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항목을 개발하였다. 유니세프에서는 2010년 청소년 친화 도시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탈리아, 캐나다 등 수 많은 국가에서도 각국 현실에 맞는 평가 지표 및 척도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표항목을 개발하였다.

셋째, 청소년 친화마을 구성요소 및 지표는 현 시점의 청소년 성장 환경 현황과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의적, 현실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정책차원에서 구현될 수 있는 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면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표항목을 개발하였다.

2)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 선정기준 및 절차

(1) 선정 기준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표를 선정하였다.

첫째, 유니세프 청소년 친화 지역사회 척도, 국내외 친화도시와 관련된 평가지표, 제1, 2기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청소년 관련 지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총 5가지 영역의 총 90개의 평가(안)을 구성하였다. 유니세프 청소년 친화 지역사회 척도는 ‘안전과 보호’, ‘놀이와 여가’, ‘학교생활’, ‘개인생활’, ‘지역사회유대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제1, 2기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는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즐겁게 배우는 아동·청소년’, ‘더불어 살아가는 아동·청소년’,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청소년’, ‘함께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5개 영역별로 관련문헌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의 분류체계와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평가 지표의 타당성, 측정가능성, 실용성, 해석의 용이성, 계속성,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 5개, 세부영역 27개의 총 90개의 평가 지표 안을 개발하였다.

(2) 선정 절차

2011년 6월 28일부터 7월 15일에 걸쳐 총 21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 중 수합된 50명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조성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델파이 조사 방식은 일반적으로 최소 10명 이상의 패널로 구성 될 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Murry & Hammons, 1995), 50명 정도의 인원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다. 조사에 참가한 전문가는 현직 청소년 관련 교수 9명, 청소년 관련 부처 공무원 19명, 청소년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 22명이다. 의견조사는 해당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협조요청을 우선으로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e-mail 의견조사지를 전달하고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델파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둘째,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준에 따른 세부 영역 및 평가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및 의견을

조사하였다. 또한 평가지표의 적합성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매우 적합’, ‘적합’, ‘부적합’ 3단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을 위한 과정을 우선순위별로 조사하였고,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을 우선순위별로 조사하였다.

델파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평가지표 적합성 정도에 대해 긍정적 응답률이 75% 이상인 2점 이상인 항목에 대해 타당 의견으로 채택하는 방식(Murphy & Hammons, 1995)에 따라 결정하였다. 반면, 기타 의견 중 지표 항목으로 추가 하지 못한 경우는 이미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의견, 외국의 친화도시의 어떤 사례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친화마을 지표로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 지표 항목에서 제외하였고, 각 영역별 기타 의견 중 다른 영역에 지표 항목으로 있어 내용 중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영역의 지표로 선정하지 않았다.

델파이 조사 결과로 선정된 조성기준 및 지표항목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델파이 결과와 평가지표의 선정기준인 타당성, 실용성, 측정 가능성, 계속성, 이해가능성, 비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5개, 세부영역 19개의 분류체계로 총 84개의 평가지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의 제한점

지표는 현상을 가능하면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현상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표 개발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 역시 체제이론에 따라 광범위한 정보를 집약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객관적 지표만 선정하였다. 주관적 지표 즉,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교사와의 유대관계 만족도,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등 지극히 개인적 경험과 주관적 잣대에 도출되는 지표는 제외하였다. 단, 가정시설 안전도, 청소년 시설 안전도,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은 선정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 시간,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으로 구현하여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표는 배제하였다.

셋째, 부정적 지표도 함께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상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지표는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 등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가 지역사회의 평가체제로 구축되고 영역별, 지역별로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지표체계가 필요하다.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내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부정적 지표 즉, 청소년 비행발생, 흡연 및 음주율, 인터넷 게임 중독률 등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심각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고려하였다.

2. 델파이 조사결과

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안전한 성장환경’, ‘건강한 발달환경’, ‘배움과 미래를 위한 환경’, ‘활동과 여가 환경’, ‘참여와 의사표현 환경’ 5개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와 영역과 세부영역에 대한 적합성 의견을 물어본 결과 우선순위는 1순위는 ‘안전한 성장환경’, 2순위로 ‘건강한 발달환경’, 3순위로 ‘배움과 미래를 위한 환경’, 4순위로 ‘활동과 여가 환경’, 5순위로 ‘참여와 의사표현 환경’이 선택되었다.

표 IV-2-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단위: 명(%)

순위	안전한 성장환경	건강한 발달환경	배움과 미래를 위한 환경	활동과 여가 환경	참여와 의사표현 환경
1	24(48)	12(24)	7(14)	4(8)	3(6)
2	12(24)	20(40)	7(14)	9(18)	3(6)
3	7(14)	8(16)	15(30)	10(20)	11(22)
4	1(2)	8(16)	14(28)	14(28)	12(24)
5	6(12)	2(4)	7(14)	13(26)	21(42)

기본요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중 ‘안전한 성장환경’ 부분의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활동과 여가 환경’부분에 있어 ‘역량개발을 위한 적극적 활동’으로 명칭과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 구성에 있어 자연 생태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지표도 필요하다는 의견 있어 이를 반영하여 ‘활동과 여가’영역에 내용을 추가 하였다.

2)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지표 항목으로 적합성 검증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지표 항목의 적합성 검증은 매우 적합이 3점, 적합이 2점, 부적합이 1점으로 배점 하였다. 지표 항목에 대한 적합성 정도 검증 결과는 긍정적 응답률이 75% 이상인 2점 이상인 항목에 대해 타당 의견으로 채택하는 방식(Murphy & Hammons, 1995)에 근거하였다. 2점 이하 지표 항목의 경우에는 지표로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삭제하였다. 그리고 2점 이상인 지표 항목 중 기타 의견에서 지표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는 전문가 회의를 걸쳐 삭제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 중 지표로 개발해야 할 될 내용은 전문가 회의 및 관련 연구를 통해 추가하였다.

다음은 기본요건 5가지 영역의 평균 검증 결과이다.

□ 건강한 발달환경

‘건강한 발달환경’ 영역의 평가 지표별 적합성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행동문제(우울, 공격성, 비행 등) 발생률’이 2.76점으로 가장 평균점수가 높았다. ‘자살률’이 2.70점, ‘학교 혹은 지역사회의 건강 프로그램 실시’가 2.64점으로 상대적으로 적합성 점수가 높았다.

표 IV-2-2 '건강한 발달환경' 평가지표 적합성 평균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	평균	순위	선정 여부
건강한 발달 환경	영양 및 건강	① 규칙적인 식사	2.54	7	
		② 정상 신체충실도	2.48	9	
		③ 학교 근처 패스트푸드점 개수	2.02	14	
		④ 학교 내 탄산음료자판기 수	2.16	13	
	정서·행동	① 자살률	2.70	2	
		② 정서·행동문제(우울, 공격성, 비행 등) 발생률	2.76	1	
		③ 10대 임신율	2.46	10	
	교육	① 학교 혹은 지역사회의 건강 프로그램 실시	2.64	3	
	검진	①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서 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2.50	8	
		② 학교 혹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예방접종 비율	2.38	12	
	지원기관	① 건강 검진 및 상담, 예방 및 보건 관련 센터 설치	2.54	6	
	인프라	① 건강, 영양, 보건에 관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예산	2.54	5	
		② 전문 상담사, 예방교육 전문 인력 확보	2.58	4	
		③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	2.44	11	

전문가 조사 및 회의 통해 세부영역의 구성과 지표항목을 수정·보완 하였다. 세부영역은 영양·급식, 건강, 정서·행동, 인프라로 구성하였다. 영양·급식에서는 '영양상태', '학교 급식 모니터링 운영'을 포함시켰고, '학교 근처 패스트푸드 점 수', '학교 내 탄산음료 자판기'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학교 주변 안전 먹거리 장소' 로 수정하였다.

건강에서는 '만성질환 유병률', '장애청소년 지원프로그램',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미실시율', '공공의료서비스 기관 보급 및 공공의료진 수'를 포함시켰다. 정서·행동 세부영역에서는 '흡연 및 음주율'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안전한 성장환경' 영역에 있던 인터넷 게임 중독은 '건강한 발달영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자살률’은 정신건강 문제에 포함하였다. 인프라영역에는 지원기관, 기관연계체계 구축,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 전문인력, 모니터링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등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배제하였다.

건강한 발달환경은 보다 긍정적이고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기 위해서 '모두가 건강한 마을'로 최종 조성기준 명칭을 수정하였다.

□ 안전한 성장환경

‘안전한 성장환경’영역의 평가 지표별 적합성 평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발생률’이 2.74점으로 가장 평균점수가 높았다. ‘청소년 안전보호 예산’이 2.72점, ‘청소년 시설 안전도’, ‘유해업소 수’가 2.60점으로 상대적으로 적합성 점수가 높았다.

표 IV-2-3 ‘안전한 성장환경’ 평가지표 적합성 평균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	평균	순위	선정 여부
안전한 성장 환경	부모역할 체계	① 학대 발생률	2.48	7	
		② 가정폭력 상담	2.24	19	
	물리적 환경	① 주거공간의 가족대비 방 수	1.94	25	X
		② 필수설비(상하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입식부엌 등) 설치율	2.10	22	
		③ 구조, 환경(채광, 난방설비, 화재안전시설 등) 설치율	2.04	23	
	교사관계	① 체벌 없는 청소년관련 기관 수	2.12	20	
		② 차별 피해율	2.26	17	
	친구관계	① 학교폭력 상담	2.74	1	
	유해환경	① 학교 주변 교통안전	2.42	11	
		② 유해업소 수	2.60	4	
		③ 가출 비율	2.38	13	
		④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	2.44	10	
		⑤ 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	2.54	6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	평균	순위	선정 여부
		⑥ 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수	2.24	18	
		⑦ 인터넷 게임 중독률	2.34	15	
		⑧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수혜율	2.44	9	
	시설환경	① 청소년 시설 안전도	2.60	3	
		② 가로등, 보안등, 밝기 적정성	2.42	12	
		③ 자전거 도로 확보	2.10	21	
		④ 화재 발생 신고건수	1.82	26	X
		⑤ 교통사고 사망률	1.98	24	X
		⑥ 공원의 수 및 지역 인구대비 면적의 적정성	2.30	16	
	인프라	① 청소년 안전보호 예산	2.72	2	
		② 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 실적	2.36	14	
		③ 지역주민 유대관계 증진 프로그램	2.44	8	
		④ 안전 및 보호 프로그램 모니터링 건수	2.58	5	

‘안전한 성장환경’ 평가지표로 적합하지 못한 2점 이하의 문항은 ‘교통사고 사망률’, ‘주거공간의 가족대비 방 수’, ‘화재 발생 신고건수’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평가지표에서 삭제하였다.

안전한 성장환경의 세부영역의 내용을 물리적 환경, 유해환경, 위기·응급상황, 인프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환경 지표항목에는 물리적 환경, 시설환경 내용이 포함되었고, 위기·응급상황은 부모역할 체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에 관한 지표항목 위주로 구성하였다.

평가지표에 관한 개별적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의 기타 의견에 따라 개인사생활 보장에 관한 부분, 건축물의 노화 정도는 측정가능성, 타당성 등의 문제가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미 관련법에 의해 이행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구조, 환경(난방설비, 화재안전시설, 채광 등) 설치율에서 채광을 제외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이미 건축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게임 중독에 관한 내용은 건강영역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안전한 성장환경에서 삭제하였고, 공원 수 및 면적에 관한 부분도 활동과 여가 영역에 관련된 내용임으로 삭제하였다. 지표 중 ‘자전거 도로 확보’는 일부 청소년에게 해당됨에 따라 모든 청소년들의 통학로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한 보행로 확보’로 수정하였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 가출 등에 에 관한 내용도 포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비행발생’, ‘성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추가하였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망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델파이 조사 시 ‘지역주민 유대관계 증진 프로그램’으로 조사하였지만 지표 내용이 평가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주민 안전보호망 운영’로 수정하였다.

안전한 성장환경은 지역사회의 위험과 위기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고 보편주의에 근거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누구나 안전한 마을’로 최종 조성기준 명칭을 수정하였다.

□ 활동과 여가 환경

‘활동과 여가 환경’ 영역의 평가 지표별 적합성 평균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활동과 여가 공간’이 2.70점으로 가장 평균점수가 높았다. ‘활동과 여가 프로그램 유형(음악, 드라마, 체육 등)의 다양성’이 2.66점, ‘일주일 간 신체활동(스포츠 활동, 자연체험, 자전거 등), 예술활동(음악, 미술, 사진 등) 시간’이 2.64점, ‘학교 활동 및 여가 공간’이 2.62점, ‘활동과 여가 관련 예산’이 2.60점으로 상대적으로 적합성 점수가 높았다.

표 IV-2-4 ‘활동과 여가 환경’ 평가지표 적합성 평균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항목	평균	순위	선정 여부
활동과 여가 환경	활동과 여가 프로그램	① 활동과 여가 프로그램(음악, 드라마, 체육 등)의 다양성	2.66	2	
		② 활동 참여의 다양성(가족, 지역주민, 또래친구 등)	2.48	8	
		③ 활동(스포츠 활동, 자연체험,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결정과정에서 청소년 참여율	2.50	6	
		④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결정과정에서 청소년 참여율	2.48	7	
	활동과 여가 시간	① 일주일 간 학교 체육(운동)시간	2.26	13	X
		② 하루 중 학교 활동 및 휴식시간	2.34	11	
		③ 일주일 간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시간	2.42	10	
		④ 일주일 간 신체활동(스포츠 활동, 자연 체험, 자전거 등), 예술활동(음악, 미술, 사진 등) 시간	2.64	3	
	인프라	① 학교 활동 및 여가 공간	2.62	4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항목	평균	순위	선정 여부
		② 학원 내 활동 및 여가 공간	2.22	16	X
		③ 지역사회 활동과 여가 공간	2.70	1	
		④ 활동 및 여가 관련 사업추진 계획 추진 실적	2.46	9	
		⑤ 활동 및 여가 관련 예산	2.60	5	
		⑥ 활동 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2.32	12	
		⑦ 활동 프로그램 모니터링 건수	2.22	15	
		⑧ 활동 및 여가와 관련된 정보 접근성	2.24	14	

‘활동과 여가환경’ 영역에 대한 명칭은 당초 ‘놀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청소년이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인 ‘활동’의 개념에서 벗어나 놀이 자체를 즐기고 놀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기본 계획, 청소년 관련법에서 ‘활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내용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활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세부영역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 ‘활동 및 여가 시간·공간’, ‘인프라’로 구성하였고, 인프라에 공간에 관한 내용을 ‘활동 및 여가 시간·공간’에 이동하였다.

지표에 관한 의견에서 활동과 여가 프로그램에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참여율’도 포함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에 포함하였다. ‘일주일간 학교체육시간’은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이므로 지표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학원 내 활동(휴식) 공간 및 시설 설치율’은 사설운영기관이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다. 이외에도 ‘활동 프로그램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율’과 같은 참여에 관련된 의견은 ‘참여와 의사표현 환경’영역에 이미 유사한 내용이 있어 삭제하였다.

전문가 회의 결과 자연과 생태환경 구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 및 여가 시간·공간’ 세부영역에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 ‘야외 녹지공간 확보’, ‘공공기관 활용도’ 지표와 더불어서 활동 및 여가를 위한 기구 보급에 관한 평가지표를 포함하였다.

활동과 여가환경은 청소년의 놀이와 여가 기회의 공평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로 최종 조성기준 명칭을 수정하였다.

□ 배움과 미래를 위한 환경

‘배움과 미래를 위한 환경’영역의 평가 지표별 적합성 평균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연계 직업

체험 학습', '전문 인력 확보율'이 2.72점으로 가장 평균점수가 높았다. '교육관련 예산의 적정성'이 2.70점, '학교생활 만족도'가 2.64점, '자립 관련 예산 적정성', '학교 및 지역사회 진로교육 프로그램'가 2.62점으로 상대적으로 적합성 점수가 높았다.

표 IV-2-5 '배움과 미래를 위한 환경' 평가지표 적합성 평균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	평균	순위	선정 여부
배움과 미래를 위한 환경	교육기회	① 학교 중도탈락률	2.40	10	
		② 학교생활 만족도	2.64	4	
		③ 학업성취수준	2.12	14	
	교육 연계성	① 학교 급간의 상호 연계프로그램 실시	2.20	13	
		②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실시	2.56	7	
		③ 공공 및 민간 도서관 수	2.28	12	
	인프라	① 교육관련 예산의 적정성	2.70	3	
		② 전문 인력 확보율	2.72	2	
		③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	2.32	11	
	진로·직업 프로그램	① 학교 및 지역사회 진로교육 프로그램	2.62	6	
		② 공공시설 연계 직업 체험 학습	2.72	1	
	자립관련	① 자립관련 제도(조례, 정책 등) 설치 여부	2.54	9	
		② 자립 관련 예산 적정성	2.62	5	
		③ 자립 관련 전문 인력 확보율	2.54	8	

평점 2점 이상인 '학교생활만족도' 지표는 주관적 지표임으로 삭제하였다. 진로 결정의 청소년 참여에 관한 의견, 교육에 관한 모니터링에 있어 질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다른 영역에 이미 관련된 지표가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학습동아리 구성 지원',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인재 나눔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였다. 특히, 세부영역의 구성에 있어 텔파이 조사 시 인프라, 자립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인프라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배움과 미래를 위한 환경'은 즐겁게 배울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움을

누리는 마을'로 최종 조성기준 명칭을 수정하였다.

□ 참여와 의사표현 환경

‘참여와 의사표현 환경’영역의 평가 지표별 적합성 평균을 살펴보면,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on-off 라인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 설치 여부’가 2.74점으로 가장 평균점수가 높았다. ‘인권을 위한 옹호기구나 상담기관’이 2.70점, ‘봉사활동 및 참여위원회 참여’가 2.66점, ‘참여 관련 예산의 적정성’, ‘학교 운영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이 2.64점, ‘참여를 정례화 할 수 있는(조례, 정책 등) 제도 설치 여부’,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청소년 의사 반영’이 2.62점으로 상대적으로 적합성 점수가 높았다.

표 IV-2-6 ‘참여와 의사표현 환경’ 평가지표 적합성 평균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항목	평균	순위	선정 여부
참여와 의사 표현 환경	가정사 및 진로	①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의견반영 비율	2.08	17	
		② 상급학교 선택 시 자녀의 의견 반영	2.44	15	
		③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반영	2.56	10	
	문화 및 여가 활동	①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청소년 의사 반영	2.62	8	
	개인생활	①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의 공개여부	1.74	18	X
		② 징계대상 학생 정보의 공개 여부	1.66	20	X
		③ 학생 개인 시험성적의 공개여부	1.70	19	X
	의견 표현	① 교내 징계 시 학생의 의사 소명권 보장	2.56	9	
		② 교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2.74	1	
		③ 학교 운영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	2.64	6	
		④ 인권을 위한 옹호기구나 상담기관	2.68	3	
		⑤ 교내 자치회 운영	2.46	14	
		⑥ 학생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2.54	11	
		⑦ on-off 라인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 설치 여부	2.74	2	
	사회참여	① 봉사활동 및 참여위원회 참여	2.66	4	
		② 지역사회 정책수립 관련 참여율	2.48	13	
		③ 국제교류 활동	2.22	16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항목	평균	순위	선정 여부
	인프라	① 참여를 정례화 할 수 있는(조례, 정책 등) 제도 설치 여부	2.62	7	
		② 청소년 참여 관련 예산의 적정성	2.64	5	
		③ 청소년 참여 관련 전문 인력확보율	2.52	12	

의견 존중의 개인생활에 해당하는 3가지 지표 즉,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의 공개여부’, ‘학생 개인 시험성적의 공개여부’, ‘징계대상 학생 정보의 공개 여부’ 모두 평균이 2점 이하로 나타나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 2점 이하인 3 항목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였다.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비율’은 청소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기타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가정사 및 진로’영역과 ‘문화 및 여가 활동’이 ‘의견존중’ 영역 통합 되었고, ‘의사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수정하였다. 지표항목에 있어 ‘on-off 라인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 설치 여부’를 ‘온라인, 미디어 매체 관련 활동 참여’로 수정하였고, ‘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책수립 관련 참여율’을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관련 참여’로 수정하였다.

‘참여와 의사표현 환경’은 청소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마을’로 명칭을 수정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과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과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을 우선순위별로 조사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하는 과정 우선순위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순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은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정책 개발’, 2순위는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조례’, 3순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4순위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인식변화’, 5순위는 ‘청소년 친화마을 구성과 관련된 법(예 건축법, 학교교육법, 학원법 등)의 개정’, 6순위는 ‘청소년 전문 인력의 확보’, 7순위는 ‘청소년 친화마을 구성에 대한 청소년 참여’, 8순위는 ‘청소년

정책 위원회 구성’, 9순위는 ‘지역사회 환경 평가’, 10순위는 ‘지역주민 홍보’, 11순위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워크숍 개최’로 나타났다.

표 IV-2-7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과정 우선순위

추진과정 내용	우선순위
④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정책 개발	1
①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조례	2
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3
⑪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인식변화	4
⑫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과 관련된 법(예 건축법, 학교교육법, 학원법 등)의 개정	5
⑩ 청소년 전문인력의 확보	6
⑧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청소년 참여	7
⑨ 청소년 정책 위원회 구성	8
⑤ 지역사회 환경 평가	9
② 지역주민 홍보	10
⑦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워크숍 개최	11
③ 관련 전문가 홍보	12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과정 어려움에 대한 우선순위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순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2순위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인식변화’, 3순위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과 관련된 법(예 건축법, 학교교육법, 학원법 등)의 개정’, 4순위는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조례’, 5순위는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정책 개발’, 6순위는 ‘청소년 전문 인력의 확보’, 7순위는 ‘지역주민 홍보’, 8순위는 ‘지역사회 환경 평가’, 9순위는 ‘청소년 정책 위원회 구성’, 10순위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청소년 참여’, 11순위는 ‘소년에 대한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워크숍 개최’로 나타났다.

표 IV-2-8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우선순위

추진과정 내용	우선순위
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1
⑪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인식변화	2
⑫ 청소년 친화마을 구성과 관련된 법(예 건축법, 학교교육법, 학원법 등)의 개정	3
①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조례	4
④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정책 개발	5
⑩ 청소년 전문인력의 확보	6
② 지역주민 홍보	7
⑤ 지역사회 환경 평가	8
⑨ 청소년 정책 위원회 구성	9
⑧ 청소년 친화마을 구성에 대한 청소년 참여	10
⑦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워크숍 개최	11
③ 관련 전문가 홍보	12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반 구축에서부터 사업추진까지의 단계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가능 여부와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여부,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시 사업의 실효성 여부, 지역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청소년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방안, 관련전문가, 지역주민 등에게 홍보,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의 인식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 5 장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모형개발

1. 청소년 친화마을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요건
3.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지표
4. 추진 계획시 고려 할 사항

제 5 장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모형개발

1. 청소년 친화마을의 목표 및 추진방향

청소년 기본정책은 보편적 청소년 발달을 지원한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발달에 적합한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 친화마을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유니세프의 제안을 따르면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갖고 있는 특수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청소년 친화마을의 추진 방향

청소년 친화마을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안전과 유해환경의 증가, 그리고 청소년 활동 및 여가의 위축 등 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청소년의 안전, 지역사회 공간의 재구성과 관계의 회복, 청소년의 역량발달, 그리고 살만한 도시 구성을 핵심가치로 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첫째, 청소년이 자신의 개별적인 요구와 관심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한 안전한(secure)환경을 제공한다. 취약한 물리적 환경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Bradley and Corwyn, 2002) 열악한 주거환경은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Chase-Lansdale and Gordon, 1997)잘 알려져 있다. 지역사회는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 유해환경을 조기에 발견, 조치하여 청소년이 행복하고 즐거운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교통과 약물 및 각종의 중독으로

부터의 안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의 안전, 안전한 활동 및 여가 공간 조성,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으로 학교 폭력, 비행 예방 및 또래와의 유대관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풍부한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발달의 불균형 및 불공평이 해소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소년 역량발달(capable)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청소년기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며 발달 단계적으로 진로개발과 학업성취라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발달과제는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삶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관련 활동들을 실행할 수 있을 때 해결가능하다(권해수·김기현, 2010). 교육환경, 교육자원, 교육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전문 인력, 그리고 교육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은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충분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 다양한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리더십 함양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개인 및 사회적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일련의 체험활동이다.

셋째,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 및 산업화 그리고 가족의 변화로 인해 악화된 청소년의 지역사회 성장환경을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간의 재구성 및 확보, 그리고 가족생활 문화 및 이웃과의 관계 증진 등 지역사회 환경에서 손상된 부분의 회복(resilient)을 촉진한다. 안전을 위협하던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환경의 요소를 제거하며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과 시간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활동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배움을 익힌다.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은 청소년에게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된다.

넷째, 지역공동체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친밀한 돌봄관계를 발달시키고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파트너 십의 구축이 가능한 청소년이 살기 좋은(livable)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지역사회 주민의 청소년 발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며 지역사회 관련 기관간의 연계는 청소년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청소년 친화마을의 조성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주민의 절대적인 관심이 지원이 요구된다.

2) 청소년 친화마을의 목표

청소년 친화마을은 4가지 추진방향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요소를 제거하고 삶의 질을 살피며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성취해 나가는 마을이 될 수 있으려면 청소년 친화마을의 목표를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건강한 지역주민으로서의 청소년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은 창의적이고도 생산적인 역량을 갖춘 건강한 청소년을 양육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기존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권해수 · 김기현, 2010).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발달의 주요 기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호기심과 탐구심의 발휘이다. 다양한 영역의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돌보고 배우는데 필요한 지역의 모든 자원과 서비스는 우수한 것이어야 하며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오늘날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 녹지 공간의 부족, 빈곤, 그리고 폭력에의 노출 등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청소년이 위험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도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국가들은 도시환경이 청소년에게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데 주목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의 청소년 안전위협은 이미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지역사회는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 유해환경을 조기에 발견, 조치하여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 모든 청소년에게 건강, 교육, 등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착취, 폭력, 및 학대, 그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 청소년들이 연령, 성, 소득, 피부색깔, 인종, 종교,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충분한 자원과 공평한 발달기회 제공

청소년은 자신의 요구나 역량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가족이 속한 다양한 계층과 지위로 인해 경험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은 적어도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요구와 흥미를 억제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청소년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우수성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발달기회의 공평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며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이 발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단 한명의 청소년이라도 제외되지 않는 청소년 친화마을의 정책수립과 서비스 기준을 마련한다. 청소년 친화마을의 조성기준은 모든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청소년 친화공간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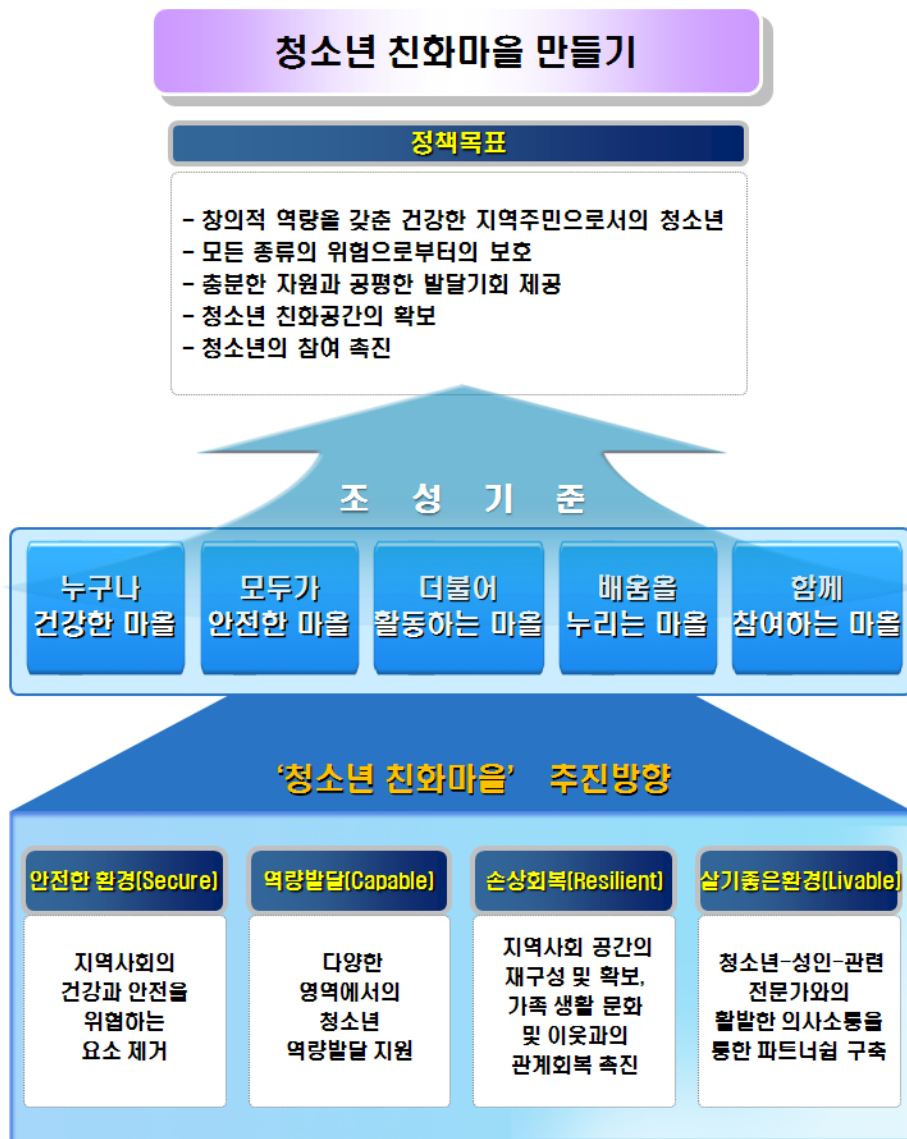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받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발달적 요구를 표현하고 반영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새로운 시도와 모험적인 경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 자신이 발견한 바를 표현하고 이를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과 여가를 위해 안전한 거리와 공간을 확보하며 친환경적 생태적 요구를 반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오염과 교통을 통제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청소년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청소년의 참여 촉진

유니세프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를 청소년 참여로 보았다. 청소년참여는

지역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넓히고 이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참여는 특히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지역 내의 다른 정책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참여는 정보형태 및 제공방법의 변화, 토론과 자문 구조의 변화, 회의의 조직 및 시간 그리고 의제의 변화를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그림 V-1-1】 청소년 친화마을 실행체계

2. 기본요건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청소년 친화마을의 기본요건을 친화도시 개념과 앞서의 국내외 친화도시 운영사례 분석 결과 그리고 유니세프의 친화도시 구축 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기본요건은 청소년 친화지표를 구성하는 일반적 준거로서 청소년 친화마을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하였다. 체크리스트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지역사회 기본 여건으로 청소년 친화마을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에서 지역사회를 점검,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의 일차적 가이드라인이다. 청소년 친화적 도시는 지역사회의 규모, 도시·농어촌에 상관없이 청소년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는 체크리스트에 기반한다.

1)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인기의 시민적 참여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Youniss & Yates, 1999).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시민성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아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 아울러 청소년의 시민성은 청소년 본인의 건전한 발달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성적 미래 사회를 가능케 하는 정신적 토양이 된다(최창욱·조혜영, 2008). 청소년들은 서비스의 계획과 설계에 의미 있는 당사자이며 지역사회 파트너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형평성에 입각하여 청소년 참여는 필수적이다. 청소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고려하는 청소년 참여는 정부의 정보나 조직 및 회의를 청소년들에게 개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의 다각화, 토론과 자문 구조의 변화, 회의의 조직, 타이밍(timing) 및 의제의 변화를 포괄한다. 가족 내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또래 그룹 내에서의 결정 사항에 의견의 제시, 공동체 내에서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 지역의사결정 과정에 수반되는 기회, 공동체 활동에 참가 등 참여의 기회를 가져야 하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지역사회가 청소년 친화마을의 조성요건이 될 것이다.

청소년의 참여를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약 제 12조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부모, 교사, 기관 종사자 및 여러 사람들에게 청소년의 견해를 듣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학업에 할당된 시간이 많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청소년 참여 방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견해를 반드시 청취할 수 있어 지역사회 발전의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협약 제 12조의 원칙이 지방 정부의 정책집행과 서비스 실행 과정에 반영되어 있는가?
- 청소년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역 주민 특히 부모들에게 권고되는가?
- ‘청소년의 견해 존중’이라는 개념이 청소년 자신과 더불어 혹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교육과정 및 연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가?
-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 절차에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권리를 갖고 있는가?

2) 청소년 친화적인 법과 정책

법과 정책은 행정의 근간이 되며 인간 삶에 대한 최소기준을 명시한다. 청소년 친화마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게 되면 청소년 친화마을은 관심 있는 일부 지역주민의 호응에 의존할 뿐 지역주민 전체의 의사로 확대되기 어렵다.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성향과 인식에 따라서는 친화마을이 왜곡되거나 편향되게 발달할 수도 있다. 아울러 청소년 친화마을의 안정적인 실행도 가능해진다. 여성친화도시와 가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운영을 경험하고 있는 각 지방정부는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앞서의 분석을 통해 주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소년 친화마을은 각종 권리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ombuds 제도 및 모니터링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계층 간 혹은 지역 간 청소년 삶의 편차도 줄일 수 있다.

청소년 친화적인 법과 정책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친화마을 구축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혹은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 법과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더불어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포괄적인 자문이 있었는가?
- 지역 당국의 법과 정책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및 일반원칙(차별금지, 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 아동의사반영)을 중시하는 지를 검토하였는가?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자문, 변호 및 소송 절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예: 청소년권리 옴부즈 제도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 지역의 청소년 정책이 지역 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기와 결핍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가?
- 지역의 청소년 정책 실행 과정의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시계열적인 목표 지수를 수립하고 있는가?

3)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

어떤 지방정부 조직 하에서건 청소년 친화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각 지방정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영향력이 큰 독립적 총괄부서(a high profile cross-cutting)을 지정하거나 혹은 정책 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청소년 친화마을의 관련 부서 및 관련기관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 할 수 있으며 역할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의견조율이 가능해 진다.

총괄 책임부서 혹은 조정 메커니즘은 효과적인 조정,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고 각 지방정부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나 이의 사무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청소년 친화마을 사무국 형태의 정책 및 실행 총괄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 다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도시 정부 내 부서(department, unit) 및 조정 메커니즘이 있는가?
 - 청소년 친화마을을 촉진
 -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조정을 책임
 - 청소년전략 초안 작성 및 후속 조치
- 이 부서 및 조정 메커니즘에 지역 정부의 시장·지도자 권위를 부여해 주었는가?
- 이 부서 및 조정 메커니즘은 청소년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청소년들의 견해가 그 사업과 도시 내 모든 정부 사업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가?

4) 청소년에 대한 영향평가

각 지역 정부의 법, 정책, 업무 수행이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 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 친화마을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어떤 정부도 법, 정책, 업무 수행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조사할 수 있는 엄격한 과정이 없이는 청소년 친화마을의 정도를 알 길이 없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영향 평가(child impact assessment)를 권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특정그룹 혹은 연령집단에 대한 법과 정책의 편중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영향평가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준을 토대로 각 지역사정에 맞는 달성 목표치를 책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투입된 총 자원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환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소년영향평가는 자원과 인프라가 지역사회 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장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과정이다. 각 지역의 법이 실행되고 나면 이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각 지역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등의 독립기관에서 이를 시행할 수도 있다.

- 지역 정부의 법과 정책이 지역의 모든 청소년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있는가?
- 이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독립적 과정이 있는가?

5) 예산확보

예산분배의 내용과 양은 각 지역 정부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할당할 것을 권고하였다.

청소년 친화마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에 청소년 친화마을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가시적인 예산 분배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역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이 공평한지, 자원의 활용에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나 불공평이 없는 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지역정부의 청소년예산이 다른 예산 분배와 비교해 볼 때 공평한가?
- 청소년 예산 분배의 내용이 공개되는가?
-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하는가?

6) 청소년 실태 보고서

각 지역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삶의 양상이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청소년 친화마을 실행의 기초자료가 된다. 특히 제한된 예산을 통해 청소년 친화마을 운동을 계획할 경우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출생에서부터 18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통계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중심 정책 개발에 필수적이다. 아동·청소년 권리 위원회는 분리된 데이터 수집을 아동권리협약의 실행을 측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반 측정법으로 간주해 왔다.

-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도시 내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와 기타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는가?
- 도시 아동·청소년들의 실태 보고서가 있는가?
- 보고서가 있다면
 - 이 보고서가 주요 정책 입안자들,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출판·배포되는가?
 - 정책 개발 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3.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 및 지표

앞서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와 유니세프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는 ‘누구나 건강한 마을’, ‘모두가 안전한 마을’, ‘배움을 누리는 마을’,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마을’의 5가지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준을 개발하였다. 각각의 조성 기준은 세부영역으로 나뉘어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5개 조성기준의 각 평가지표는 청소년 친화환경을 위협하는 요소와 친화환경 구축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환경적 요소를 포함하였다. 위험요소에 해당하는 지표를 포함한 것은 그동안 일부 지표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이 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이르렀으며 친화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위험요소가 각 지역에서 가능한 최대한 감소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개의 조성기준에 따른 지표 영역 중 인프라는 각각의 조성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기본 자원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5개 조성 기준에 모두 포함하였다. 조성 기준에 따른 세부영역 및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1) 누구나 건강한 마을

청소년의 건강은 성인기 빈곤 및 사회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최근 선진 각국이 청소년의 건강발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기의 건강발달은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흥미롭게도 청소년기는 음주, 흡연 등 건강위험 행위들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특히 한번 형성된 건강 위험행위들은 교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에서 청소년기의 건강관리는 필수적(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준을 안전과 건강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건강과 안전이 청소년 발달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반해 정작 우리나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상당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이다. 누구나 건강한 청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한 조성기준의 세부영역은 영양·급식, 건강, 정서·행동, 인프라이다.

영양·급식 영역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규칙적인 식사, 영양상태, 학교주변 안전먹거리 장소, 학교급식모니터링 운영이다. 규칙적인 식사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결식 횟수를 산출하고 영양상태는 1일 1인 영양권장량의 75%미만 섭취 청소년을 확인한다. 학교주변 안전 먹거리 장소는 식품안전보호구역 혹은 반경 200M내 안전먹거리 판매장소를 평가한다. 학교 급식모니터링은 급식의 안전성과 충분한 영양공급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포함하였다.

건강영역은 정상신체중실도와 만성질환유별율, 장애청소년지원프로그램,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 학습 미실시율, 공공의료서비스 기관보급 및 공공의료진 수를 측정한다. 공공의료서비스 기관과 의료진 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청소년의 건강검진에 따른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정서·행동 영역은 정신건강(우울, 자살, 스트레스, 불안 등)문제, 행동(공격성, 따돌림 등)문제, 흡연 및 음주, 인터넷 게임 중독을 포함하였다. 인프라는 건강, 정서·행동문제 상담 및 예방 센터, 건강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건강교육 홍보, 전문인력 확보를 포함하였다. 누구나 건강한 청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및 상담, 예방 및 보건 관련한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와 건강과 관련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에 지역 정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지도 중요하다. 청소년 건강발달을 위한 전문 상담사와 예방교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표 V-3-1 '누구나 건강한 마을' 평가지표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
1. 누구나 건강한 마을	1-1. 영양·급식	1-1-1 규칙적인 식사
		1-1-2 영양 상태
		1-1-3 학교 주변 안전 먹거리 장소
		1-1-4 학교 급식 모니터링 운영
	1-2. 건강	1-2-1 정상 신체충실도
		1-2-2 만성질환 유병률
		1-2-3 장애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1-2-4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미실시율
		1-2-5 공공의료서비스 기관 보급 및 공공의료진 수
	1-3. 정서·행동	1-3-1 정신건강(우울, 자살, 스트레스, 불안 등)문제
		1-3-2 행동(공격성, 따돌림 등)문제
		1-3-3 흡연 및 음주
		1-3-4 인터넷 게임 중독
	1-4. 인프라	1-4-1 건강, 정서·행동문제 상담 및 예방 센터
		1-4-2 건강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1-4-3 건강교육·홍보
		1-4-4 전문인력 확보

2) 모두가 안전한 마을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은 청소년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유니세프의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아젠다는 도시화로 인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이 위협받는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취약한 물리적 환경(Bradley and Corwyn, 2002)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ase-Lansdale and Gordon, 1997)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 및 유해환경을 제거하여 청소년이 안전과 건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안전한 마을’의 친화마을 조성 기준은 물리적 환경, 유해환경, 위기·응급 상황, 인프라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물리적 환경의 평가지표는 가정 시설(상하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채광, 난방설비, 화재안전 등) 안전도, 학교 시설(교실, 복도, 급식시설, 화장실 등) 안전도, 청소년 시설(난방 설비, 채광, 화재안전시설 등) 안전도, 가로등, 보안등 수, 밝기 적정성, 안전한 보행로 확보, 학교 주변 교통안전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물리적 시설에 대한 내용을 세부 기준 지표에 포함하였다. 상하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채광, 난방설비, 화재안전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의 구조·성능, 환경기준(구조강도확보, 채광·난방설비, 화재안전시설)의 안전도를 평가한다.

학교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 생활하는 장소이다. 학교에서 물리적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실, 복도, 급식시설, 화장실, 운동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검사 실시 여부를 측정한다. 청소년 시설의 안전도는 청소년 활동 시설에 대한 난방설비, 채광, 화재안전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의 시행이 포함되었다.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이동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가로등, 보안등 수, 밝기 적정성을 점검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학교주변 교통안전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었다.

유해환경 영역은 청소년 비행발생, 성범죄로부터의 안전, 유해업소 수, 통행금지 구역 및 제한구역 범위가 포함되었다. 폭력 및 가출 등의 청소년 비행 발생 비율이 평가되고 성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는 성범죄,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을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측정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해업소 수를 측정하며 통행금지 구역 및 제한구역 범위 지정현황을 파악하여 청소년 친화지역 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기·응급상황 영역은 가정폭력 상담서비스, 학교폭력 상담서비스, 체벌 없는 청소년관련 기관, 마을주민 안전보호망 운영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가족, 교사 및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에 중요하므로 이들과의 관계에서의 폭력 및 피해상담 그리고 체벌 상황 등을 파악한다. 인프라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상담 등의 지지체계가 있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 지원 및 예방 센터, 학교폭력, 체벌, 차별 지원 및 예방 센터, 안전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안전생활 홍보, 전문인력 확보, 안전 모니터링이 포함되었다.

지역사회 유해환경과 위험요소로부터의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 모니터링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진보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표 V-3-2 '모두가 안전한 마을' 평가지표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
2. 모두가 안전한 마을	2-1. 물리적 환경	2-1-1 가정 시설(상하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채광, 난방설비, 화재안전 등) 안전도
		2-1-2 학교 시설(교실, 복도, 급식시설, 화장실 등) 안전도
		2-1-3 청소년 시설(난방설비, 채광, 화재안전시설, 건물 노화도 등) 안전도
		2-1-4 가로등, 보안등 수, 밝기 적정성
		2-1-5 안전한 보행로 확보
		2-1-6 학교 주변 교통안전
	2-2. 유해환경	2-2-1 청소년 비행발생
		2-2-2 성범죄로부터의 안전
		2-2-3 유해업소 수
		2-2-4 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범위
	2-3. 위기, 응급 상황	2-3-1 가정폭력 상담서비스
		2-3-2 학교폭력 상담서비스
		2-3-3 체벌 없는 청소년관련 기관
		2-3-4 마을주민 안전보호망 운영
	2-4. 인프라	2-4-1 가정폭력 지원 및 예방 센터
		2-4-2 학교폭력, 체벌, 차별 지원 및 예방 센터
		2-4-3 안전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2-4-4 안전생활 홍보
		2-4-5 전문인력 확보
		2-4-6 안전 모니터링

3)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교육의 지원과 더불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는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개인 및 사회적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일련의

체험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 1991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이후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수행되어져 왔다(문성호 · 문호영, 2010).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및 취미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기 여가 문화의 중요성은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고, 개성을 신장시키며 좋은 인성을 심어주는 기회이다(이미은 · 안권순, 2010). 특히 지역사회가 개최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즉 경제, 사회, 문화, 봉사, 체육 등 많은 프로그램의 체험과 취향에 맞는 문화 · 체육 등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연계로 보다 쉽게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지,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세부영역은 활동 및 여가문화, 활동 및 여가시간 · 공간, 그리고 인프라로 구성되었다. 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의 세부 평가지표는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참여, 동아리 활동 지원이 측정된다.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취미, 특기 활동, 스포츠 활동, 다양한 축제,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청소년이 주축이 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인구수와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지를 파악한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자체 동아리를 조직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 및 일부 재원에 대한 지원여부를 평가한다.

청소년 활동 및 여가시간 · 공간은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방과후 활동 및 여가시간, 학교 내 활동 및 여가공간, 지역사회 활동 및 여가공간,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 청소년 활동을 위한 공공기관 활용도, 야외 녹지공간 확보가 포함되었다.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은 가족과 함께하는 신체활동, 스포츠, 각종 문화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학교내 및 지역사회 활동 및 여가공간은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는 놀이터 가족 공원 등의 공공놀이시설에 청소년 놀이가 가능한 공간 확보 및 배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활용도는 청소년 활동과 여가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개방정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야외녹지공간의 확보는 청소년 친화활동 운동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지역사회 녹지 공간의 확보비율 및 이용률을 통해 측정한다.

인프라는 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 센터, 활동 및 여가 기관 연계체계 구축, 활동 및 여가와 관련된 정보 접근성, 활동 및 여가를 위한 기구 보급, 활동 및 여가관련 전문인력 확보로 구성하였다.

이중 활동 및 여가를 위한 기구 보급은 활동 및 여가에 관련된 기구(운동기구, 예술, 체험도구 등)보급 정도를 의미한다.

표 V-3-3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평가지표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
3.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3-1. 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	3-1-1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 제공
		3-1-2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참여
		3-1-3 동아리 활동 지원
	3-2. 활동 및 여가 시간·공간	3-2-1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3-2-2 방과후 활동 및 여가 시간
		3-2-3 학교 활동 및 여가 공간
		3-2-4 지역사회 활동 및 여가 공간
		3-2-5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
		3-2-6 공공기관 활용도
		3-2-7 야외 녹지공간 확보
	3-3. 인프라	3-3-1 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 센터
		3-3-2 활동 및 여가 기관 연계체계 구축
		3-3-3 활동 및 여가와 관련된 정보 접근성
		3-3-4 활동 및 여가를 위한 기구 보급
		3-3-5 활동 및 여가관련 전문인력 확보

4) 배움을 누리는 마을

청소년기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며 발달 단계적으로 진로개발과 학업성취라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발달과제는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삶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실행할 수 있을 때 해결 가능하다(권해수·김기현, 2010). 특히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기존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권해수·김기현, 2010).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4개국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 비교조사”에서 최근 1주간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72.6%에 이르렀다(최인재, 2011). 청소년기는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되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한 경험하고 싶어 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배움을 누리는 마을의 평가지표는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지식 확장 욕구 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진로 ·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필요한 자원, 공간 그리고 필요한 인력이 배치 · 활용될 수 있는 가를 평가지표에 포함하였다. 특히 학교 급간의 연계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하므로 이의 내용을 지표에 포함하였고, 배움을 누리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 교육기회, 교육연계, 진로 · 직업, 인프라를 포함하였다.

교육기회의 영역은 교육기회와 교육기회 연계성이 평가된다. 교육기회는 학교 중도탈락률, 각 학교, 학년의 학업성취수준이 포함되었고,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학습동아리 구성,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청소년 학습동아리 구성은 이를테면,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지식을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배워나가는 역사동아리, 각국 언어동아리, 수 · 과학 동아리 등이 있을 수 있다. 문화와 관련하여서는 미술, 사진, 영화, 드라마 등의 동아리를 통해서 지식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교육기회의 연계성은 학교급간의 상호연계프로그램 실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인재 나눔 프로그램 운영, 공공 및 민간도서관 수 등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었다.

청소년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진로 · 자립지원 여건의 조성은 청소년 친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각 국이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역이다. 현재 청소년의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참가율은 10.5%로 OECD 주요국의 평균18.5%(이혜숙, 2008)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진로 · 직업 관련하여 공공시설 연계 직업 체험 학습기회가 평가지표에 포함되었다.

교육인프라 평가지표는 교육 및 진로관련 지원센터, 배움 관련 정보제공, 교육관련 기관 연계 체계 구축,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 및 전문인력 확보가 평가지표에 포함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력과 자원을 공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표 V-3-4 ‘배움을 누리는 마을’ 평가지표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
4. 배움을 누리는 마을	4-1. 교육기회	4-1-1 학교 중도탈락률
		4-1-2 학업성취 수준
		4-1-3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제공
		4-1-4 청소년 학습동아리 구성
		4-1-5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4-2. 교육연계	4-2-1 학교 급간의 상호 연계 활동
		4-2-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4-2-3 지역사회 인재 나눔프로그램 운영
		4-2-4 공공 및 민간 도서관 수
	4-3. 진로·직업	4-3-1 학교 및 지역사회 진로교육 프로그램
		4-3-2 공공시설 연계 직업 체험 학습 기회
	4-4. 인프라	4-4-1 교육 및 진로관련 지원센터
		4-4-2 배움관련 정보 제공
		4-4-3 교육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4-4-4 교육관련(방과후, 진로, 자립 등) 전문인력 확보

5) 함께 참여하는 마을

청소년들은 서비스의 계획과 설계에 의미 있는 당사자이며 지역사회 파트너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 내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또래 그룹 내에서의 결정 사항에 의견의 제시, 공동체 내에서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 지역의사결정 과정에 수반되는 기회, 공동체 활동에 참가 등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청소년 친화마을의 조성요건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한 의견 표현과 참여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도 건강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현재 생활뿐 아니라 미래의 준비에도 자신감과 목표의식이 생기게 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가치롭다고 느끼게 된다. 특히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참여는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교사관계, 또래관계의 유대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애착과 흥미를

유발하는 유익한 권리이다.

유니세프는 청소년 친화마을 구성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청소년의 참여를 들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인기의 시민적 참여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Youniss & Yates, 1999).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시민성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아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 아울러 청소년의 시민성은 청소년 본인의 건전한 발달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성적 미래 사회를 가능케 하는 정신적 토양이 된다(최창욱·조혜영, 2008).

청소년 친화마을의 요건으로 ‘함께 참여하는 마을’은 의견존중과 표현의 자유, 사회참여, 참여관련 인프라의 세부 지표로 구성하였다. 의견존중은 상급학교 선택 시 자녀의 의견반영,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반영,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청소년 의사반영의 평가지표가 있다.

표현의 자유 중 의사표현은 교내 징계 시 학생의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학교비율, 학교 운영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비율, 교내자치외의 운영, 청소년 인권을 위한 옹호기구나 상담기관이 설치된 학교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참여 부분에서는 청소년 봉사활동 및 참여위원회 참여,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동, 지역사회 직업 체험 프로그램 참여율, 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책수립 관련 참여율,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참여율을 포함하였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책수립 관련 참여율은 지역사회 정책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가를 평가한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청소년 참여지원센터, 참여기관 연계체계 구축, 정보 접근성, 전문인력 확보, 청소년 참여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였다.

표 V-3-5 ‘함께 참여하는 마을’ 평가지표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항목
5. 함께 참여하는 마을	5-1. 의견존중	5-1-1 상급학교 선택 시 자녀의 의견 반영
		5-1-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반영
		5-1-3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청소년 의사 반영
	5-2. 표현의 자유	5-2-1 교내 징계 시 학생의 의사 소명권 보장
		5-2-2 교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5-2-3 학교 운영회에 학생참여 보장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항목
		5-2-4 교내 자치회 운영
		5-2-5 인권을 위한 옹호기구나 상담기관
	5-3. 사회참여	5-3-1 봉사활동 및 참여위원회 참여
		5-3-2 온라인 · 미디어 매체 관련 활동
		5-3-3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관련 참여
		5-3-4 국제교류 활동
	5-4. 인프라	5-4-1 참여관련 지원센터
		5-4-2 참여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5-4-3 참여관련 정보의 접근성
		5-4-4 전문인력 확보
		5-4-5 청소년 참여 모니터링

4. 추진 계획시 고려할 사항

5개 지표가 포괄적으로 반영된 청소년 친화마을을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정을 고려할 때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5개 조성기준을 토대로 한 친화마을을 조성할 때 지역 사정에 따라 다음의 몇 가지 형태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 조성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각 지방정부의 예산과 인력 규모, 사용가능한 행정체계와 관련기관의 참여 수준, 그리고 청소년 생활실태에 따라서 각 영역의 우선순위별로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를 테면 어느 지역사회의 경우, 청소년의 안전이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인되었다면,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의 전제하에 ‘청소년 모두가 안전한 마을입니다’를 지역사회 아젠다로 우선 선정할 수 도 있다.

이후 영향평가 등을 통해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면 그 다음 우선순위가 되는 예를 들면, ‘청소년 누구나 건강한 마을입니다.’ 등을 청소년 친화마을의 아젠다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은 시간을 요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친화마을 지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돌봄이 제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의 범위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 지역규모 및 특성에 따른 친화마을 조성 계획 수립

대도시의 경우와 소규모 도시 그리고 농어촌의 경우는 지역 특성에 따라 친화마을의 우선 요건이 다를 수 있다. 지역별 규모에 따른 요건은 평가지표의 요구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 운영 및 관련기관의 운영 점검 및 설립, 그리고 프로그램의 신성 및 내실화 등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지표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도시

- 안전먹거리 장소 확대
- 건강지원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 녹지공간의 확보
- 안전한 이동
- 유해업소의 최소화
- 청소년 활동 공간
- 교통안전 시설
- 지역사회 재능 나눔
- 공공건물 유휴 실외 공간 및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
- 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통로 마련
- 인권 옹호 기구

○ 중소도시

- 공공의료 기관 및 인력 배치
- 녹지공간 확보
- 안전한 이동

-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보
- 마을 주민 안전보호네트워크
- 청소년 여가 및 활동 공간 확보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공공건물 유휴 실외 공간 및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
-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통로 마련
- 인권 옹호 기구

○ 농어촌

- 가로등, 보안등 수, 밝기 적정성
- 공공 도서관 확보
- 청소년 전용시설
-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 도서관
-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
- 다양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통로 마련
- 인권 옹호 기구

그러나 지역사회 규모와 관계없이 청소년 권리 침해를 옹호할 수 있는 ombuds 활동과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보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다.

제 6 장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방향

1. 청소년 친화마을 사업추진 단계
2. 추진체계의 구축과 활성화 방안
3. 향후 과제

제 6 장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방향

1. 청소년 친화마을 사업추진 단계

1) 계획수립 : 목표 및 원칙

앞서 제시된 청소년 친화마을의 기본방향과 목표 그리고 기본 요건을 토대로 우선 각 지역의 청소년 친화마을 목표와 실행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 삶의 특징과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들의 재원규모, 인적자원 동원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다. 최종적으로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청소년 친화마을의 기본 요건과 목표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친화마을의 개념 확립 및 추진 방향 설정
- 청소년 친화마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확대
-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
- 청소년 발달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공간 활용 계획의 수립
-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

2) 실행단계

청소년 친화마을을 실행하는 주무부처를 결정하여 계획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의 참여를 고려한 실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홍보 및 주민 참여 독려

- 민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 지방 의회에 대한 홍보
- 청소년 관련 인력에 대한 홍보

(2) 법과 정책 마련

-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에 필요한 법과 정책 마련
-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법적인 보장

(3) 예산 확보 및 기금 마련

- 필요한 예산의 확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 친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금 마련
: 다각도의 기금마련 방식 개발, 실행

(4) 담당부서의 지정 및 협조체계 구축

-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주관 부서의 지정 및 관련 행정기관간의 업무체계의 마련 : 청소년 친화마을 사무국 구성
- 청소년 친화마을 실행기구 구성 및 운영(각 지방 정부 내 행정부처간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각 지역의 청소년관련단체, 일반 시민 그리고 청소년 친화마을 실행기구와의 협의체 구성

3) 관리 및 평가단계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앞서 제시된 기본 요건과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준에

다른 평가지표의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용 검토를 거쳐 진행한다.

- 추진 사업을 통해 각 기본요건의 내용을 이행하였는가?
- 친화마을의 각 평가 지표에 따라서 공간이 확보되고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었는가?
- 청소년 친화마을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 및 정책,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 청소년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지역주민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청소년의 삶의 질이 실제로 향상되었는가?

2. 추진체계의 구축과 활성화 방안

1)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체계 확립

중앙정부 즉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친화마을 정책의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기반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계획에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이 정책의 주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예산 자립도가 특히 취약한 지역에서 새로운 정책 실행과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범위의 예산지원도 계획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친화마을에 대한 대대적인 대 국민 홍보를 계획해야 한다.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청소년 친화마을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와 목표 그리고 이것이 가져다 주는 효과를 상세하게 국민에게 안내해 주어야 한다.

한편,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련 법령이나 지침의 재개정이 요구된다.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살기 좋은 마을’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우선배치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법제정은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의 핵심이 된다. 관련 조례의 제정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안착에 필수적이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에 필요한 기구의 설립 및 인력의 확보, 그리고 예산의 책정이 가능해 진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청소년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에 착안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아젠다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의 주요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총괄부서의 설치,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및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계획의 수립,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지원 및 친화마을에 대한 홍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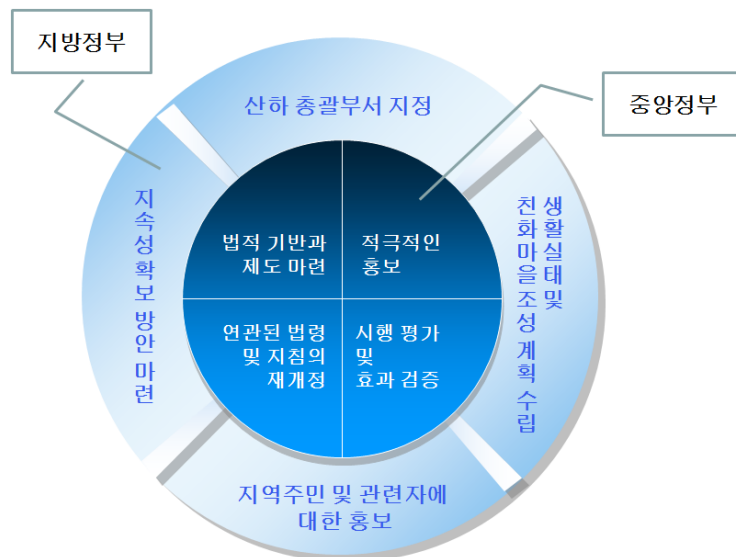
표 VI-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

- 법적기반과 제도 마련
- 친화마을의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청소년 친화마을과 연관된 법령이나 지침의 재개정
- 청소년 친화마을 시행 평가 및 효과 검증

□ 지방정부

-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각 지방정부 산하의 총괄부서 지정
: 주무부서로서의 역할 담당
- 친화마을의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련자에 대한 홍보
- 지속성 확보 방안 마련
: 관련 조례 제정은 친화마을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음
-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와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계획수립



【그림 VI-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이외에도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친화마을 구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이를 테면 청소년 친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안내해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형태의 청소년 친화마을이 탄생될 수 있는 지를 실례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친화마을 중 청소년 친화공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 지역특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통해서 지역을 특화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친화마을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브랜드 창출을 할 수 있다. 청소년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라는 브랜드는 가장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5개의 청소년 친화마을 지표 중 청소년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확인되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청소년 친화마을을 특화할 수 있다. 이를테면 ‘청소년 모두가 배움을 누리는 마을입니다’를 청소년 친화마을의 아젠다로 할 경우 청소년 축제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장르의 학문을 접하게 하고 관련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발달을 지원 할 수 있다.

- 청소년 축제

- 예) · 청소년 인문학 축제
- 청소년 북페어
 - 청소년 과학 축제
 - 청소년 창의 대제전
 - 청소년마라톤축제
 - 청소년 댄스 축제
 - 청소년 표현 축제 등

3) 친화마을의 효과에 대한 홍보

청소년 친화마을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타 지역의 청소년 친화마을 도입에 대한 관심과 차여를 촉진한다. 특히 각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참여를 독려한다.

4) 청소년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지역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 전반에 청소년의 자연친화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 청소년이 지역공간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의 참여를 제도화,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위원회’ 혹은 ‘청소년 의회’ 형태의 참여기제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들은 청소년 친화마을의 구성에서 실행, 평가에 이르기 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참여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의 다각화, 토론과 자문 구조의 변화, 회의의 조직, 의제의 변화 등 모든 과정에서 가능해야 한다.

- 청소년 참여 기반 조성
 - : 청소년 실태조사의 선행
- 청소년 참여 방안의 다각화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정책 제안 통로 마련
 - 지역사회 공간 구성 과정에의 참여 제도화
 - : On-Off라인의 참여
 - 지역 행정 평가 팀 구성
- 청소년 참여의 학교 교육과 연계
- 지역사회 예술, 음악, 체육활동 조직
 - 예) ~구 청소년합창단, ~구 청소년소케스트라 등

5)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팀

지역의 청소년, 민간과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시민이 연합하여 주민자치 조직 형태의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는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 공간 계획이나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이 기구에는 기존의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 각종의 청소년관련 정책자문 기구 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향후 과제

1) 지역사회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의 유도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중 하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지역주민의 청소년 친화마을 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한 인식과 이것이 청소년의 인적자원 개발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의 안착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행자체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을 높인다. 전남 장흥군이 가족친화의 우수사례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요인은 주민의 참여와 효율적인 행정지원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이다. 가족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지역청소년의 삶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가이다. 우선,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홍보의 주요 방법으로 청소년 친화마을에 대한 지역주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친화마을의 개념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의 요구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주민 중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로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청소년 자원봉사 인력을 중심으로 청소년 친화마을 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이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풍부한 지역 인적자원간의 연계는 예산 절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주민 간 유대강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에서 중요하다.

2) 청소년 친화마을 발전 방향 정립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청소년의 삶의 실상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특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적절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학습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때 이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우선 온라인을 통한 참여와 다양한 형태의 여가 및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의사표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발적 참여에 대한 긍정적 강화 및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4) 예산의 확보

청소년 친화마을이 실행·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청소년 친화마을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에 필요한 충분한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기금을 모금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에만 배정되어 있는 청소년 발전기금은 지방 청소년 발전기금으로 확대 될 수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7). 비전2030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종합계획 수립 연구.
- 구창모(2000). 중·고등학생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1), 25-36.
- 권해수·김기현(2010). 자율적 행동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핵심역량 만족도, 진로계획 및 학업성취도, 교육심리연구지, 24(1), 83-102.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2009). 아동청소년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김선미·이승미(2010). 가족형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사례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4(4), 101-126.
- 김선엽(1995). 한국 사회의 지역문제와 청소년. 한국청소년연구, 6(2), 5-16.
- 김수정(2008).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영향: 결식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5, 9-38.
- 김영주 외(2007). 논산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햇빛촌 바랑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별영향 평가. 여성가족부.
- 김영지(2009). 유니세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개발을 위한 아홉가지 원칙. NYPI Youth Report, Vol 5, pp. 36-41.
- 김영지 외(2006).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윤경(1998).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박영신(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9(4), 973-1002.
- 김의철·박영신·곽금주(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김정연 · 정현주(2008).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3: 171-190.
- 김태영(200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삶의 질 향상 매뉴얼. 행정자치부.
- 김현철 · 김은정 · 민경석(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II: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홍록 · 정민영 · 이정원(2000). 건강한 여가사회를 위한 청소년 폭력대책 방안,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19, 59-67.
- 남미애(2008). 청소년실패 및 가출유형에 따른 가출청소년의 이용만족과 삶의 질 차이. 청소년학연구, 15(6), 89-120.
- 류시문(2003).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중석 외(2007).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문성호 · 문호영(2010). 청소년활동의 참여실태, 만족도 및 영역별 효과성, 청소년복지연구, 12(2), 95-122.
-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2006).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증진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영신 · 김의철(2003).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1호, pp. 37-54.
- 박영신 · 김의철 · 정갑순 · 이상미 · 권혁호 · 양계민(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건강, 5(1): 91-118.
- 박현미 · 박영신 · 김의철(2007). 학교유형과 학업성취가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신뢰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4(1), 1-18.
- 박현옥 · 이한나(200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환경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남 홍성군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지, 15(1): 83-93.
- 보건복지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1). 2010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 성미옥(200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칭찬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병철(1999). 경제위기와 가족관계, 후기 사회학대회.
- 양광식(2009).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의 정책과제. 전북발전포럼 33호.

- 여성가족부(2008).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08-2012. 관계부처합동.
- 여성가족부(2010).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 보완) 기본계획 2008-2012. 관계부처합동.
-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시행계획.
- 유정란 · 윤혜미(2004).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인, 스트레스 변인 및 대처방식. 생활과학논총, 8(1): 71-92.
- 유희정 · 김양희 · 이미원 · 최진 · 문희영(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연구.
- 이광호(2009). 청소년정책 이해의 핵심코드와 한국 사회 청소년정책의 내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 129-153.
- 이명순(2006). 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순 · 변미희(2007). 청소년에 대한 가족지지가 욕구충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12(1): 61-81.
- 이미리(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이미은 · 안권순(2010). 주 5일 수업제가 청소년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연구 17(2), 309-341.
- 이선영(2004). 생태체계 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인 삶의 질 영향요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송지 · 김혜장 · 이경란 · 곽영선 · 정영화(2009).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 이재연(2008). 아동이 행복한 세상만들기. 한국아동복지학회 · 한국아동권리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16.
- 이재연 · 황옥경 · 이은주(2009).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서울: 서울복지재단.
- 이재연 · 황옥경 · 권영임 · 최창욱(2010). 제2기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 서울: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이종수(2008). 살기좋은 지역 측정모델 개발 및 활용방안. 행정자치부.
- 이현주 · 이미나 · 최인수(2008).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의 타당화 및 삶의 질 분석. 교육심리연구, 22(1), 301-315.

- 이혜숙(2008). 학습도시 서울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 1-21.
- 이혜원 · 김성천 · 오승환 · 이태수 · 정익중(2009). 아동 · 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아동복지학, 28, 73-100.
- 임미향 · 박영신(2007).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박람회 논문집.
- 임미향 · 박영신 · 김의철(2006). 초등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15(1): 53-67.
- 임세희 · 이봉주(2009). 최저기준 미달 주거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0(3), 243-265.
- 임영실(2004). 청소년의 긍정적 자가지각과 주관적 안녕감 및 귀인성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신현(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겨울호) 63-82.
- 정경희 · 이윤경 외(2008). 초고령지역의 보건복지 모형설계를 위한 세부지침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 정현숙 · 정문자(1995). 청소년의 긴장 원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148-158.
- 조명한, 김정호, 권석만(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51-94.
- 차성란(2010). 주민주도적인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기관의 역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77-100
- 최윤정(2004).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 부모역할과 부모와의 애착의 매개역할.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인재 외(2011).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조사-한미일중 4개국 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 조혜영(2008). 청소년 정책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청소년학연구, 14(6), 203-227.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상숙 · 김경미(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37-44.
- 한상철(2006).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삶의 질: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99-116.

- 한유선(1996). 청소년의 주변 환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08). 살기좋은 지역 측정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200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연구.
- 허인수(1988). 고등학생 일탈행위에 대한 가정과 학교변인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승아 · 김혜영 · 류연규 외(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애 · 이재연(2011a).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 인식. 아동학회지, 32(2), 53-70.
- 홍승애 · 이재연(2011b).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부모 및 사회복지사의 인식. 육아정책연구 5(1), 149-172.
- Arnett, J.(1998). Risk behavior and family role transitions during the twen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3): 301-320.
- Benjet, C. & Hernandez-Guzman, L.(2001). Gender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NSci, K. J & Astedt-Kurki, P.(2005). Familial contribution to adolescent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11, 125-133.
- Bradley, R. and R. Corwyn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71-399.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United States, 2007.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57, 1-134.
- Chase-Lansdale, L. P. and Gordon, R. A. (1997). Economic hardship and the development of five-and six-year-olds: Neighborhood and regional perspectives. *Child Development*, 67: 3338-3367.
- Corsano, P., Majorano, M, & Champretavy, L.(2006).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xperience of being alone. *Adolescence*, 41(162): 341-353.
- DCSF (2008). *The Play Strategy*.

- Demo, D. H., & Acock, A. C.(1996).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and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6:457-488.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5): 542-575.
- Diener, E., Oishi, S & Lucas, R. E.(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403-425.
- Fischer, C.(1982). *To Well along Friends: Personal Network in Town and C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lanagan, C. A. & Eccles, J. S.(1993). Changes in parent's work status and adolescent's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4: 246-257.
- Fremerey, U. et. al. (1997). *Youth Policy: A report by an international review group appointed by the Council of Europe*, September.
- Gaspart, F.(1998). O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nd the cooperative production problem. *Social Choice and Welfare*, 15: 95-112.
- Green, M.(1999).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A Comparative Approach*. New Jersey: Prentice-Hall.
-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C.(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2): 231-250.
- Hammen, C., Rudolph, K., Weisz, J., Ral, U., & Burge, D.(1999). "The Context of Depression in Clinic-referred Youth: Neglected Areas in Trea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64-74.
- Huebner, S. E., Valois, R. F., Paxton, R. J., & Wanzer J. D.(2005).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 15-24.
- IMD(2007).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Irwin, C. E., Jr.(1993). Adolescent and risk taking: How are they related? In N. J. Bell & R. W. Bell (Eds.), *Adolescent risk taking*, Sage, Newbury Park, CA.
- Jeffrey, K. (2008). *Youth Policy: What Works and What Doesn't: A Reviews of*

- Youth Policy Models from Canada and Other Jurisdictions. Feb, 2008, Toronto: United Way Toronto.
- Johnson, J. P., McCauley, C. R., and Copley, J. B. (1982). The quality of life in hemodialysis and transplant patients, *Kidney International*, 22: 286–291.
- Kasarda, J. and M. Janowitz.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28–339.
- LARD (2001). Study on the state of young people and youth policy in Europe. final reports, 1: Executive summary and comparative reports, Milan.
- Levitt, M. Z., & Selman, R. L. (1996). The personal meaning of risk behavior: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friendship and fighting in early adolescenc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New Jersey.
- Malone, K. (2009). Designs For a child friendly city, *Journal of Curriculum Leadership*, 7(2), 45–50.
- McLeavay, B. C., Daly, R. J., Murray, C. M., O'Riordan, J., & Taylor, M. (1987).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deficits in self-poisoning patien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17, 33–49.
- McLoyd, V. (1990). The impact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 McWhirter, E. H., & McWhirter, R. J. (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rooks & Cole.
- Middleton, E. (2006).
- Murry, J. W. & Hammons, J. O. (1995). Assessing the Managerial and Leadership Ability of Community College Administrative Personnel.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9(3), 209–218.
- Myers, D. G. and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OECD (2006).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OECD (2006). Society at a Glance.
- OECD (2007).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 Rask, K., Astedt-Kurki, P., Paavilainen, E., & Laippala, P.(2003). Adolescent subjective well-being and family dynamics. Nordic College of Caring Science, Scand J. Caring Sci, 17, 129-138.
- Riggio, E. (2002). Child Friendly Cities, Environment & Urbanization, 14(2). 45-58.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ampson, R. J.(1988). Local Friendship Ties and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766-779.
- Schunaker, S.A., Anderson, R.T., and Czajkowski, S.M. (1990) Psychological tests and scales, Raver Press, New York.
- Shek, D. T. L.(2005). Perceived parental control processes, parent-child relational qual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hines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economic disadvantag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2), 171-188.
- Siurala, L. (2005). A European Framework for youth policy. 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UNESCO (2004). Unesco's Contribution: Empowering Youth through National policies. <http://www.unesco.org/youth>.
- UNICEF(1996). Toward Child Friendly Cities : New York : UNICEF.
- UNICEF(2005). Cities With Children-Child Friendly Cities in Italy,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Florence.
- UNICEF(2010). Assessing and Monitoring Child Friendly Communities,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Florence.
- Veen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 Ventegodt, S., Merrick, J., and Andersen, N.J.(2003) Quality of Life Theory: An integrative theory of the global quality of life concept,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Vol.3, pp.1030-1040.
- Videon, T. M.(2005). Parent-child relation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Do dads matter?, Journal of Family Issues, 26(1), 55-78.
- Waiker, S.R. and Rosser, R.M.(1988) Quality of life assessment and application, MTP.
- Williamson, H. (2008). Supporting Young People in Europe, 2. Lessons from the

- 'second seven' Council of Europe international review of national youth policy,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Yonug, J. L., Carver, P. R., & Perry, D. G.(2004). Does gender identity influence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0(4), 572-582.
- Youniss & Yates (1999). Youth service and moral-civic identity: A case for everydaymoralit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1, 361-376.
- ‘고령친화도시 서울위해 ‘노인특별조례’ 만든다’. 서울특별시 2010년 10월 6일 보도자료.
[Online]. <http://www.seoul.go.kr>
- ‘8개 자자체, 여성친화도시를 향한 출발선에 서다’. 여성가족부 2010년 11월 17일 보도자료.
[Online]. <http://www.mogef.go.kr>
- ‘여성친화도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발전하다.’여성가족부 2011년 7월 4일 보도자료.
[Online]. <http://www.mogef.go.kr>

부 록

부록 1. 평가지표 산식

부록 2. 델파이 조사지

부 록 1. 평가지표 산식

1. 누구나 건강한 마을

1-1. 영양·급식

1-1-1 규칙적인 식사

- 정의: 최근 일주일간 결식 횟수
- 산식: 일주일간 아침, 점심, 저녁결식 횟수
() 건/주

1-1-2 영양 상태

- 정의: 1일당 1인 영양권장량의 75%미만 섭취자의 백분율
- 산식: (1일당 영양권장량 75%미만 섭취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100
() %
※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섭취율 지표 활용

1-1-3 학교 주변 안전 먹거리 장소

- 정의: 학교 주변 안전 먹거리 장소 (식품안전보호구역 혹은 반경 200M) 설치율
- 산식: 안전 먹거리 판매장소/전체 먹거리 판매 장소×100
() %
※ 안전관리특별법 제2장 제5조 근거

1-1-4 학교 급식 모니터링 운영

- 정의: 학교 급식 모니터링 운영 정도

- 산식:

①	②	③	④
---	---	---	---

1-2. 건강

1-2-1 정상 신체충실도

- 정의: 정상 체중 청소년 비율

- 산식: $(\text{비만도 정상}(18.5 \sim 24.9) \text{ 청소년 수} / \text{전체 청소년 수}) \times 100$
() %

※ 25정도(18.5~24.9)면 정상, 25.0~29.9는 과체중, 30.0~34.9는 경도비만, 35.0이상은 고도비만

1-2-2 만성질환 유병률

- 정의: 만성질환(관절염, 고혈압, 치아우식증, 위염/소화성궤양, 알레르기성 비염, 요통/좌골통, 당뇨, 디스크, 사고후유증, 신경통 등)별로 유병률을 파악함.

- 산식: $(\text{만성질환 유병자 수} / \text{대상 인구수}) \times 100$
() %

1-2-3 장애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정의: 장애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수

- 산식: () 개

1-2-4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미실시율

- 정의: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미실시 학교 비율

- 산식: $(0\text{교시 수업 혹은 야간자율학습 미실시 학교 수} / \text{전체 학교 수}) \times 100$
() %

1-2-5 공공의료서비스 기관 보급 및 공공의료진 수

- 정의: 공공의료서비스 기관 및 의료진 수/청소년 수
- 산식: () 개, () 명

1-3. 정서·행동

1-3-1 정신건강(우울, 자살, 스트레스, 불안 등)문제

- 정의: 전체 청소년 대비 정서(우울, 자살, 스트레스, 불안)문제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
- 산식: (정서문제 청소년 수/ 전체 청소년 수)×100
() %

1-3-2 행동(공격성, 따돌림 등)문제

- 정의: 전체 청소년 대비 행동(공격성, 비행 등)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
- 산식: (행동문제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100
() %

1-3-3 흡연 및 음주

- 정의: 청소년 중 흡연 및 음주를 경험한 비율
- 산식: (흡연 및 음주 경험 청소년 수/전체 청소년 수)×100
() %

1-3-4 인터넷 게임 중독

- 정의: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 율
- 산식: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 수/ 전체 청소년 수)×100
() %

1-4. 인프라

1-4-1 건강, 정서·행동문제 상담 및 예방 센터

- 정의: 건강, 정서·행동문제 지원 및 예방 센터 수
- 산식: () 개

1-4-2 건강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 정의: 건강관련 기관(보건소, 상담소, 복지관, 의료기관, 예방센터 등) 연계체계 구축 여부
- 산식: 유 / 무

1-4-3 건강교육·홍보

- 정의: 관련 사업의 교육 및 홍보 실적
- 산식: 교육-() 개
 홍보-() 개

1-4-4 전문인력 확보

- 정의: 건강 관련 전문인력 확보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공무원, 의료인, 의료사회복지사 등)
- 산식: () 명

2. 모두가 안전한 마을

2-1. 물리적 환경

2-1-1 가정 시설(상하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채광, 난방설비, 화재안전 등) 안전도

- 정의: 가정 내 필수설비기준(상수도,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하수도), 구조·성능, 환경기준(구조강도확보, 채광·난방설비, 화재안전시설)의 안전도

- 산식:

①	②	③	④
---	---	---	---

※ 국토해양부 주택법 관련 개정내용

2-1-2 학교 시설(교실, 복도, 급식시설, 화장실 등) 안전도

- 정의: 학교 시설(교실, 복도, 급식시설, 화장실, 운동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 실시

- 산식:

①	②	③	④
---	---	---	---

2-1-3 청소년 시설(난방설비, 채광, 화재안전시설 등) 안전도

- 정의: 청소년 시설(난방설비, 채광, 화재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 실시

- 산식:

①	②	③	④
---	---	---	---

2-1-4 가로등, 보안등 수, 밝기 적정성

- 정의: 가로등(주도로, 고속도로), 보안등(골목길) 수 및 밝기 수준
- 산식: 가로등(주도로, 고속도로), 보안등(골목길) 수: () 개

가로등, 보안등의 밝기 수준:

①	②	③	④
---	---	---	---

※도로교통법에 근거

2-1-5 안전한 보행로 확보

- 정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정도

- 산식:

①	②	③	④
---	---	---	---

2-1-6 학교 주변 교통안전

- 정의: 학교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
- 산식: (교통사고 피해 청소년 수/ 전체 청소년 수) x100
() %

2-2. 유해환경

2-2-1 청소년 비행발생

- 정의: 청소년 비행(폭력 및 가출 포함) 발생 비율
- 산식: $(\text{비행 청소년 수} / \text{전체 청소년 수}) \times 100$
() %

2-2-2 성범죄로부터의 안전

- 정의: 청소년 범죄(성범죄, 성매매 포함)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
- 산식: $(\text{피해 청소년 수} / \text{전체 청소년 수}) \times 100$
() %

2-2-3 유해업소 수

- 정의: 유해업소 수
- 산식: () 개
 - ※ 도로교통법에 근거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학교주변(어린이보호구역 내 혹은 반경 300m)

2-2-4 통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범위

- 정의: 각 구(區)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 현황
- 산식: () 개

2-3. 위기, 응급상황

2-3-1 가정폭력 상담서비스

- 정의: 가정폭력 피해 신고건수
- 산식: () 건. 112, 119 등 긴급전화, 경찰신고 건수 포함

2-3-2 학교폭력 상담서비스

- 정의: 학교폭력 피해(금품갈취, 따돌림, 집단구타 등) 상담건수

- 산식: () 건

2-3-3 체벌 없는 청소년관련 기관

- 정의: 체벌 없는 청소년관련 기관(학교, 시설 등) 수
- 산식: () 개

2-3-4 마을주민 안전보호망 운영

- 정의: 지역 내 안전과 보호를 위한 마을주민 보호망 운영 실적(지역주민 연대 자율방범대, 학교 보안관 등)
- 산식: 유 / 무

2-4. 인프라

2-4-1 가정폭력 지원 및 예방 센터

- 정의: 가정폭력 지원 및 예방 센터(응급기관 출동 및 상담 등) 수
- 산식: () 개

2-4-2 학교폭력, 체벌, 차별 지원 및 예방 센터

- 정의: 학교폭력, 체벌, 차별 지원 및 예방 센터 수
- 산식: () 개

2-4-3 안전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 정의: 안전관련 기관(쉼터, 일시보호시설, 경찰서, 상담센터 등) 연계체계 구축 여부
- 산식: 유 / 무

2-4-4 안전생활 홍보

- 정의: 관련 사업의 홍보 실적
- 산식: 홍보-() 개

2-4-5 전문인력 확보

- 정의: 안전 관련(공무원, 보호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확보
- 산식: () 명

2-4-6 안전 모니터링

- 정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활동을 통한 모니터링 실적
- 산식: () 개

3.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3-1. 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

3-1-1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 제공

- 정의: 각 구(區)에서 실시하는 활동과 여가 프로그램 수(수련, 체험, 문화, 예술, 취미·특기, 스포츠 활동, 축제, 길거리 농구대회, 마라톤 대회 등)/청소년인구 수
- 산식: () 개

3-1-2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참여

- 정의: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참여율
- 산식: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참여 청소년 수/전체 수련활동 참여 청소년 수) × 100
() %

3-1-3 동아리 활동 지원

- 정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여부
- 산식: 유 / 무

3-2. 활동 및 여가시간 · 공간

3-2-1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 정의: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 활동(신체활동-스포츠 활동, 자연체험, 자전거, 예술활동-음악, 미술, 사진 등) 정도
- 산식:

①	②	③	④
---	---	---	---

3-2-2 방과 후 활동 및 여가 시간

- 정의: 방과 후 활동 및 여가 시간(신체활동-스포츠 활동, 자연체험, 자전거, 예술활동-음악, 미술, 사진 등)
- 산식: () 시간

3-2-3 학교 내 활동 및 여가 공간

- 정의: 학교 내 활동 및 여가 공간(휴게실, 운동장, 동아리방 등) 수
- 산식: () 개

3-2-4 지역사회 활동 및 여가 공간

- 정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활동 및 여가공간(수련원, 수련관, 근린공원, 체육시설, 야영장, 미술관, 박물관 등)
- 산식: () 개

3-2-5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

- 정의: 놀이터 가족 공원 등의 공공놀이시설에 청소년 놀이가 가능한 공간 확보 및 배치 정도
- 산식: () 개소

3-2-6 공공기관 활용도

- 정의: 활동 및 여가를 위한 공공기관 개방 정도
- 산식:

①	②	③	④
---	---	---	---

3-2-7 야외 녹지공간 확보

- 정의: 지역사회에서 녹지공간에 대한 확보 비율 및 한달 간 야외 녹지공간 이용 수 (지방자치단체 행사 및 지역주민 행사도 포함)
- 산식: 야외 녹지공간 면적/ 지역주민 수
() m²
() 건

3-3. 인프라

3-3-1 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 센터

- 정의: 활동 및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센터 수
- 산식: () 개

3-3-2 활동 및 여가 기관 연계체계 구축

- 정의: 활동 및 여가기관(수련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연계체계 구축 여부
- 산식: 유 / 무

3-3-3 활동 및 여가와 관련된 정보 접근성

- 정의: 활동 및 여가에 관련된 정보의 접근 용이성
- 산식:

①	②	③	④
---	---	---	---

3-3-4 활동 및 여가를 위한 기구 보급

- 정의: 활동 및 여가에 관련된 기구(운동기구, 예술, 체험도구 등)보급 정도
- 산식:

①	②	③	④
---	---	---	---

3-3-5 활동 및 여가관련 전문인력 확보

- 정의: 활동 및 여가(수련, 문화 등)관련 전문인력 확보
- 산식: () 명

4. 배움을 누리는 마을

4-1. 교육기회

4-1-1 학교 중도탈락률

- 정의: 재학생 수 (사망, 질병, 가사, 폭행, 부적응, 휴학, 이민 등)의 사유로 제적, 중퇴, 휴학한 학생의 비율
- 산식: $(\text{제적 중퇴자 및 휴학자 수} / \text{전체 재학생 수}) \times 100$
() %

4-1-2 학업성취 수준

- 정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에서 기초학력미달 청소년 비율
- 산식: $(\text{기초학력미달 학생 수} / \text{전체 재학생수}) \times 100$
() %
※ 초·중등학교의 장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부터, 응시현황 및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공시하게 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동법 제3조와 부칙 3조 제2호 근거)

4-1-3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정의: 방과 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청소년센터 등)에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 산식:

①	②	③	④
---	---	---	---

4-1-4 청소년 학습동아리 구성

- 정의: 학습동아리(역사, 시사 등) 지원 여부
- 산식: 유 / 무

4-1-5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정의: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

- 산식: () 개

4-2. 교육연계

4-2-1 학교 급간의 상호 연계 활동

- 정의: 학교 급간(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상호 연계 여부
- 산식: 유 / 무

4-2-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 정의: 중·고등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연계한 프로그램 수
- 산식: () 개

4-2-3 지역사회 재능 나눔프로그램 운영

- 정의: 지역사회 인재 나눔프로그램 프로그램 수
- 산식: () 개

4-2-4 공공 및 민간 도서관 수

- 정의: 지역사회 도서관 수(공공 및 민간도서관 수, 학교도서관 수,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 산식: () 개

4-3. 진로·직업

4-3-1 학교 및 지역사회 진로교육 프로그램

- 정의: 진로교육 실시 횟수
- 산식: () 건

4-3-2 공공시설 연계 직업 체험 학습 기회

- 정의: 공공시설 연계 직업 체험 학습 기회 여부
- 산식: 유 / 무

4-4. 인프라

4-4-1 교육 및 진로관련 지원센터

- 정의: 교육 및 진로관련 지원 센터 수
- 산식: () 개

4-4-2 배움관련 정보 제공

- 정의: 배움관련 정보 제공 여부(교육 박람회, 입시설명회 등)
- 산식: 유 / 무

4-4-3 교육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 정의: 교육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여부(교육청, 복지관 등)
- 산식: 유 / 무

4-4-4 교육관련(방과후, 진로, 자립 등) 전문인력 확보

- 정의: 교육관련(방과후, 진로, 자립 등) 전문 인력 확보
- 산식: () 명

5. 함께 참여하는 마을

5-1. 의견존중

5-1-1 상급학교 선택 시 자녀의 의견 반영

- 정의: 청소년이 상급학교를 결정할 경우 부모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
- 산식:

①	②	③	④
---	---	---	---

5-1-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반영

- 정의: 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할 경우 부모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
- 산식:

①	②	③	④
---	---	---	---

5-1-3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청소년 의사 반영

- 정의: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활동(스포츠, 취미활동, TV 시청 등)에 대한 선택을 부모가 존중하는 정도
- 산식:

①	②	③	④
---	---	---	---

5-2. 표현의 자유

5-2-1 교내 징계 시 학생의 의사 소명권 보장

- 정의: 교내에서 학생이 징계를 받을 때 학생에게 의사소명권을 부여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text{학생 징계 시 의사소명권 부여하는 학교 수} / \text{전체 학교 수}) \times 100$
() %

5-2-2 교칙 재·개정시 학생 참여

- 정의: 학교의 교칙 재·개정에 학생의 참여를 허용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text{교칙 재·개정 시 학생의 참여를 허용하는 학교 수} / \text{전체 학교 수}) \times 100$
() %

5-2-3 학교 운영회에 학생참여 보장

- 정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석하여 학교운영에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의 비율
- 산식: $(\text{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학교 수} / \text{전체 학교 수}) \times 100$
() %

5-2-4 교내 자치회 운영

- 정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적 활동을 하는 교내자치회 운영 여부
- 산식: 유 / 무

5-2-5 인권을 위한 옹호기구나 상담기관

- 정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인권을 위한 기관 설치 수
- 산식: () 개

5-3. 사회참여

5-3-1 봉사활동 및 참여위원회 참여

- 정의: 자원봉사 및 참여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
- 산식: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전체 청소년의 수)×100
() %
(참여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전체 청소년의 수)×100
() %

5-3-2 온라인·미디어 매체 관련 활동

- 정의: 트위터, 스마트 폰,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 매체를 이용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
- 산식: (매체를 이용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전체 청소년의 수)×100
() %

5-3-3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관련 참여

- 정의: 지역사회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제도 여부
- 산식: (청소년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전체 청소년의 수)×100
() %

5-3-4 국제교류 활동

- 정의: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
- 산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전체 청소년의 수)×100
() %

5-4. 인프라

5-4-1 참여관련 지원센터

- 정의: 참여관련 지원 센터 수
- 산식: () 개

5-4-2 참여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 정의: 참여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여부
- 산식: 유 / 무

5-4-3 참여관련 정보의 접근성

- 정의: 참여관련 정보의 접근성 정도
- 산식:

①	②	③	④
---	---	---	---

5-4-4 전문인력 확보

- 정의: 참여관련 전문인력 확보
- 산식: () 명

5-4-5 청소년 참여 모니터링

- 정의: 참여관련 모니터링 실적
- 산식: () 개

부 록 2. 델파이 조사지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청소년이 건강하고 역량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모델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요건을 제시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가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견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청소년의 행복이 보장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성장환경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꼭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06월

연구책임자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 다음의 연락처로 본 조사에 대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조원 : 박수정(010-4414-2554) / E-mail : friendlycity@naver.com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름	
성 별	남 () 여 ()
소속기관	
직 위	

I.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요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요건¹⁰⁾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5가지 기본요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요인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기타에는 여러분의 추가적인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요건	내 용	우선 순위
안전한 성장환경	부모역할체계, 교사관계, 지역사회 안전과 보호를 위한 물리적 환경, 유해환경, 사회적 인프라 등	
건강한 발달환경	영양 및 건강, 정서·행동, 교육, 검진, 지원기관, 건강 관련 인프라 등	
활동과 여가 환경	활동과 여가 프로그램, 활동과 여가시간, 활동과 여가와 관련 인프라 등	
배움과 미래를 위한 환경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 인프라, 진로·직업 교육, 진로·직업 체험, 자립관련 인프라 등	
참여와 의사 표현 환경	청소년 의견존중, 표현의 자유, 사회참여, 참여관련 인프라 등	
기타 의견	(기본요건과 내용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10) 기본요건의 '명칭'은 추후 계속되는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2.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요건에 따른 핵심영역, 세부영역, 그리고 평가지표입니다.
세부영역과 평가지표가 적합한지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혹은 ○)

1) 안전한 성장 환경

세부영역	평가지표	적합성 정도		
		매우 적합(3)	적합 (2)	부적합 (1)
부모역할체계	① 학대 발생률			
	② 가정폭력 상담			
물리적 환경	① 주거공간의 가족대비 방 수			
	② 필수설비(상하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입식 부엌 등) 설치율			
	③ 구조, 환경(채광, 난방설비, 화재안전시설 등) 설치율			
기타 의견	(세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교사관계	① 차별 없는 청소년관련 기관 수			
	② 차별 피해율			
친구관계	① 학교폭력(금품갈취, 따돌림, 집단구타 등) 상담			
기타 의견	(세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세부영역	평가지표	적합성 정도		
		매우 적합(3)	적합 (2)	부적합 (1)
유해환경	① 학교주변 교통안전			
	② 유해업소 수			
	③ 가출 비율			
	④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			
	⑤ 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			
	⑥ 통행금지 구역 및 제한구역 수			
	⑦ 인터넷 게임 중독률			
	⑧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수혜율			
시설환경	① 청소년 시설 안전도			
	② 가로등, 보안등, 밝기의 적정성			
	③ 자전거 도로 확보			
	④ 화재 발생 신고건수			
	⑤ 교통사고 사망률			
	⑥ 공원의 수 및 지역 인구대비 면적의 적정성			
인프라	① 청소년 안전보호 예산			
	② 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 실적			
	③ 지역주민 유대관계 증진 프로그램			
	④ 안전 및 보호 프로그램 모니터링 건수			
기타 의견	(세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2) 건강한 발달 환경

세부영역	평가지표	적합성 정도		
		매우 적합 (3)	적합 (2)	부적합 (1)
영양 및 건강	① 규칙적인 식사			
	② 정상 신체중실도			
	③ 학교 근처 패스트푸드점 개수			
	④ 학교 내 탄산음료자판기 수			
정서 · 행동	① 자살률			
	② 정서 · 행동문제(우울, 공격성, 비행 등) 발생률			
	③ 10대 임신률			
기타 의견	(세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교육	① 학교 혹은 지역사회의 건강 프로그램 실시			
검진	①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서 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② 학교 혹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예방접종 비율			
지원기관	① 건강 검진 및 상담, 예방 및 보건 관련 센터 설치			
인프라	① 건강, 영양, 보건에 관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예산			
	② 전문 상담사, 예방교육 전문 인력 확보			
	③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			
기타 의견	(세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3) 활동과 여가 환경

세부영역	평가지표항목	적합성 정도		
		매우 적합(3)	적합 (2)	부적합 (1)
활동과 여가 프로그램	① 활동과 여가 프로그램 유형(음악, 드라마, 체육 등)의 다양성			
	② 활동 참여의 다양성(가족, 지역주민, 또래 친구 등)			
	③ 활동(스포츠 활동, 자연체험,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결정과정에서 청소년 참여율			
	④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결정과정에서 청소년 참여율			
활동과 여가 시간	① 일주일 간 학교 체육(운동)시간			
	② 하루 중 학교 활동 및 휴식시간			
	③ 일주일 간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시간			
	④ 일주일 간 신체활동(스포츠 활동, 자연체험, 자전거 등), 예술활동(음악, 미술, 사진 등) 시간			
기타 의견	(세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인프라	① 학교 활동 및 여가 공간			
	② 학원 내 활동 및 여가 공간			
	③ 지역사회 활동과 여가 공간			
	④ 활동 및 여가 관련 사업추진 계획 추진 실적			
	⑤ 활동 및 여가 관련 예산			
	⑥ 활동 관련 전문 인력 확보를			
	⑦ 활동 프로그램 모니터링 건수			
	⑧ 활동 및 여가와 관련된 정보 접근성			

기타 의견	(세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

4) 배움과 미래를 위한 환경

세부영역	평가지표	적합성 정도		
		매우 적합(3)	적합 (2)	부적합 (1)
교육기회	① 학교 중도탈락률			
	② 학교생활 만족도			
	③ 학업성취수준			
교육 기회 연계성	① 학교 급간의 상호 연계프로그램 실시			
	②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실시			
	③ 공공 및 민간 도서관 수			
기타 의견	(세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인프라	① 교육관련 예산의 적정성			
	② 전문 인력 확보율			
	③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			
기타 의견	(세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진로 · 직업 프로그램	① 학교 및 지역사회 진로교육 프로그램			
	② 공공시설 연계 직업 체험 학습			

세부영역	평가지표	적합성 정도		
		매우 적합(3)	적합 (2)	부적합 (1)
자립관련	① 자립관련 제도(조례, 정책 등) 설치 여부			
	② 자립 관련 예산 적정성			
	③ 자립 관련 전문 인력 확보율			
기타 의견	(세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5) 참여와 의사표현 환경

세부영역	평가지표항목	적합성 정도		
		매우 적합(3)	적합 (2)	부적합 (1)
가정사 및 진로	①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의견반영 비율			
	② 상급학교 선택 시 자녀의 의견을 반영 정도			
	③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반영 정도			
문화 및 여가 활동	①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청소년 의사 반영 정도			
개인생활	①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의 공개여부			
	② 징계대상 학생 정보의 공개 여부			
	③ 학생 개인 시험성적의 공개여부			
기타 의견	(세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세부영역	평가지표항목	적합성 정도		
		매우 적합(3)	적합 (2)	부적합 (1)
의사 표현	① 교내 징계 시 학생의 의사 소명권 보장			
	② 교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③ 학교 운영회에 학생참여의 참여를 보장			
	④ 인권을 위한 옹호기구나 상담기관			
	⑤ 교내 자치회 운영			
	⑥ 학생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⑦ on-off 라인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 설치 여부			
기타 의견	(세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사회참여	① 봉사활동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참여			
	② 지역사회 정책수립 관련 참여율			
	③ 국제교류 활동 참여율			
인프라	① 참여를 정례화 할 수 있는(조례, 정책 등) 제도 설치 여부			
	② 청소년 참여 관련 예산의 적정성			
	③ 청소년 참여 관련 전문 인력확보율			
기타 의견	(세부 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II.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친화마을 추진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을 우선순위별로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단, 추진과정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과정 내용	우선 순위	포함되지 않는 과정
①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조례		
② 지역주민 홍보		
③ 관련 전문가 홍보		
④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정책 개발		
⑤ 지역사회 환경 평가		
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⑦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워크숍 개최		
⑧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청소년 참여		
⑨ 청소년 정책 위원회 구성		
⑩ 청소년 전문인력의 확보		
⑪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인식변화		
⑫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과 관련된 법(예 건축법, 학교교육법, 학원법 등)의 개정		

2.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을 우선순위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단, 추진과정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과정 내용	우선 순위	포함되지 않는 과정
①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조례		
② 지역주민 홍보		
③ 관련 전문가 홍보		
④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정책 개발		
⑤ 지역사회 환경 평가		
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⑦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친화마을 관련 워크숍 개최		
⑧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청소년 참여		
⑨ 청소년 정책 위원회 구성		
⑩ 청소년 전문인력의 확보		
⑪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인식변화		
⑫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과 관련된 법(예 건축법, 학교교육법, 학원법 등)의 개정		

3.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기반 구축에서부터 사업추진까지의 단계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란	
-----	--

◆ 질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집필진

김 켈 나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교수)

홍 승 애 (숙명여자대학교 · 박사수료)

송 미 령 (숙명여자대학교 · 박사수료)

【연구보조원】

박 수 정 (숙명여자대학교 · 석사과정)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김 둘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 윤 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 교수)

박 철 웅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윤 강 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사무관)

전 명 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활동진흥본부장)

연구보고(수시과제)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인 쇄 2011년 10월 23일

발 행 2011년 10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42-4(93330)